

연·구·보·고·서

성매매피해 청소년 자립지원 모델 개발

2011. 12

제 출 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귀하

본 연구보고서를 2011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연구용역과제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1. 12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 인 숙

성매매피해 청소년 자립지원 모델 개발

〈연구진 소개〉

- 책임연구원

김인숙(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연구원

하지선(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시간강사)

윤연숙(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이 보고서는 2011년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연구용역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으며, 연구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으로 한국 여성인권진흥원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성매매피해 청소년 자립지원 모델 개발』 연구결과 요약

1. 서론

- 현재 성매매피해 청소년 자립지원시스템은 특화된 서비스 및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고, 획일화된 지원방식으로 인해 성매매피해 청소년의 자립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성매매피해 청소년을 위한 지원으로써, 보호·교육일자리 지원을 포함한 연속적이고 통합적인 자립지원 모델을 개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 조사는 문헌 검토 및 분석을 중심으로 하고, 보완적인 수단으로 심층면접과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다. 심층면접은 대표 및 실무자와 성매매피해 청소년 총 12명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이루어졌다. 설문조사는 배포된 설문지 중 응답을 받은 청소년지원시설 10개소, 위기청소년교육센터 5개소의 설문결과를 기초로 분석하였다.

2. 성매매피해 청소년의 자립지원의 실태

- 현재 성매매피해 청소년들이 자립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자립지원의 형태는 생활기반 단일 모델, 기능특화 모델, 통합적 경제자립 모델, 외부지원 모델, 관료적 사례관리 모델 등 다양하다. 그러나 이들은 상호 유기적으로 통합되지 못하고, 사후적 지원에 초점이 있어 성매매로의 유입을 초기에 차단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 설문조사 결과, 청소년지원시설과 위기청소년교육센터 모두 전체 서비스 분야 중 ‘아웃리치 및 현장상담 서비스’와 취업준비 서비스 중 ‘직업체험 프로그램’, ‘인터십 프로그램 운영 및 외부기관 연계’, ‘직업훈련매장 연계 서비스’가 다른 분야의 서비스에 비해 활

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다.

- 현재 성매매피해 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의 문제점은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시설보호 중심의 서비스체계여서 시설을 선호하지 않는 성매매피해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낮다. (2) 초기만남 즉 '만나주는 시스템'이 미흡하여, 초기에 유입을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 (3) 안정화를 위한 인프라가 부족하고, 운영방식의 유연성이 부족하여 성매매피해 청소년들이 공식지원체계에 안착하기 어렵다. (4) 성매매피해 청소년들의 성매매유입 방지를 위한 노동시장 연계와 진입구조가 취약하다.

3. 성매매피해 청소년의 삶의 경로와 자립 욕구

- 지원시설 혹은 센터에 오기까지 십대 청소년의 경로는 가출, 공동생활, 성매매, 초기접촉, 지원시설 입소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 지원시설로 오게 되는 초기 접촉은 1388, 경찰, 법원위탁, 원스톱지원센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루어진다.
- 성매매피해 청소년에게 지원시설 입소는 과거의 삶과 단절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안전한 주거 공간', '가족 같은 분위기'등 일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인 동시에 학업을 지속하게 해주는 역할, 직업 교육 등 다양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다.
- 지원시설에서 생활하면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게 되고, 이러한 고민들은 '학업' 혹은 '일'에 대한 욕구로 이어지게 된다.
- 인터뷰에 참여한 대다수의 청소년의 경우, 제도권 교육 내에 있는 청소년들처럼 학업 이후 일을 갖는 순차적인 과정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었다. '학업'과 '일'의 경험이 교차되면서 자신의 삶의 목표를 더욱 더 명확하게 찾게 되고, '자립'의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4. 외국의 청소년 성매매 관련 법률 및 지원 시스템

- 우리나라보다 앞서 청소년 성매매 관련 법률과 지원시스템을 마련한 미국의 영국 사례를 통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 인터넷을 이용하여 성행위를 하려는 목적으로 아동에게 채팅 또는 이메일로 접근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법적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성매매피해 청소년의 발견부터 최종 정착과 돌봄까지 지속적이고 통합적으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통합지원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아웃리치의 강화 및 전담 인력이 배치된 지원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으며, 청소년들이 자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드롭인(Drop-in)센터와 일시쉼터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성매매피해 청소년들을 위한 별도의 대안학교를 운영함으로써 청소년들이 학점을 인정받고 졸업을 통해 성매매피해 청소년들이 기존 교육 체계와 차별화된 학력 인정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진로지도 취업지원 프로그램 성매매피해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지도와 직업교육, 취업지원을 담당할 기관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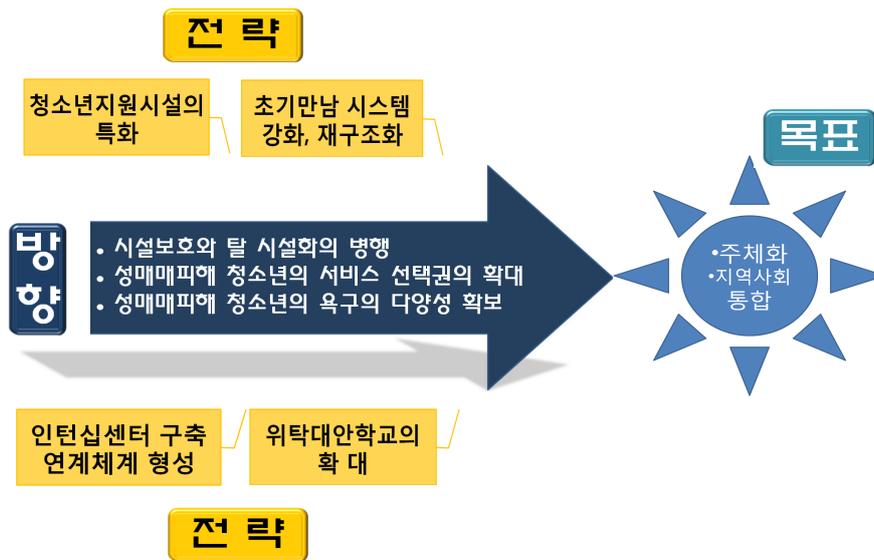
5. 성매매피해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 자립지원 모델

1) 통합적 자립지원 모델의 목표, 기본방향, 기본전략

- 성매매피해 청소년을 위한 통합적 자립지원의 궁극적 목표는 이들의 주체성을 확보하고, 이들이 지역사회에 온전히 통합되는 것이다. 주체화는 지배적 사회논리에 종속되지 않으면서 자신과 사회세계를 재해석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로 바라보아야 하고, 이러한 전제하에 자립지원이 구성되고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사회통합은 성매매피해 청소년들을 모의적 상황에 두지 않고 진짜의 현실과 접촉하게 하는 것이다. 이 접촉을 통해 주체화를 이루어나가고, 주체화의 역량은 다시 지역사회로 통합되게 하는 힘을 갖게 한다.

- 통합적 자립지원 모델의 기본 방향은 크게 세 가지이다. 시설보호 중심의 서비스 체계에서 시설보호와 탈시설화를 병행하는 서비스 체계로 전환하고, 성매매피해 청소년들의 서비스 선택권이 가능한 확대되도록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 그리고 성매매피해 청소년의 욕구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상의 기본방향은 현재의 성매매피해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의 실태와 문제로부터 도출되었다.
- 통합적 자립지원 모델의 목표와 방향을 전제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은 4 가지이다. (1) 청소년지원시설의 기능을 차별화하고 특화한다. (2) 초기만남 시스템을 강화, 재구조화 한다. (3) 취업지원을 위한 인턴십센터를 구축하고 연계체계를 형성한다. (4) 학력지원을 위한 위탁대안학교를 확대한다.

〈그림〉 통합적 자립지원모델의 목표, 방향, 전략도



2) 통합적 자립지원 모델의 유형

이 전략을 기반으로 수립한 통합적 자립지원모델은 총 네가지의 모델로 구성된다. ‘청소년 지원시설 특화 모델’, ‘학력지원 특화 모델’, ‘취업지원 특화 모델’, ‘비시설보호 특화 모델’이

네가지 모델이다. 이 모델들은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황을 최대한 반영하여 구성된 모델이며, 인프라구축에 있어 효율성을 감안한 모델이다.

(1) A 유형 : “청소년지원시설 특화 모델”(그림 A 참조)

- “청소년지원시설 특화 모델”은 현재 존재하고 있는 단일 청소년지원시설과 위기청소년교육센터의 프로그램 및 서비스 내용을 조정하고, 기관 간 운영을 차별화·특화하여 성매매 피해 청소년들의 다양한 특성과 욕구에 부응하도록 구성되었다.
- 이 모델의 핵심은 기존의 청소년지원시설이 각 시설의 고유성을 반영하여 ‘보호중심 시설’, ‘치유중심 시설’, ‘특수욕구 중심 시설’, ‘성인전환시기 시설’로 특화되는 것이다. 그리고 초기만남과 ‘성매매피해 청소년 특화 대안학교’, ‘인턴십센터’와 유기적으로 결합된다.

(2) B 유형 : “학력지원 특화 모델”(그림 B 참조)

- “학력지원 특화 모델”은 현재 존재하는 ‘학력지원 중심 시설체계’의 장점을 이어받되, 기존 체계에 내포되어 있는 취업지원 분야의 미비점을 보완한 모델이다.
- 학력지원 특화 모델은 성매매피해 청소년이 한 자리에서 중장기의 거주와 그들에 특화된 학력을 지원받는다는 점에서, 그리고 초기만남에서 취업지원에 이르는 연속선 상에서 유기적으로 통합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된다.

(3) C 유형 : “취업지원 특화 모델”(그림 C 참조)

- ‘취업지원 특화 모델’은 취업지원에 욕구가 있는 성매매피해 청소년을 위한 모델유형으로 성매매피해 청소년들의 취업지원에 강점을 갖는 모델이다.
- “취업지원 특화 모델”은 청소년지원시설, 자립지원센터, 자체 그룹홈이 공동 운영되는 형태를 갖는 ‘취업지원 중심 시설체계’ 구성을 핵심으로 한다. 그리고 초기만남과 외부 ‘성매매피해 청소년 특화 대안학교’와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외부 인턴십센터’와 사례공동개입을 실시하는 모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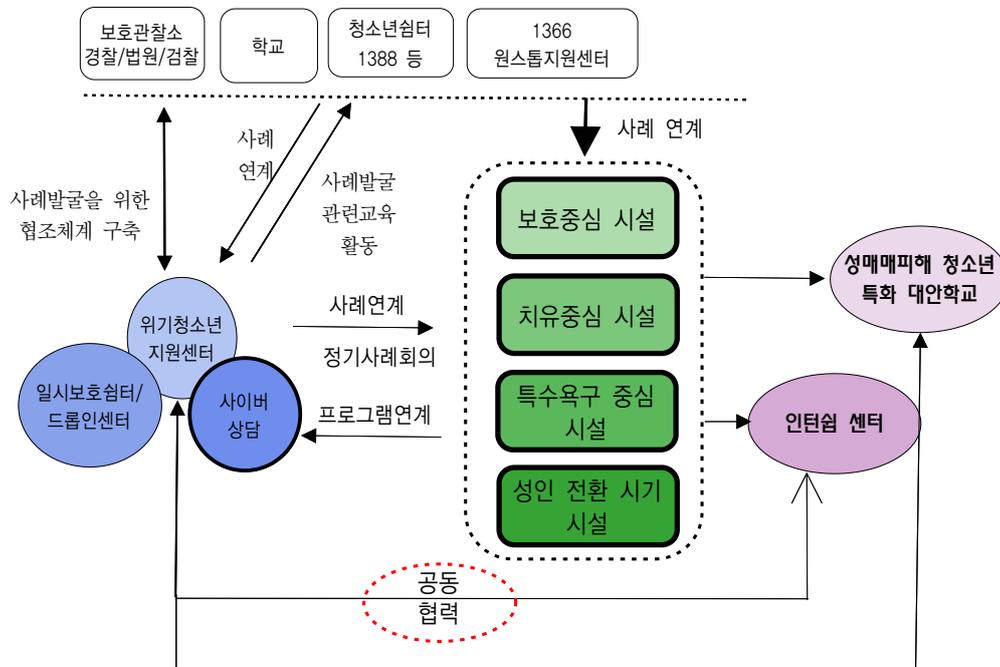
(4) D 유형 : “비시설보호 특화 모델”(그림 D 참조)

- “비시설보호 특화 모델”은 시설 입소를 원하지 않는 성매매피해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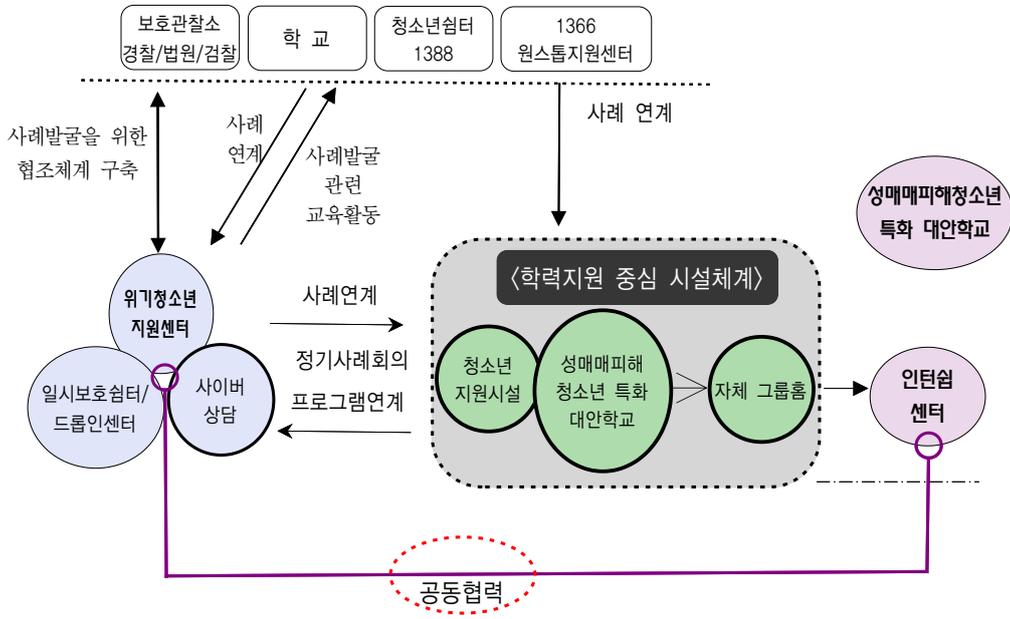
고려한 모델이다. 시설 입소와 상관없이 심리·정서적 안정을 꾀하고, 상담이나 집단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학력지원과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모델이다.

- 위기청소년지원센터(현, 위기청소년교육센터의 기능 확장형; 가칭)는 성매매피해 청소년의 초기 만남에서 성매매피해 청소년 특화 대안학교와 인턴십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시설 미입소상태에서 학력지원과 취업지원을 시행하고, 일시보호쉼터와 드롭인센터 운영 혹은 연계를 통해 임시의 주거를 제공한다. 이로써 탈시설화의 지원이 성매매피해 청소년 지원체계에 한 지원 패턴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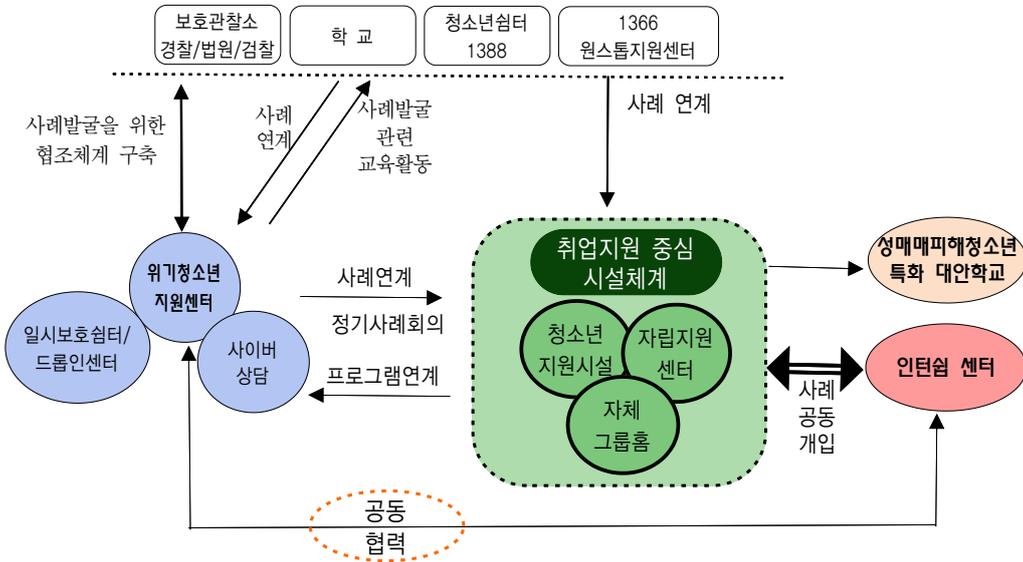
(그림A) 통합적 자립지원 모델 A ; 청소년지원시설 특화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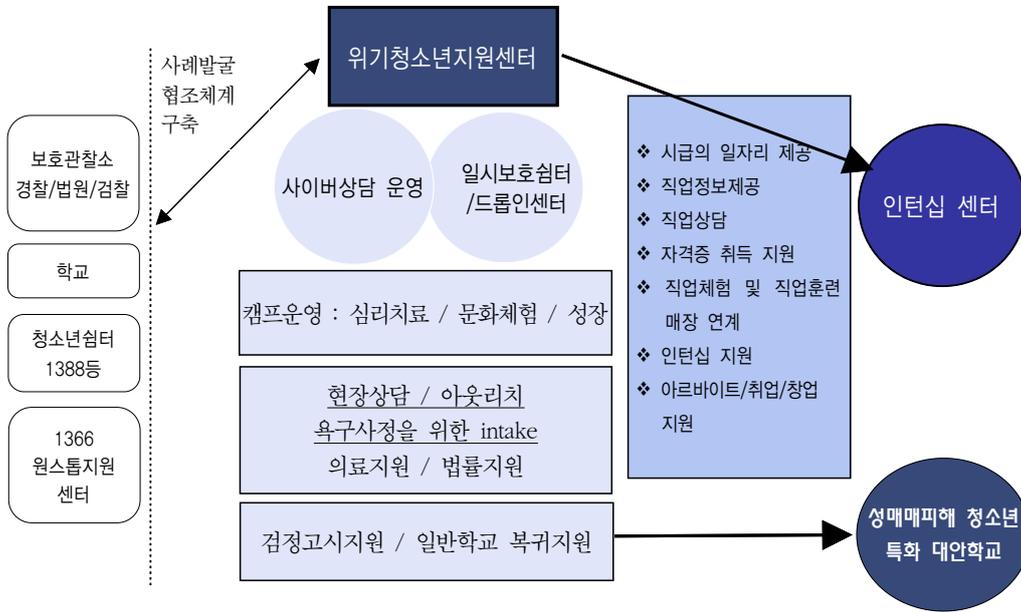
〈그림 B〉 통합적 자립지원 모델 B ; 학력지원 특화 모델



〈그림C〉 통합적 자립지원 모델 C ; 취업지원 특화 모델



〈그림 D〉 통합적 자립지원 모델 D ; 비시설보호 특화 모델



6. 결론 및 제언

- 성매매피해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 자립지원 모델을 구축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것은 현재의 서비스체계가 과연 성매매피해 청소년들의 욕구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으며, 이들의 다양한 욕구가 서비스를 ‘선택’ 하는데 반영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성매매피해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 지원체계의 사각지대로서 성매매 유입 초기에 청소년들을 만나주는 ‘초기만남 체계’의 구축이 매우 미흡하며, 소득이 필요한 직업의 욕구를 가진 성매매피해 청소년들에 대한 서비스체계가 구축되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서비스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성매매피해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 모델을 네 가지 제안하였다(상기 모델유형 참조)

- 상기 모델들이 현실적 적합성을 갖고 현실에서 작동되기 위해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 (1) 앞서 제시한 네 가지의 통합적 자립지원 모델은 해당 지역의 특성 또는 성매매피해 청소년 시설 및 기관의 특성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 (2) 모델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초기만남 체계’와 ‘취업지원 체계’의 강화는 모든 모델에서 공히 강조되어야 한다.
 - (3) 새로운 ‘초기만남 체계’의 중심을 이루는 위기청소년지원센터(가칭)를 위해 예산과 인력의 보강이 이루어져야 한다.
 - (4) ‘초기만남 체계’에서 성매매로의 유입방지를 위한 일시거주시설(일시보호쉼터/드롭인센터)을 확대하되,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배치하도록 한다.
 - (5) 성매매피해 청소년을 위한 새로운 인턴십센터를 구축하되, 성매매피해 청소년을 위한 모든 인프라 체계와의 ‘연계’와 ‘협력’이 핵심이 되도록 한다.
 - (6) 성매매피해 청소년을 위한 위탁형 대안학교의 확대를 위해 관련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I. 서론

1. 연구의 배경	21
2. 연구의 방법	23

II. 성매매피해 청소년의 자립

1. 성매매피해 청소년과 자립의 개념	25
1) 성매매피해 청소년을 위기청소년 지원과 분리하여 지원해야 하는 이유	25
2) 성매매피해 청소년에 대한 연구 동향	27
3) 성매매피해 청소년과 자립	31
2. 성매매피해 청소년의 자립지원의 실태	36
1) 성매매피해 청소년에 대한 기존 자립지원의 유형	36
2) 자립지원의 실태	41
3) 서비스 연계 실태	60
4) 성매매피해 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의 문제점	74
3. 성매매피해 청소년의 삶의 경로와 자립 욕구	79
1) 성매매피해 청소년의 삶의 경로	79
2) 자립 욕구	85
4. 외국의 청소년 성매매 관련 법률 및 지원 시스템	89
1) 미국의 청소년 성매매 관련 법규 및 시스템	90
2) 영국의 청소년 성매매 관련 법규 및 시스템	96
3) 외국사례로부터의 시사점	99

CONTENTS

III. 성매매피해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 자립지원 모델

1. 통합적 자립지원 모델의 목표와 기본방향	102
1) 통합적 자립지원 모델의 목표	102
2) 통합적 자립지원 모델의 기본방향	104
2. 통합적 자립지원 모델의 기본 전략	105
3. 통합적 자립지원 모델의 유형	109
1) A 유형 : “청소년지원시설 특화 모델”	110
2) B 유형 : “학력지원 특화 모델”	116
3) C 유형 : “취업지원 특화 모델”	122
4) D 유형 : “비시설 보호 특화 모델”	127

IV. 결론 및 제언

1. 참고문헌	136
2. 부록1. 청소년지원시설용 설문지	139
3. 부록2. 위기청소년교육센터용 설문지	147

표목차

〈표 1-1〉 인터뷰 대상: 성매매피해 청소년	24
〈표 1-2〉 인터뷰 대상: 시설 대표	24
〈표 2〉 기관 설립년도	41
〈표 3〉 2009년-2011년 청소년지원시설 입소 청소년 수 추이(인원)	42
〈표 4〉 2009년-2011년 위기청소년 교육센터 이용 청소년 수 추이	43
〈표 5〉 2009년-2011년 청소년지원 시설 입소 청소년의 평균 입소기간(개월)	44
〈표 6〉 2009년-2011년 청소년지원 시설 입소 청소년의 평균 입소기간 분류	45
〈표 7〉 현 입소 청소년의 연령 분포	45
〈표 8〉 특수육구를 가진 청소년의 발생추이(명수)	46
〈표 9〉 사례발굴 및 의뢰가 이루어지는 기관과 의뢰 비율	48
〈표 10〉 사례발굴 및 의뢰가 이루어지는 기관과 의뢰 비율	49
〈표 11〉 청소년의 서비스 참여 비율	50
〈표 12〉 청소년지원시설 서비스 제공 현황 ; 전체 분야	51
〈표 13〉 청소년지원시설 서비스 제공 현황 ; 사례발굴 분야	52
〈표 14〉 청소년지원시설 서비스 제공 현황 ; 상담 분야	52
〈표 15〉 청소년지원시설 서비스 제공 현황 ; 학력지원 분야	53
〈표 16〉 청소년지원시설 서비스 제공 현황 ; 집단프로그램 분야	53
〈표 17〉 청소년지원시설 서비스 제공 현황 ; 의료·법률·사후관리 분야	54
〈표 18〉 청소년지원시설 서비스 제공 현황 ; 취업지원 분야	55
〈표 19〉 위기청소년교육센터 서비스 제공 현황 ; 전체 분야	56
〈표 20〉 위기청소년교육센터 서비스 제공 현황 ; 사례발굴 분야	57
〈표 21〉 위기청소년교육센터 서비스 제공 현황 ; 학력지원 분야	57
〈표 22〉 위기청소년교육센터 서비스 제공 현황 ; 집단프로그램 분야	58
〈표 23〉 위기청소년교육센터 서비스 제공 현황 ; 의료·법률·사후관리 분야	58
〈표 24〉 위기청소년교육센터 서비스 제공 현황 ; 취업지원 분야	59
〈표 25〉 가출 후 지원시설 입소까지의 과정	79

그림목차

〈그림 1〉 2009년-2011년 입소 청소년(인원) 수 추이 그래프 (시설별)	42
〈그림 2〉 2009년-2011년 입소 청소년 수 추이 그래프 (전체)	43
〈그림 3〉 2009년-2011년 위기청소년교육센터 이용 청소년 추이(인원)	44
〈그림 4〉 현 입소 청소년의 연령 분포(2011년 현재, 비율)	46
〈그림 5〉 특수욕구를 가진 청소년의 발생추이 (명수)	47
〈그림 6〉 청소년의 서비스 참여 비율	50
〈그림 7〉 A 기관의 연계현황	60
〈그림 8〉 B 기관의 연계현황	61
〈그림 9〉 C 기관의 연계현황	61
〈그림 10〉 D 기관의 연계현황	62
〈그림 11〉 E 기관의 연계현황	63
〈그림 12〉 F 기관의 연계현황	63
〈그림 13〉 G 기관의 연계 현황	64
〈그림 14〉 H 기관의 연계현황	65
〈그림 15〉 I 기관의 연계현황	66
〈그림 16〉 J 기관의 연계현황	67
〈그림 17〉 K 기관의 연계현황	69
〈그림 18〉 L 기관의 연계현황	70
〈그림 19〉 M 기관의 연계현황	71
〈그림 20〉 N 기관의 연계현황	72
〈그림 21〉 O 기관의 연계현황	73
〈그림 22〉 통합적 자립지원모델의 목표, 방향, 전략도	109
〈그림 A-1〉 현 청소년지원시설 및 위기청소년교육센터 중심의 서비스체계	111
〈그림 A-2〉 통합적 자립지원 모델 A ; 청소년지원시설 특화 모델	112
〈그림 B-1〉 현 학력지원 중심의 서비스체계	118
〈그림 B-2〉 통합적 자립지원 모델 B ; 학력지원 특화 모델	118
〈그림 C-1〉 현 취업지원 중심 서비스체계	123
〈그림 C-2〉 통합적 자립지원 모델 C ; 취업지원 특화 모델	123
〈그림 D-1〉 현 비시설 보호의 서비스 체계 현황	128
〈그림 D-2〉 통합적 자립지원 모델 D ; 비시설보호 특화 모델	129

1. 서론

1. 연구의 배경

본 연구는 성매매피해 청소년을 위한 지원으로써, 보호·교육·일자리 지원을 포함한 연속적이고 통합적인 자립지원 모델을 개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2009년을 기점으로 일반청소년의 0.3%와 위기청소년의 2.1%가 성매매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0년에는 일반청소년의 0.4%와 위기청소년의 4.8%가 성매매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여성가족부, 2010), 성매매피해 청소년은 최근 들어 더욱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근래에 들어 이러한 성매매피해 청소년들의 평균 연령이 점점 더 낮아진다는 점이다. 2000년부터 2007년까지의 청소년 대상 성매수 현황 분석을 보면(보건복지가족부, 2008), 성매매피해 청소년 중 14-15세의 비율은 최근으로 이룰수록 점차 증가해 2000년 36.4%이던 것이 2006년에는 46.0%에 이른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비단 한국적 상황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세계적 추세이다(Trussell, J., and Vaughn, B., 1991). 즉, 성매매피해 청소년의 수의 확장이나 점점 더 낮은 연령에로의 확장을 통해 우리는 성매매피해 청소년들에 대한 개입이 시급하고 확대되어야 하며, 효율적인 서비스 시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또 하나, 성매매피해 청소년의 양적 증가와 저연령화라는 현상적 변화에 더하여 우리의 관심을 주목케 하는 것은 이들 성매매피해 청소년들이 겪는 인생과정에서의 어려움이고, 이 어려움들이 삶의 전 과정에서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이다. 이들 청소년은 성매매에 진입하기 전부터 경제적 궁핍은 물론 성적 괴롭힘, 교육적 박탈, 직업차별, 가정폭력, 신체적·성적 폭력에서의 취약성과 같은 다양한 문제들을 가졌었는데(Farley & Kelly, 2000), 이러한 어려움들이 성매매의 경험을 통해 더 악화되거나, 삶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계속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말하자면, 이들 청소년들은 성매매 피해에 한번 노출되고 나면 별도의 지원이 부재할 경우 그들의 삶에 치유되지 어려운 상태로 남게 되고, 비슷한 피해가 성인기에 가셔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현재 성매매피해 청소년에 직접적인 서비스를 실시하는 사회적 지원으로는 전국 14개소의 청소년지원시설과 10개소의 위기청소년교육센터, 1개소의 사이버상담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들 시설에서는 청소년 보호 및 학력지원, 부분적인 취업지원 등을 시행함으로써 성매매피해 청소년의 자립을 도모하고 있다. 여기에서 지향하는 자립지원이란 성매매피해 청소년의 주체적 자아형성과 더불어 청소년들의 꿈을 일을 통해 구현해갈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김인숙, 2011). 이러한 자립지원은 단지 그들이 가진 문제를 해결한다는 단순한 지원의 차원을 넘어, 주체적인 사회구성원으로써 성장하게 하여 성인기로의 건강한 이행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중요성을 띤다.

그러나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자립지원은 성매매피해 청소년의 자립을 통합적으로 지원 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측면의 한계가 내포되어 있는데, 그 하나는 성매매피해 청소년을 위한 특화된 서비스 및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이들 청소년을 기존의 일반 위기청소년과의 차이를 중시하지 않고, 일반 위기 청소년과 동일하게 다루려고 하는 데서 발생한다. 즉 성매매피해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기존의 일반 위기청소년을 위한 지원망 안에 포괄시킴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다. 기존의 선행연구들(도미향·윤지영, 2004; 김인숙, 2009; 김인숙, 2011)에 의하면, 성인 성매매피해 지원과의 차별화는 물론이고, 일반 위기청소년과 성매매피해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이 차별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선행연구들에서는 성매매피해 청소년들이 성매매피해로부터 겪는 심리·정서적 어려움, 상실감, 신체적 질환,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일반 위기청소년에 대한 접근과는 다른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유은주, 2005; 이자립, 2008; 조양순, 2011).

다른 하나는 성매매피해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방식의 획일화이다. 현재 성매매피해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거의 대부분이 생활기반을 중심으로 단일 기관이 자립의 모든 측면을 포괄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단일 시설 중심의 서비스 외에 보호와 학력지원을 통합하여 한 법인에서 지원하는 새로운 모델이 보이기도 하지만, 이는 매우 극히 일부에 한정되어있는 상황이다. 지원방식의 획일화가 문제가 되는 것은 성매매피해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에 의해 자립의 경로가 단일하지 않고 다양하게 나타나는 점, 그리고 청소년지원시설의 지역사회 혹은 사회적 인프라와 기반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성매매피해 청소년의 자립지원에 한계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기존 자립지원 체계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는 대안적인 서비스 모델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모델은 성매매피해 청소년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청소년들이 보다 주체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여 자립할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모델이어야 한다. 그리고 실현가능한 현실의 특성을 반영함은 물론 성매매피해 청소년들의 자립경로를 반영한 통합적인 자립지원 모델이어야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 활용한 연구방법은 문헌검토와 인터뷰, 설문조사, 전문가 회의이다. 문헌검토 및 분석을 통해 자립경로와 성매매피해 청소년들의 욕구, 성매매피해 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의 현황등을 파악하였으나, 모델 수립을 위한 이들 문헌의 내용이 신빙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로 심층면접과 설문조사를 병행하였다.

1) 문헌검토 및 분석

문헌검토를 통해 첫째, 청소년 자립에 대해 개념적·이론적으로 검토하였고, 둘째, 성매매피해 청소년을 위한 현재의 사회적 지원 인프라를 검토하였다. 셋째, 성매매피해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 지원 실태 검토하였고, 넷째, 성매매피해 청소년 지원과 관련한 외국의 사례 조사 및 분석하였다.

2) 인터뷰 조사

인터뷰 조사는 대표자 및 실무자 인터뷰와 성매매피해 청소년에 대한 인터뷰로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대표 및 실무자 인터뷰는 청소년지원시설과 위기청소년교육센터의 총 5개 기관을 실시하였다. 인터뷰를 통해 현행 자립지원의 실태, 서비스 연계 실태 및 특성, 성매매피해 청소년의 자립 경로 파악 및 자립지원 모델 욕구를 파악하였다.

한편, 청소년지원시설 및 위기청소년교육센터 서비스를 받는 청소년들 7명을 인터뷰하여, 청소년들의 자립 경로를 파악하고, 청소년들의 자립 관련 욕구를 파악하였다. 아울러 5개 기관의 대표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성매매피해 청소년 자립지원에 대한 전반적 견해와 문제들을 파악하였다.

〈표 1-1〉 인터뷰 대상: 성매매피해 청소년

	사 례	연 령	지원 서비스	비 고
1	A	19	시설 내 보호지원 서비스, 자립학교, 인턴십, 자립매장	지원시설
2	B	18	시설 내 보호지원서비스, 자립학교, 인턴십 참여 예정	지원시설
3	C	19	시설 내 보호지원서비스, 검정고시, 직업교육, 인턴십	지원시설
4	D	17	시설 내 보호지원서비스, 검정고시	지원시설
5	E	16	시설 내 보호지원 서비스	지원시설
6	F	19	시설 내 보호지원 서비스	지원시설
7	G	18	상담 및 기타 서비스	위기청소년교육센터

* 시설 내 보호지원 서비스는 지원시설에서 제공하는 상담서비스와 함께 시설별로 차이는 있으나, 시설에서 제공하는 인문학서비스, 문화서비스, 성교육 등을 의미한다.

〈표 1-2〉 인터뷰 대상: 시설 대표

	기 관	유 형	직 함
1	가	청소년지원시설	대표
2	나	청소년지원시설	대표
3	다	청소년지원시설	대표
4	라	위기청소년교육센터	대표
5	마	위기청소년교육센터	대표

3) 설문조사

청소년지원시설 13개소, 위기청소년교육센터 11개소로 총 24개 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 중 청소년지원시설 10개소, 위기청소년교육센터 5개소로 총 15개 기관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설문조사에는 다음과 같은 질문내용을 포함하였다. 첫째, 현행 서비스 및 운영 구조, 둘째, 입소 의뢰 형태, 셋째, 청소년들의 서비스 참여 정도, 넷째, 제공되는 서비스 현황, 다섯째, 기관의 미션, 여섯째, 자립지원 서비스 연계 실태 및 특성, 인프라와 관련한 의견 등을 파악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4)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 실시

두 개 기관 대표자가 자문위원으로 자문회의에 참여, 연구 중간보고를 시행하고 피드백을 받았다.

II. 성매매피해 청소년의 자립

1. 성매매피해 청소년과 자립의 개념

1) 성매매피해 청소년을 위기청소년지원과 분리하여 지원해야 하는 이유

성매매피해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지원에 대해 흔히 던지는 질문 중 하나는 “왜 굳이 성매매피해 청소년만을 위한 인프라가 있어야 하는가?” 라는 것이다. 이 질문에는 성매매피해 청소년도 청소년의 일부이므로 일반 위기청소년이 사용하는 인프라를 함께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러나 일반위기청소년과 성매매피해 청소년은 그들의 경험 자체 즉, 경험의 본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일반위기청소년과 분리하여 지원하는 별도의 인프라는 구축하는 필요하다. 그렇다고 성매매피해 청소년의 모든 과정 즉 알파에서 오메가에 걸쳐 별도의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서비스 전달의 기본구조에서는 별도의 인프라가 필요하며, 필요에 따라 기존의 위기청소년 관련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별도의 인프라가 필요한 것은 성매매피해 청소년들에게 공개적으로 낙인을 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 청소년을 그러한 공개적인 낙인에서 보호하려는 의미가 있다. 성매매피해청소년을 위기청소년 지원과 분리하여 지원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 경험의 본질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성매매피해 청소년은 일반위기청소년과 달리 성을 조건으로 한 만남을 가졌다는 성적경험에서 큰 차이가 있다. 성매매의 피해경험이 있다는 것은 절도나 폭력과 같은 경험과는 다르다. 성적 경험은 상호비난을 하게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성매매피해 청소년들은 이러한 성적 경험이 자신에게 상처를 내고 있다는 성적착취에 대한 자의식을 못하고 있다. 성매매피해 청소년이 경험하는 이러한 특수성은 다른 경험을 하는 일반위기청소년과 성매매피해 청소년을 구별짓게 한다. 성매매는 절도나 폭력과는 다르다. 절도나 폭력은 영웅시되면서 주눅들지 않고, 자기를

표현한다. 그러나 성매매피해 청소년은 상처(낙인)가 있기 때문에 말하는데서 자유롭지 않다. 따라서 이 아이들은 말할 곳이 없다. 절도나 폭력처럼 영웅이 아니다. 상처를 드러내서 억압을 풀어내야 하는데 일반위기청소년과 함께 두면 이것을 할 수 없다. 아울러 일반위기청소년 기관의 실무자들은 이러한 성매매피해 청소년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성매매피해 청소년에 대한 별도의 인프라가 필요하다.

(2) 강한 사회적 낙인 때문에 표면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성매매피해 청소년과 일반위기청소년을 구분 짓는 또 다른 지점은 ‘사회적 낙인’이다. 이는 우리사회가 성매매 또는 성매매 피해여성들에게 가하는 낙인의 강도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그것은 다른 어떤 낙인보다 강력하다. 김인숙(2009)에 의하면, 십대의 성매매피해 청소년들은 그들에게 주어지는 사회적 시선 즉 낙인을 내면화 한다. 즉 자신을 정상적 사람들과 분리된 비정상적인 존재로 규정짓고 타인의 부정적 시선을 내면화 한다. 성매매피해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에 대한 내면화는 빈곤과 가부장적 가치의 적소라 할 수 있는 가족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기존 질서와 규율을 위반하는 성매매를 돈벌이의 거래자원으로 경험한다(민가영, 2009)는 점에서 다른 어떤 경험보다 치명적이고 강력하다. 따라서 이들 성매매피해 청소년들이 다른 청소년들과 섞여 있는 경우, 스스로 조심하고 자신의 경험을 쉬쉬하면서 개방하지 않게 된다. 이들 청소년은 집단 안에 한명이라도 성매매 경험을 하지 않은 청소년이 있으면 말을 하지 않게 된다. 만일 성매매피해 청소년이 일반위기청소년과 함께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의 실무자는 이들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성매매피해 청소년의 특수한 경험을 다루지 못하게 된다. 그들은 성매매피해 청소년의 경험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물어볼 수도, 도와줄 수도 없게 된다. 그 결과 성매매피해 청소년의 경험은 다루어지지 않고 침묵 속에 묻히게 된다. 그러나 만일 성매매피해 청소년들이 함께 같은 공간에 있게 되면 사회적 낙인감이 아무리 크더라도 이들은 서로 자신의 경험을 드러내고, 드러냄으로써 묻고 다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개입의 효과는 커질 수밖에 없다.

(3) 일반위기청소년과 함께 있는 경우 확산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성매매피해 청소년은 다른 위기를 경험했던 청소년과 있게 되면 자신의 경험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러나 자신들의 경험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하여, 같은 공간에 있는 다른 위기청소년들에게 영향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 경험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일반위기 청소년들에게 모종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오히려 일반위기청소년과 섞여있을 경우

‘확산’의 위험이 높아진다. 성매매피해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라도 성매매피해 청소년에 대한 별도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2) 성매매피해 청소년에 대한 연구 동향

십대 청소년 성매매 관련 연구가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시점은 2000년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 이후로 볼 수 있다. 2009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된 이 법안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법률적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하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관리를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본 법안에 따르면, ‘청소년 성매매’는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이를 사는 행위뿐만 아니라 알선하거나 대가를 제공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¹⁾. 본 법안이 마련되기 이전에는 청소년 성매매를 원조교제, 청소년 매춘, 청소년 매매춘, 청소년 윤락, 청소년 성매수라는 말과 혼용하기도 했다(이민희, 2001).

본 법안이 제정된 이후 ‘청소년 성매매’를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볼 것인지, 그 실태는 어떠한지, 문제점은 무엇이고, 지원방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초기 연구들은 법률 제정비 방안에 관련한 해석을 논하는 연구들(권창국, 2001; 정진연, 2001; 윤덕경·박현미·장영아, 2003; 박병식 외, 2007)과 청소년 성매매의 원인을 개인적 요인, 사회적 요인, 문화적 요인 등으로 나누어 파악한 연구들(이민희, 2001; 유문무, 2005)로 나누어볼 수 있다.

법률 제정비 방안에 관련한 해석을 논하는 연구들 중 권창국(2001)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상공개제도’ 적용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법 제정 당시 청소년 성 보호법상의 공개제도는 아동 성학대 성인에 의하여 유발되는 아동 성매매에 한정하여 상습 및 재범의 우려가 있는 범죄자에 대한 예방차원에서의 지역 사회에 대한 경고적·위험 통제적 기능에 한정하여 개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청소년에 의하여 유발되는 성매매 행위는 공개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절차 및 공개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기본권에 대한 침해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반면, 윤덕경·박현미·장영아(2003)는 권창국의 논의와 차이가 있는데, 본 법률 적용상에 법률상 쟁점이 되는 측면을 대가성의 해석문제, 유사 성행위의 개념, 대상 청소년의 처벌 문제, 신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참조.

상공개제도라는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권창국과 달리 성매매피해 청소년에 대한 처벌은 금지되어야 하며, 신상공개제도에 있어서도 공익과 사익이 충돌할 때 공공의 안전을 위해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확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성매매 행위의 원인과 그 결과를 다루는 연구를 살펴보면, 성매매의 원인을 자연적 요인, 사회·심리적 원인, 환경적 요인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자연적 요인은 인간이 본래 성적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정상적으로 성취하거나 극복하지 못하고 외부의 강압이나 착취에 의해서 공포나 혐오, 탐닉 등의 불안정한 성적 경험을 하고 되고 이를 통해 성적 태도가 비정상적으로 발달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정서적 원인으로는 청소년 시기의 발달 특성에 의해 성매매에 호기심을 가질 수 있으며, 또래 문화에 영향을 받아 성매매에 유입될 수 있다는 측면을 말하고, 사회경제적 요인은 성매매를 하게 되는 청소년들의 경우 가정과 사회 그리고 국가에 대한 소외, 박탈감으로 자신감이 없고, 불안해하며 불만족한 삶을 살게 됨에 따라 '일탈' 행위로 인해 성매매를 하게 된다는 차원이다. 또 다른 원인으로, 성매매피해 청소년의 가족의 문제와 입시위주의 교육과 성교육의 부재 그리고 유해환경을 성매매의 원인으로 진단하고 있다.

이처럼 성매매 행위의 원인과 그 결과를 다루는 연구 경향은 10대 성매매피해여성의 성매매에 대한 경험 그 자체가 어떤 것이며, 그것의 개인 내적, 사회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김인숙, 2009).

최근에는 청소년 성매매 실태와 지원방안을 제안하는 연구들(성운숙 외, 2009; 홍봉선·남미애, 2010)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초기 연구들과 달리 성매매피해 청소년의 욕구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청소년 성매매'를 접근함에 있어서 청소년을 성매매 '피해자'로 규정하고 이들을 '보호'의 대상으로 간주한다. 홍봉선·남미애(2010)의 연구를 살펴보면, 성매매피해 청소년은 위협에 처해 있는 사람으로, 학대 희생자이며 성인과 다르게 처우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청소년을 보호하는 복지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현재 성매매피해 청소년을 위한 법률과 제도적 현황을 점검하고, 성매매피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들이 성매매에 유입된 경로와 욕구를 파악함으로써 법률적인 개선방향, 지원체계의 보완, 전달체계의 확립, 예방사업의 확대, 지원시설 및 기관의 특성화, 부처간 협력 강화 등 좀더 나은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과 방안들을 제안한다.

이러한 연구와 달리 십대 청소년을 '보호'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에 문제제기하는 연구들이 있다. 십대 청소년들은 가정과 학교에 있을 때 청소년은 가장 안전하다는 '보호주의'가 무색할 정도로 가정·학교/바깥 세상 사이의 경계를 자유자재로 넘나들 수 있는 자원을 가질 수 있

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와 같은 현실을 고려할 때, 청소년 성매매를 ‘보호’ 아니면 ‘처벌’이라는 이분법의 틀 안에서 바라보게 되면, 청소년들은 보호할 수 있는 존재로 인식됨으로써 이들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맥락들을 감추게 된다는 점(민가영, 2002)을 지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진행된 연구들(김주희, 2006; 변혜정·민가영, 2007; 민가영, 2009; 김은정, 2009)은 성매매피해 청소년들의 경험에 주목하여, 이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성매매를 선택하게 되는지, 그 사회문화적 맥락은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춘다.

김주희(2006)은 십대 여성이 성산업 공간인 ‘티켓 영업 다방’에 유입되는 과정, 이들의 노동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십대 여성들을 피해자로 간주하는 시각과 달리, 십대 여성들은 다방 생활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지지기반이 되는 커뮤니티를 만들어 다방에서의 일상을 놀이와 교차되는 지점에 위치시키고 있으며, 남성과의 관계 속에서 일상을 지속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성매매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다양한 정체성이 허용되지 않는 미성년인 십대 여성들은 성산업에서 가장 비가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가장 열악하고 불법적인 환경에서 일을 선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성 산업 내에서 십대 여성들이 어떤 식으로 위치지어지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김은정(2009)은 저소득층 십대 여성의 성매매 유입과정에 주목하고 있다. 저소득층 십대 여성에게 성매매는 절대적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십대 여성이라는 자원 및 사회적 지위를 통해 가장 큰 재화를 벌 수 있는 방법, 즉 성매매의 유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후, 성매매 단절을 시도하지만,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삶의 환경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의 극복이 개인적 차원에서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 깨닫게 되고, 성매매 산업에 계속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상황에 놓인다고 보았다. 저소득층 청소년의 성매매는 빈곤을 낳는 저소득층이라는 ‘계급’, 우리 사회에서의 성매매 구조에서 일반적으로 성을 팔 것이라고 기대되는 성적 대상으로 여겨지는 ‘여성’, 그리고 노동권이 없이 학생으로서만 고려되어 지는 십대 청소년이라는 ‘연령’이 상호 교차하여 형성되는 사회화 과정이라고 보았다.

민가영(2009)은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질적 연구를 통해 청소년 성매매 행위에서 보호/처벌 논쟁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대안을 모색한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 성매매를 둘러싼 청소년의 자발성과 보호 처벌의 논쟁은 청소년 성매매를 둘러싼 현실, 문화, 생활세계와 그것이 청소년의 총체적 삶 전반에 야기하는 영향과 효과와의 연관성 속에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고, 성매매가 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결과로서의 단일하고 고정적인 성격을 띠는 것이 아니라 과정으로서의 단계성과 유동성, 그리고 역동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연구를 통해 이들이 성매매를 벗어나 다른 상태로 넘어갈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과 변화의

지점을 갖고 있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과정적 변화는 이들에 대한 개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다. 성매매를 벗어나 자기 주도적으로 자신의 삶을 계획, 관리하고 미래를 위해 현재를 유예할 필요성을 스스로 느끼는 시기가 있다는 것과 그러한 동기상의 위기를 초래하는 주변의 요인들에 또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동기상의 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강하게 내외부적으로 자신을 추동할 힘이 없을 경우 다양한 사회 현실을 이유로 다시 성매매로 진입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탈성매매를 가능하게 했던 외부적 조건은 지속적, 통합적, 청소년기 이후까지의 연속적 차원이라는 세 가지 특징을 보여준다. 이십대 초반의 청년들을 위한 쉼터와 사회적 지지기반의 연속선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의 경험이 어떠한 사회문화적 맥락에 위치하고 있는가를 보여준 연구들과 함께, 좀더 나아가 청소년의 경험을 통해 성매매피해 청소년의 자활의 개념과 과정을 논의하는 연구들(김인숙, 2009; 김연주, 2010)이 있다. 김인숙(2009)은 시설 거주 10대 성매매피해여성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통해 자활 과정을 탐색하였다. 10대 성매매피해여성의 자활과정의 핵심 개념은 사회적 기대와 시선에 대한 주체화를 통해 자신의 삶을 재구성, 재해석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자활의 과정은 4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사회적 기대 및 시선의 불화’, ‘사회적 기대 및 시선의 내면화’, ‘사회적 기대와 시선의 외형화’, ‘사회적 기대와 시선의 주체화’가 그것이다. 시설에 입소한 10대 성매매피해여성의 핵심 경험은 의욕의 상실과 사회적 시선의 압력이다. 의욕 상실의 경험은 이들이 사회적 기대 및 규범으로부터 이탈하게 되는 모양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시설 입소 이후 시설의 새로운 학업을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갖게 되는 양상을 보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을 시작하게 된다. 이를 통해 일상적 삶의 의미를 재구성하고 재해석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자활의 과정에서 실천가와의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것과 시설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삶의 다양성을 경험하는 것이 자활 과정을 촉진하는 핵심 기제로 작용하였음을 지적한다.

김연주(2010)는 시설 거주 십대여성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와 참여관찰을 통해, 신빈곤층으로서 십대 여성들의 성매매 경험과 자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들이 처한 빈곤의 문제는 경제적 빈곤뿐만 아니라 학력, 사회적 관계, 건강 등 다양한 사회적 배제의 결과라는 점을 지적한다. 이들의 사회적 배제는 가출을 하고 학력이 없는 이들이 어떠한 사회적 지원도 받지 못한 채 성매매를 통해 생계와 소비 욕구를 해결하는 현상으로 집약되어 나타난다고 보았다. 이들의 자활은 지원 시설에서 주거, 학력, 직업, 사회적 관계, 돌봄 등 개인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자원들을 제공받으며 상처를 치유하고 자신감을 회복하는 과정을 통해 가능하다는 점을 지

적한다. 이처럼 자활은 물질적 안정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자신감의 회복, 사회적 관계망의 확대와 더불어 미래에 대한 기획까지 포함하는 총체적인 삶의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지금까지 초기 법안과 제도 마련 시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간략하게 성매매피해 청소년과 관련된 연구들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초기 연구들이 성매매의 원인과 결과를 찾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현재 연구들은 청소년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이 성매매에 이르는 과정과 탈성매매의 과정을 사회문화적 맥락을 통해 보여줌으로써 성매매의 경험이 개인의 '탈선' 혹은 '문제'가 아니라 이들이 처한 사회구조적인 맥락을 함께 보는 것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구조적 맥락 속에서 어떠한 관점에서 청소년 성매매를 접근할 것인지, 그리고 탈성매매를 위한 사회적인 지원 체계와 방식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성매매피해 청소년과 자립

(1) 십대 여자 청소년에 대한 이해

성매매피해 청소년의 거의 대부분은 십대의 여자 청소년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십대 여자 청소년은 발달심리학에서 청소년에 대한 설명을 통해 이해된다. 이 설명의 틀은 현재까지 청소년기를 이해하는 가장 강력한 현실적 힘으로 존재한다. 즉, 십대 여자청소년은 인생의 흐름에 따른 하나의 단계로서 인생의 흐름 중 유일한 "전환기"로 상정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십대 여자청소년은 아동기에서 성인기로의 전환, 학교에서 일로의 전환, 의존에서 독립으로 "전환"하려는 불완전하고 미완성된 존재이고 따라서 이러한 전환기적 특성 때문에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 질풍노도나 인격의 분열, 정체성 혼란으로 언급되는 이 시기의 특징은 청소년기에 처한 십대 여자청소년의 특징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청소년기의 십대 여자청소년을 육성과 보호의 대상이라는 지배적 이미지를 생산하게 한다. 특히, 발달심리학적 입장에서 볼 때 십대 여자청소년의 전환기적 경험은 시공을 초월하여 모든 십대 여자청소년에게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경험이다.

그러나 십대 여자청소년에 대한 이러한 강력한 설명 이외에 다른 설명들이 존재한다. 우선, 같은 발달심리학내에서도 청소년기에 대한 다른 설명이 있다. 첫째, 청소년기에 대한 이해에 있어 성(gender)을 간과한 점을 지적하고 성적 차이를 통해 청소년기를 이해할 것을 요구한 것이 그것이다. 이 입장에서는 동일한 경험이라 하더라도 남녀 간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

는데, 이 설명은 특히 십대 여자청소년의 이해에 필수적이다.

둘째, 전환기는 청소년기에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인간은 인생의 전 과정에서 여러 번의 전환기를 경험하기 때문에 유독 청소년기만을 병리와 문제의 시기로 국한하여 인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주장한다. 이 외에 발달심리학의 설명을 벗어나 사회학적 맥락에서 청소년기를 설명하는 입장을 들 수 있는데, 여기에도 여러 설명이 있다.

셋째, 청소년기는 “전환기”가 아닌 사회적 상황이 반영된 “사회적 사실”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청소년기의 개념은 당시의 사회적 상황 여하에 따라 순환적으로 발견되고 재발견되는 현상이다. 예를 들어, 경제가 호황일 때는 청소년기는 한가하고 탐색하는 시기로 여겨지지만, 경제가 불황일 때는 “전환기”가 되어 많은 문제를 갖는 개념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전환기”로서의 청소년기는 시장경제체제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문제가 반드시 동반되는 문제적 시기라고 보고 있다(Hewer, 1994).

넷째, 심리·생물학적 “전환기” 보다는 일의 세계(사회경제적 관계와 이슈)로 옮겨가는 “사회경제적 이동”을 강조하는 것이다. 여기서 사회경제적 이동은 단순히 직업을 갖는 것만이 아닌 직업을 갖는 것과 함께 직업적 세계 혹은 사회적 세계에 대한 방어력을 갖추고 당당히 맞설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입장에서 십대 여자청소년은 아동기에서 성인기로의 심리·사회적 전환기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놀이와 학교의 세계에서 일의 세계로 옮겨가는 사회경제적 움직임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 관점에서는 기존의 청소년기에 대한 개념이 심리·사회적 전환기에만 초점을 둘 뿐 일의 세계로 옮겨가는 사회경제적 이동에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 결과 청소년 개인과 그 가족 및 학교를 비난하기가 순환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다(Hewer, 1994).

청소년기에 대한 이러한 다양한 설명을 전제로 할 때 우리가 관심을 갖는 십대 여자청소년에 대한 이해는 좀 더 넓어질 수 있다. 즉, 심리·사회적 전환기임을 인정하되 그것만으로 청소년기를 이해하는 경향을 벗어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십대 여자청소년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낮은 자존감과 문제행동은 그들을 돕기 위해 생겨난 사회 구조와 제도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유지되기도 한다” 라든가 “청소년들의 불건강한 행동이 실제로는 건강한 것이거나 혹은 적어도 불건강한 사회상황에 대한 대응일 수 있다” 고 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청소년기의 십대 여자청소년은 기존의 체계에 적응하고 기존의 체계를 내면화하면서 전환되기 보다는 그들 스스로 “만들면서 만들어지는” 과정을 통해 전환될 수 있다.

이러한 이론적 관점에 비추어볼 때 십대 여자청소년을 위한 자립은 적어도 청소년에 대한

가장 강력한 이론적 시각인 “문제를 내포한 심리적 전환기” 라는 틀에 얽매이지 말아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보다는 십대 여자청소년을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당당한 삶의 주체로 상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십대 여자청소년들이 가진 “약점” 과 “결함” 조차 그것은 그들이 전환기적 과정에서 심리적, 본질적으로 불가피하게 겪을 수밖에 없는 사안으로 치부하기보다 그것들의 사회적 근원을 강조하여, 십대 여자청소년 개인과 사회적 근원간의 상호작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자립에 대한 이해

“자립”의 개념에 대한 논의는 그 스펙트럼이 그리 넓지 않다. 학자마다 자립 개념상에 다소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 폭은 비교적 좁은 편이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자립의 개념은 “자신에게 편안하고 가족과 지역사회 그리고 사회속의 의미 있는 사람들과 즐겁게 연계를 가지는 자기충족적(self-sufficient)이고 독립적인 생활(independent living)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Maluccio, 1990)” 이다. 이는 개별적인 독립이라는 의미 보다는 다른 사람들과의 대인관계와 지역사회 자원을 잘 활용하여 스스로를 지켜갈 수 있는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독립상태를 의미한다.

자립은 또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의지와 능력에 따라 모든 것을 결정하고 행동하는 독립성을 말한다. 나아가 자신의 대한 적절한 통제를 통해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립의 개념은 생계를 스스로의 힘으로 유지하는 경제적인 자조부터 정서와 심리적인 독립까지 포함한다. 자립의 핵심은 개인의 자립으로서 ‘일’ 과 사회적 협력을 갖는 ‘의식’ 이다. 그동안 경제적인 관점과 개념으로만 이해했기 때문에 자립의 원초적 수단으로서 일의 본연의 의미를 강조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일” 에는 개인적인 수준의 요소가 아니라 사회의식이 내포되어 있다. 사회의식은 함께 살아가는데 필요한 도덕과 윤리이다. 결국 자립은 함께 사는 삶을 통하여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서서 일을 처리해 나가며 이로써 만족을 느껴나가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들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정신인 동시에 실천적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노혁, 2002).

자립의 개념에서 중요시 되는 것은 “자립준비” 개념이다. 자립준비는 두 가지 차원에서 논의된다. 하나는 사회적 독립을 위한 영역으로 자원의 습득, 이용, 그리고 자원의 할당을 위한 것으로 교육, 직업, 직업조사, 주택, 그리고 소비자로서 기술영역이 포함되는 주위자원들을 동원하고 활용하는 유형의 자원관리기술이다. 다른 하나는 자신의 심리적 독립을 위한 기본적 능력으로서 일상생활기술과 책임감, 계획능력, 대인관계기술을 중심으로 한 무형의 자기관리기술(Cook, 1986; Maluccio, 1990)로 논의되고 있다.

이처럼 자립과 자립준비에서 중요하게 언급되는 것은 “기술”이다. 즉, 자립준비는 “기술” 특히, 생활기술을 준비시킴으로써 획득될 수 있다는 사고가 자립 개념 논의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자립에 이르기 위해서는 자원관리기술능력, 무형의 자기관리능력이 요구되며, 유능감, 친구와 친족들과 상호작용, 자녀양육능력, 성에 대한 책임,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와 참여, 중요한 연계 만들기, 일상생활기술, 긍정적인 자아정체감 등의 상호의존적인 생활을 준비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들이 요구된다(Mech, 1994).

이와 같은 자립 개념의 설정은 사실상 몇 가지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우선, 자립의 목적과 수단 간의 괴리이다. 독립을 위한 준비로 간주되는 자립의 목적이 경제, 사회, 심리적 독립으로 언급되지만 자립준비의 상당 부분이 기술의 훈련을 통한 준비, 생활기술의 숙련화, 이해(인식)를 통한 성장 등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자립 측정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미국의 위탁가정 청소년의 자립준비 프로그램인 Casey Family Program을 평가하기 위한 Ansell-Casey Life Skill Assessment (ACLSA)를 들 수 있다. 이 척도는 6개 영역 총 1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영역은 아래와 같다.

- (1) 일상생활기술
- (2) 주거 및 지역 자원 관리
- (3) 돈관리
- (4) 자기보호
- (5) 사회적 발달
- (6) 일, 공부 습관

이외에 미국의 DHSS(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Services)에서도 자립준비에 필요한 자립기술의 하위영역을 일상생활기술, 건강관리기술, 주택관리기술, 교육 및 직업훈련기술, 진로(직장문제)기술, 돈관리 기술 등으로 나누었다. 여기에 자조집단 및 지역사회의 자원활용기술 그리고 자아향상 및 자립심 강화 등이 포함되기도 한다.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노충래, 2001 재인용).

- (1)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
- (2) 진로탐색, 직업훈련, 직장의 배치 및 직장유지에 관련한 서비스
- (3) 일상생활기술훈련, 가계예산 및 재정관리 기술서비스

- (4) 약물남용 예방관련 서비스
- (5) 예방의학 관련 서비스 (예, 흡연, 영양교육, 임신예방 서비스)
- (6) 교육서비스 (예, 청소년의 출석확인, 성적관리)
- (7) 직업훈련 및 구직서비스
- (8) 고등교육을 위한 준비 및 교육(대학교육)
- (9) mentor 및 성인과의 교류를 위한 서비스
- (10) 재정, 주택, 상담, 구직, 교육 기타 필요한 서비스를 이전에 아동시설에 있었던 만 18세 이상 21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도 제공

미국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자립 개념은 우리나라에도 수입되어 상당부분 적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존 십대 여자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계획에 나타난 자립은 다소 편차와 변이가 있기는 하지만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십대 여자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비난이 전체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가출이나 학업중단, 성매매와 같은 “특수” 십대 여자청소년은 암묵적으로 “문제” 를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그들의 문제 교정에 관심을 갖는데서 찾아볼 수 있다. 십대 여자청소년이 겪는 어려움은 사실상 그녀가 가진 여러 측면 중 한 측면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생활기술 및 사회적 기술의 함양을 강조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의사소통과 자기표현, 대인관계 향상, 진로탐색, 갈등해결능력 함양, 관계능력 키우기 등이 그것이다. 이 점은 앞서 언급했던 자립에 관한 논의에서도 드러났듯이 자립과 이들 기술의 함양을 등치시키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셋째, 심리적 기능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내면세계에 대한 인식과 조화, 긍정적 자아개념, 자기신뢰감, 자율성과 책임감, 자아발견, 바람직한 가치관과 정체감 형성, 심성수련, 성격변화, 내적 힘을 기르기, 자아성취감 등이 주된 자립 프로그램의 목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이 이를 말해준다.

넷째, “관리” 기술의 습득을 강조하고 있었다. 이는 공부습관의 관리, 돈 관리, 각종 자원 관리(식사준비, 청소, 취업)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십대 여자청소년의 자립은 기술을 함양하고, 관리기술을 습득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않는다. 습득된 기술과 자기관리 능력이 삶속에서 구체적으로 경험되고 인생설계의 동력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뿌리내려할 토양이 필요한데, 그것의 핵심에 일자리가 있다. 십대 여자청소년의 자립은 결국 노동시장에의 참여와 분리될 수 없으며, 이는 자립에서 경제적

자립의 중요성을 말해준다. 따라서 십대 여자청소년이 자립한다는 것은 주체적 자아와 함께 자신의 꿈을 일을 통해 구현해갈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기회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자립의 다차원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성매매피해 청소년들의 자립을 위해서는 자원을 습득하고, 직업을 준비하고, 돈을 관리할 수 있는 경제적 자립은 물론이고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삶을 관리할 수 있는 생활자립, 대인관계와 사회적 자원을 얻고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자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신감과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정서적 자립이 총체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김정연, 하지선, 김인숙, 2011).

2. 성매매피해 청소년의 자립지원의 실태

1) 성매매피해 청소년에 대한 기존 자립지원의 유형

성매매피해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기존접근은 단연코 시설 특히 청소년지원시설 중심이다. 일반위기청소년을 위한 인프라를 포함하여 성매매피해 청소년이 자립을 위해 접근할 수 있는 기존의 인프라를 분류해 보면 크게 생활기반 단일모델, 기능분리형 모델, 통합적 경제자립 모델, 외부지원 모델, 관료적 사례관리 모델의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중 생활기반 단일모델과 기능분리형 모델, 통합적 경제자립 모델이 성매매피해 청소년을 위해 특화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1) 생활기반 단일 모델

‘생활기반 단일 모델’은 쉼터, 생활관(공동체 생활)의 형태를 띠면서 가출, 성매매피해 청소년들의 생활에 밀착해 이들에게 자립에 필요한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이다. 성매매피해 청소년 지원시설의 대다수가 이에 해당된다. 이들 시설에서는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상담 및 심리지원 서비스, 자립지원 서비스 등 자립에 필요한 복합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중 자립지원 서비스는 주로 교육지원(학교생활지도, 학습지도, 학교연계), 직업훈련, 직장체험으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 우리나라 성매매피해 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의 대부분이 이 모델에 근거해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지원은 문화수련 활동, 검정고시 준비, 대안학교와 정규학교로의 연계로 이루어지고 있고, 직업훈련은 자격증 취득 및 기술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직장체험은 단기적이거나 일시

적인 경우가 많다. 여기서 심화상담이나 교육, 자격증 취득 교육, 기술교육 등은 모두 연계서비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외에도 다수의 보호시설에서 가출, 성매매 피해 청소년들의 자립을 위해 인턴십을 개발하고, 이를 취업으로 연결하기 위해 공식적, 비공식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단기쉼터와는 달리 중장기 쉼터는 자립지원과 사회복귀에 목적을 두는데, 핵심영역을 취업지원으로 하고 학업지원, 생활지원, 상담, 진로, 적응지도를 보조영역으로 설정하여 이들 피해 청소년을 지원하고 있다(문태식, 2009).

‘생활기반 단일 모델’은 가출, 성매매 피해 청소년의 생활에 밀착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들의 구체적인 욕구를 파악할 수 있고, 변화하는 욕구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욕구를 파편적으로가 아닌 통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한 기관이 이들 여성의 자립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기관의 능력과 역량에 따라 자립의 성공과 실패가 좌우되기 쉽고, 기관이 자립의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과부하가 걸릴 가능성이 높다.

(2) 기능특화 모델

‘기능특화 모델’은 ‘생활기반 자립 모델’이 제공하는 종합적 자립 서비스를 일상생활지원(보호)과 교육지원, 직업훈련 및 자립의 기능을 분리하여 각각 독립적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자립 지원의 통합성을 도모하는 모델이다. 현실적으로는 하나의 법인이 지원시설(쉼터), 대안학교, 그룹홈(10대 혹은 20대 이후의 청소년을 위한)을 운영하는 형태를 띤다. 경남 범속의 집, 새날을 여는 청소년 집, 로템등이 이 형태에 속한다.

이 모델에서는 일상생활지원(보호)과 교육지원, 직업훈련 및 자립의 세 가지 영역의 기능을 분리하여 각 기능을 독립적이고 특화하여 접근한다. 일상생활지원을 하는 쉼터, 교육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대안학교, 대안학교 이후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그룹홈이 그것이다. ‘생활기반 단일 모델’과 다른 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즉 자립의 핵심 요소들을 한 시설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핵심 요소의 기능을 담당하는 기능을 전문화하여 각각의 기능을 집중하고 특화한다는 점이다.

‘기능특화 모델’의 장점은 첫째, 자립 요소를 특화하고 집중함으로써 서비스가 성매매 피해 청소년들의 특성에 맞추어 전문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특히 생활관과 교육의 기능을 특화하여 전문화함으로써, 보다 심도있고 다채로운 교육과 경험을 이들 여자청소년에게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립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교육지원의 경우, 성매매 피해 청소년들에게 보다 특화하여 교육 내용을 개발, 보다 풍부하고 질적으로 좋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데 의

미가 있다. 또한 대안학교 내 교사들의 협력을 통해 쉼터 단일 모델보다 참여자에 대해 보다 특화되고, 적합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집중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둘째, 성매매피해 청소년들의 자립이 선형적이지 않고 순환적으로 이루어지긴 해도(김인숙, 2009), 자립의 일련의 단계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모델에서는 이러한 자립의 단계들 각각을 한 지역에서 연속하여 제공할 수 있다는 잇점이 있다. 의욕을 상실하고 사회적 낙인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들 성매매피해 청소년들이 구체적 일상의 재구성을 통해 의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쉼터와 같은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게 한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혹은 단계적으로 대안학교 생활을 통해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립의 핵심적 조건을 갖추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이들 여성이 법적 제한에 의해 쉼터를 떠나야 할 때 그룹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른 어떤 경우보다 서비스의 연계를 높일 수 있다.

셋째, ‘기능특화 모델’은 앞서 언급한 자립의 단계만이 아니라 성매매피해 청소년들의 생애 주기를 반영하는 모델이기도 하다. 심리사회적 임파워먼트와 함께 학력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만으로 자립이 달성되지는 않는다. 자립은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순환적이고 장시간을 필요로 하는 긴 과정이다. 따라서 자립에는 학력과 기술을 습득했다라도, 또 18세가 지나서라도 더 자립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 ‘기능특화 모델’은 바로 이러한 가출, 성매매 피해 여자청소년의 생애주기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보호, 교육, 자립지원이 한 지역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통합적 서비스의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이 모델에서 그룹홈은 연령대 높은 성매매피해 청소년들의 입소생활을 위한 제2의 쉼터 성격을 갖고 있다. 따라서 ‘기능특화 모델’은 ‘쉼터-대안학교-제2쉼터 모델’로도 볼 수 있고, 기능을 특화했다고는 하지만 보호와 교육을 주로 특화했고, 직업기능에 대한 전문적 특화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 하지만 그룹홈이 장기적인 인턴십과 같은 보다 적극적인 자립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잠재성은 여전히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기능특화 모델’이 갖는 또 다른 제한점은 특화된 기능들을 한 지역사회에서 모두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서비스가 특정의 지역적 경계 내에서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일정 한계가 있을 수 있다.

(3) 통합적 경제자립 모델

‘통합적 경제자립 모델’은 2009년부터 서울시의 늘푸른여성지원센터가 가출, 성매매피해 청소년을 위한 경제적 자립에 초점을 두고 실험적으로 시도한 모델이다. 이 모델은 성매매피해 청소년에게 경제적 자립은 다른 어떤 자립보다 파급력과 영향력이 크며, 경제적 자립은 다차원적 과정이라는 점, 그리고 성매매피해 청소년의 자립은 경제적 자립의 요소들을 분리하여 독립

적이고 통합적으로 구축함으로써 극대화될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출발하였다.

이 모델을 현실에서 구축하기 위해 늘푸른여성지원센터는 가출, 성매매피해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 2곳을 신설, 운영하였고, 인턴십 매장과 자립매장을 동시에 직업 혹은 위탁운영하게 하여 성매매피해 청소년들의 자립을 도왔다. 이 모델은 모니터링 팀을 중간 매개자로 설정하여 기관들간에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고, 기관들이 참여와 체험을 핵심 실행전략 성매매 피해 청소년들의 자립을 지원하였다. 즉 이 모델은 성매매피해 청소년들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이들에게 필요한 학력지원(대안학교 2곳)과 취업지원을 위한 새로운 형태를 시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현재는 각 행위주체들(대안학교, 인턴십 매장, 자립매장)은 있지만 중간에서 관리 및 매개 역할을 하던 모니터링 팀이 해체되었고, 모델의 정착 및 확대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김인숙, 2011)

(4) 외부 지원 모델

‘외부 지원 모델’은 특정 기관이 자립지원 프로그램 모듈을 만들어 자립지원을 요청한 기관이나 시설에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다. 서비스를 받는 시설의 입장에서 보면 성매매 피해 청소년들에 대한 자립지원을 기관 외부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외부 지원 모델’로 명명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의 ‘두드림 존(Do Dream Zone)’ 사업이 대표적이다.

‘두드림 존’ 사업은 위기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사회진출지원 프로그램으로서 전국 15개 ‘청소년지원센터’에 의해 제공된다. 이 프로그램은 자립 준비에 필수 요소인 직업진로 동기화, 경제교육, 직업탐색, 구직기술, 대인관계 기술, 일상생활 기술, 결의 다지기과 목표 세우기 등 총 6회기 45모듈로 구성되어 있다(권해수 외, 2008). ‘두드림 존’은 교육 프로그램, 체험 프로그램, 사회진출지원 프로그램의 3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1단계인 교육프로그램에서는 꿈과 비전에 대한 동기부여, 직업세계 탐구, 자기관리 방법을 위한 프로그램이, 2단계인 체험 프로그램에서는 직업체험이, 그리고 마지막 3단계인 사회진출지원 프로그램에서는 취업 및 인턴십, 직업훈련, 검정고시, 복교지원 등을 하게 된다.

그러나 ‘두드림 존’ 프로그램은 학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미비하고, 직업능력 강화에 대한 지원이 미비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특히 직업훈련과의 연계에 있어 일반적인 직업에 대한 넓은 지식이 주를 이루는데, 이 보다는 특정 직업에 대한 깊은 지식과 경험을 통한 훈련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권해수 외, 2008).

‘두드림 존’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외부 지원 모델’은 프로그램이 구조화되어 있어 짧은 시간에 많은 수의 위기 청소년들에게 자립지원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효율성이

높아 양적인 측면에서 자립의 성과를 가시화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

그러나 외부의 구조화된 프로그램이 제공할 수 없는 복합적 성격의 서비스나 까다롭고 섬세한 접근이 필요한 대상에 대한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지원 프로그램이 모듈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의 융통성이 적고 오히려 획일성을 가중시킬 위험이 있다. 특히 프로그램 제공 기관과 받는 기관간의 원활한 상호소통과 상호작용이 어렵게 되면 그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뚜렷한 한계를 갖는다.

(5) 관료적 사례관리 모델

‘관료적 사례관리 모델’은 청소년과 관련된 공적체계에 기반을 두고 사례관리 전략을 적용하여 위기 청소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말한다. 사례관리의 중심 조직은 공적 전달체계가 된다. ‘관료적’이라는 수식어는 바로 서비스 전달의 중심조직이 공적 전달체계에 있다는 의미이다. 혹자는 이를 “중개 모델”로 부르기도 한다. 이러한 중개모형에서 클라이언트에 대한 직접개입은 어려우므로, 대체적인 형태의 사례관리 시스템은 이층구조이다. 정부 혹은 정부에 고용된 사례관리자가 수급자격이나 기초적인 사례과일을 작성하고 관리하고, 일선 기관의 사례관리자에게 의뢰하는 역할을 하는 반면, 일선 사례관리자는 구체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홍선미, 2006). ‘관료적 사례관리 모델’은 2008년 이후 우리 사회의 복지지원 패러다임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

청소년 지원에서 이 모델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이다. CYS-Net은 시군구의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중심조직이 되어 사례를 관리하는데, 이 센터의 역할은 주로 사례를 발굴, 사정, 배치하고 그 결과에 대한 실적을 보고받으며, 이를 통해 기관 간 서비스를 조정한다. CYS-Net이 강조하는 것은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이다. 지역사회 내 기관 간 네트워크를 통해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위기 청소년의 욕구에 맞는 통합적 서비스(청소년 상담만이 아니라 긴급구조, 보호, 치료, 자립, 학습 등)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 모델은 일견 ‘지역사회’, ‘네트워크’, ‘통합’이라는 키워드를 담고 있어 아주 이상적인 모델처럼 보이지만 도움을 청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서비스의 통합성과 보호의 연속성을 어떻게 달성해내느냐의 가능성 정도에 따라 결과는 판이하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시스템이라 말하나 권위주의적 성격이 많이 반영되어 있다. 왜냐하면 이 모델의 구조는 중심조직이 관료적 통제를 행사할 수 있고, 민간 현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억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연계를 한다지만 중심조직이 민간기관 위에서 통제하고 관리하는 역할

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현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실천가들이 전산처리와 사무보고에 치여 정작 중요한 서비스 제공을 방해받고 있다고 한다.

2) 자립지원의 실태

현재 성매매피해 청소년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을 실시하는 기관들의 실태와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다음의 내용은 청소년지원시설 10개소, 위기청소년교육센터 5개소의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결과이다.

(1) 기관의 설립년도

기존의 시설들이 대부분 2005년 성매매방지법상의 청소년지원시설로 전환되어 왔지만, 그 연혁은 전환 시기 이전부터 이어져 온 것으로 1996년부터 2000년 사이에 청소년지원시설 6개소, 위기청소년교육센터 3개소가 설립되어 성매매피해 청소년을 위한 시설의 본격적인 지원이 약 15년 이상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2006년 이후에도 청소년지원시설 2개소가 설립 되어 최근에 이르기까지 청소년지원시설의 인프라 구축이 이루어져왔음을 파악할 수 있다.

〈표 2〉 기관 설립년도

년도	해당 기관 수	분류
1995년 이전	1개소	청소년 지원시설
1996년 - 2000년	6개소	
2001년 - 2005년	1개소	
2006년 - 2010년	2개소	
1996년 - 2000년	3개소	위기청소년 교육센터
2001년 - 2005년	2개소	

(2) 청소년 입소 및 이용 인원 추이

① 청소년지원시설

2009년부터 2011년에 이르기까지 청소년지원시설에 입소한 청소년의 인원 추이를 살펴보면, a 시설은 큰 변동이 없고, b, f 시설은 점차 증가추세에 있다. c, d, e, g, h, j 시설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입소 인원 감소추세 경향을 보인다. 즉 응답한 청소년지원시설의 75%가 감소추세 경향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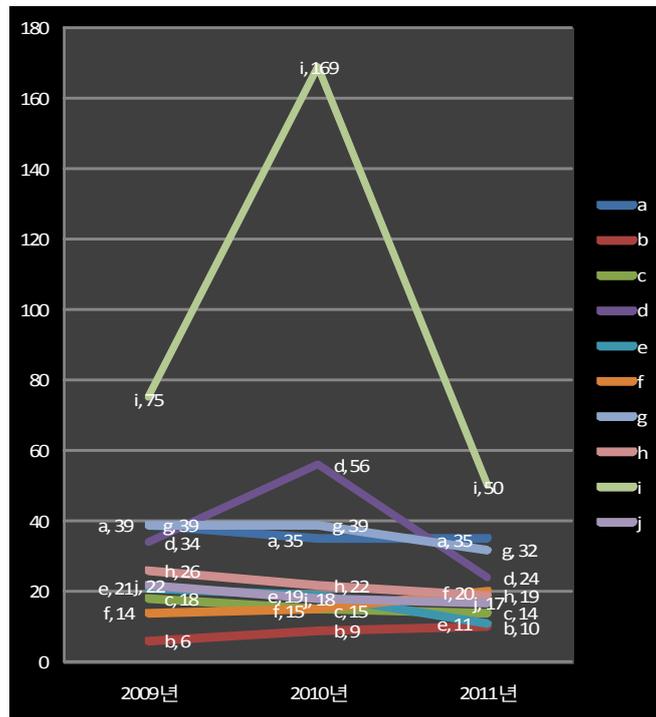
전체 시설로 보면, 2009년부터 2011년에 이르기까지 매해 청소년의 평균 입소인원은 30.8명 이고, 2009년에서 2010년 동안 증가하였으나 2011년에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표 3〉 2009년-2011년 청소년지원시설 입소 청소년 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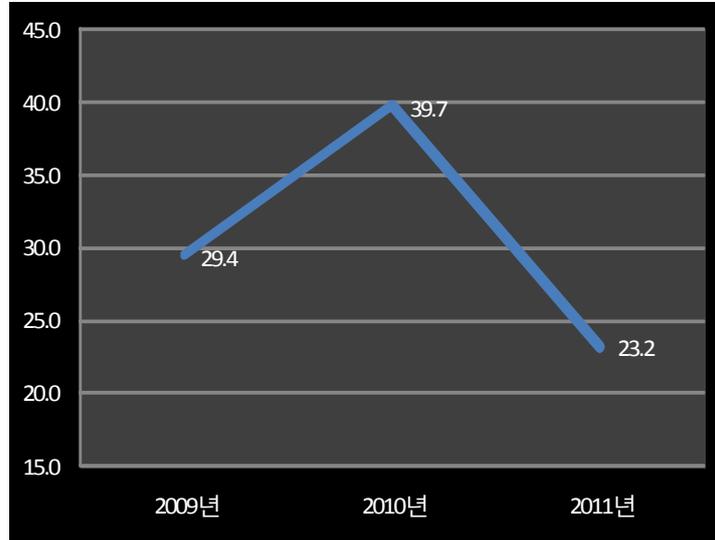
(단위: 인원)

기관	2009년	2010년	2011년	평균 입소 수
a	39	35	35	36,3
b	6	9	10	8,3
c	18	15	14	15,7
d	34	56	24	38,0
e	21	19	11	17,0
f	14	15	20	16,3
g	39	39	32	36,7
h	26	22	19	22,3
i	75	169	50	98,0
j	22	18	17	19,0
평균입소수	29,4	39,7	23,2	30,8

〈그림 1〉 2009년-2011년 입소 청소년(인원) 수 추이 그래프 (시설별)



〈그림 2〉 2009년-2011년 입소 청소년 수 추이 그래프 (전체)



② 위기청소년교육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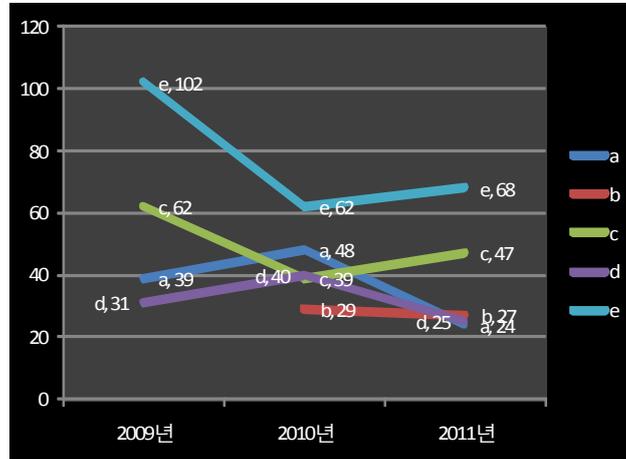
2009년부터 2011년에 이르기까지 위기청소년교육센터를 이용한 청소년의 인원 수 추이를 살펴보면, c, e 센터는 큰 폭 감소하였다가 다소의 증가 추세에 있고, a, b 센터는 소폭 증가하였다가 감소 추세에 있고, b 센터는 이용인원이 다소 감소한 상태이다. 뚜렷이 증가추세에 있는 센터 유형은 발견되지 않았다.

〈표 4〉 2009년-2011년 위기청소년교육센터 이용 청소년 수 추이

(단위 : 인원)

기관	2009년	2010년	2011년
a	39	48	24
b	-	29	27
c	62	39	47
d	31	40	25
e	102	62	68

〈그림 3〉 2009년-2011년 위기청소년교육센터 이용 청소년 추이(인원) 그래프



(3) 청소년 평균 입소 기간 추이

2009년부터 2011년에 이르기까지 청소년지원시설에 입소한 청소년들의 평균 입소 기간 추이를 살펴보면, a, c 시설은 감소추세이고, b, i 시설은 소폭 증가했다가 감소추세를 보이고, d, j 시설은 증감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으며, e, f, g, h 시설은 증가추세를 나타낸다.

한편 청소년의 평균 입소기간 유형을 살펴보면, 평균 입소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4개소, 6개월에서 1년 미만인 경우는 3개소가 해당되며, 1년 이상 입소하는 기관은 3개소가 해당된다.

〈표 5〉 2009년-2011년 청소년지원 시설 입소 청소년의 평균 입소기간

(단위 : 개월)

기관	2009년	2010년	2011년	3년 평균 입소기간
a	5	4	3.6	4.2
b	11	17	14	14.0
c	22	21	13	18.7
d	5	4.5	4.5	4.7
e	5	6	7	6.0
f	8.5	10	10	9.5
g	2	3	4	3.0
h	8	8	11	9.0
i	17	19	16	17.3
j	5	5	6	5.3

〈표 6〉 2009년-2011년 청소년지원 시설 입소 청소년의 평균 입소기간 분류

년 도	해당 기관수	분 류
6개월 미만	4개소	청소년 지원시설
6개월 - 1년 미만	3개소	
1년이상 - 1년 6개월 미만	2개소	
1년 6개월 이상 - 2년 미만	1개소	

(4) 현 청소년지원시설 입소 청소년의 연령 (2011년 현재)

청소년지원시설 입소 청소년의 연령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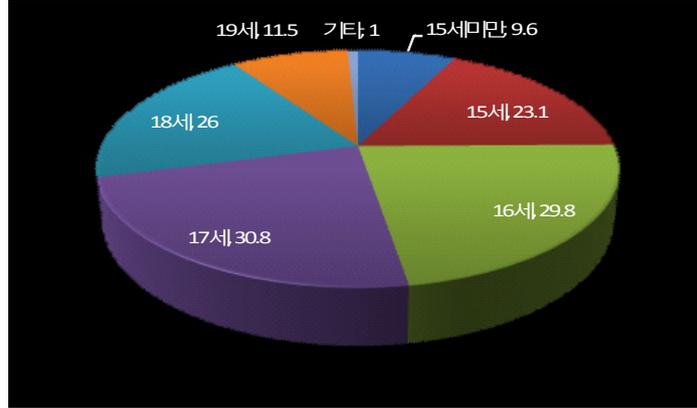
응답 시설의 전체 입소 청소년을 보았을 때 15세미만은 10명, 15세는 24명, 16세는 31명, 17세는 32명, 18세는 27명, 19세는 12명, 기타 1명이다. 이를 비율로 환산하면, 17세가 30.8%, 16세가 29.8%, 18세가 26.0% 순으로 연령비율이 많다. 15세 미만은 비율적으로 보면 9.6%라는 가장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는 있지만 매우 낮은 연령에서도 성매매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표 7〉 현 입소 청소년의 연령 분포

(2011년 현재, 명수)

기관	15세 미만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기타	계
a	0	1	2	3	3	3	0	12
b	2	2	2	3	1	0	0	10
c	0	2	2	1	4	2	0	11
d	3	3	9	2	7	0	0	24
e	1	0	0	4	3	2	0	10
f	2	3	2	2	1	1	0	11
g	1	0	1	5	4	3	0	14
h	0	2	2	3	3	1	1	12
i	1	10	8	6	0	0	0	0
j	0	1	3	3	1	0	0	0
소계	10.0	24.0	31.0	32.0	27.0	12.0	1.0	104.0
비율	9.6	23.1	29.8	30.8	26.0	11.5	1.0	100.0

〈그림 4〉 현 입소 청소년의 연령 분포(2011년 현재, 비율)



(5) 특수 욕구를 가진 청소년의 발생 추이

미혼모나 지적장애와 같은 특수욕구를 가진 청소년들의 발생의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추이를 분석하였다.

아래 그림을 참고해보면 미혼모와 관련한 어려움에 대한 지원에 욕구를 가진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지적장애의 경우 꾸준히 욕구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성매매피해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고려할 때 이들 특수욕구를 가진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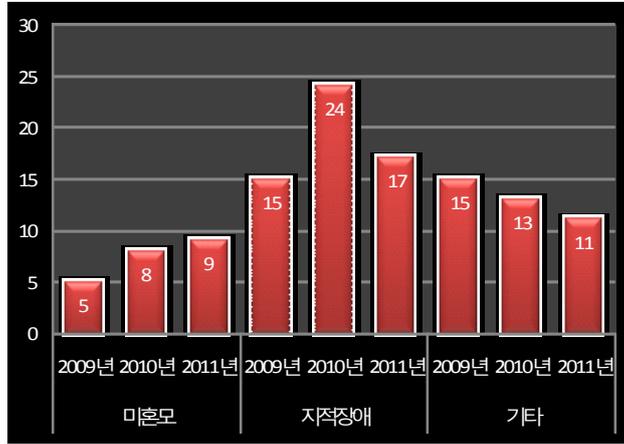
〈표 8〉 특수욕구를 가진 청소년의 발생추이

(단위 : 명수)

기관	미혼모			지적장애			기타		
	2009년	2010년	2011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09년	2010년	2011년
a	1	1	0	3	5	5	0	0	0
b	0	0	1	0	0	0	0	0	0
c	0	2	0	0	0	0	0	0	0
d	1	2	3	0	0	0	0	0	0
e	0	0	3	0	0	1	0	0	0
f	0	0	0	2	2	2	0	0	0
g	1	0	1	2	9	3	0	0	0
h	0	0	0	1	2	1	0	0	0
i	2	3	1	0	0	0	0	0	0
j	0	0	0	7	6	5	15	13	11
소계	5	8	9	15	24	17	15	13	11

〈그림 5〉 특수육구를 가진 청소년의 발생추이

(단위 : 명수)



(6) 사례 의뢰 기관 비율

성매매피해 청소년이 어디로부터 의뢰되어 오는지, 각 사례의뢰 기관들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다.

① 청소년지원시설

a 기관의 경우 기타형태의 비율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사이버상담을 통해 사례발굴 및 의뢰가 이루어지는 비율이 많다. b 기관의 경우 사이버상담을 통해 사례발굴 및 의뢰가 이루어지는 비율이 가장 많다. c 기관의 경우 1366-1388 과 아웃리치를 통해 사례발굴 및 의뢰가 이루어지는 비율이 가장 많다. d 기관의 경우 기타형태의 비율이 가장 많고, 법원 및 보호관찰소로부터 사례발굴 및 의뢰가 이루어지는 비율이 가장 많다. e 기관의 경우, 위기청소년교육센터로부터 의뢰되는 비율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1366-1388로부터 의뢰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 f 기관은 기타 의뢰 비율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1366-1388 순이다. g 기관도 기타 의뢰 비율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원스톱지원센터 의뢰 비율이 가장 많다. h 기관은 법원 및 보호관찰소로부터 의뢰되는 비율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위기청소년교육센터로부터 의뢰 비율이 많다. I 기관은 기타비율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법원 및 보호관찰소로부터 의뢰되는 비율이 가장 많다. 마지막으로 j 기관은 기타의뢰비율이 가장 많다.

각 기관별로 높은 순위로 나온 의뢰처의 빈도를 따져보면 1366-1388 기관과 법원 및 보호관찰소가 각각 3개 기관에서 높은 순위로 응답하여 이들 기관으로부터 성매매피해 청소년의 사례

발굴 및 의뢰가 많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기타 유형 제외).

기타 유형을 제외하고, 비율 소계를 백분율화 해보면 청소년지원시설 자체 아웃리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사례발굴 비율은 5.1%에 그치고, 법원 및 보호관찰소는 전체 의뢰처 비율 중 12.4%를, 1366·1388 기관은 12.2%를 차지하여, 외부 관련 기관들로부터의 사례 의뢰 비율이 자체 사례발굴 비율 보다 많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례발굴 형태는 외부 관련 기관이 연계에 적극적이지 않을 때 사례발굴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한계가 있다.

〈표 9〉 사례발굴 및 의뢰가 이루어지는 기관과 의뢰 비율

기관	사례발굴 의뢰 형태의 비율(%)								소계
	법원 및 보호관찰소	경찰	원스톱 지원센터	1366, 1388	위기청소년 교육센터	사이버 상담	아웃 리치	기타	
a	0	6	0	14	0	37	0	43	100
b	0	10	10	10	0	50	10	10 (기관연계)	100
c	19	5	0	33	0	0	33	10	100
d	18	14	14	0	0	0	0	54 (학교의뢰, 자진입소, 기관의뢰)	100
e	10	10	0	20	60	0	0	0	100
f	0	10	0	20	0	0	0	70 (기관 의뢰, 자진입소)	100
g*	3.1	6.2	18.7	9.3	3.1	0	0	62.5 (병원, 자진입소, 기관의뢰)	
h	52.63	0	0	0	31.58	0	0	15.79 (보호자)	100
i	12	8	2	3	1	4	3	67	100
j	0	10	0	10	0	0	0	타청소년지원시설 : 50 학교 및 부모 : 20 자원입소 : 10	100
소계	111.6	73.0	26.0	110.0	92.6	91.0	46.0	349.8	900
백분율	12.4	8.1	2.9	12.2	10.3	10.1	5.1	38.9	100.0

* g 기관은 각 비율 합이 100%가 아니므로 소계에서 제외 되었음.

② 위기청소년교육센터

a 센터의 경우 법원 및 보호관찰소로부터 의뢰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b 센터는 경찰로부터 의뢰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c 센터는 법원 및 보호관찰소, 경찰로부터 의뢰되는 비율이 각 24%, 25%로 높게 나타났다. d 센터의 경우는 경찰과 1366·1388로부터 의뢰되는 경우가 가장 높았다(기타유형제외). e 센터는 법원 및 보호관찰소와 경찰로부터 의뢰되는 경우가 각

14.7%로 가장 높게 나왔다.

비율 소계를 백분율로 나타내면, 위기청소년교육센터 자체 아웃리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사례발굴 비율은 3.5%에 그치고, 경찰과 법원 및 보호관찰소가 전체 의뢰처 비율 중 각 28.0%, 14.3%를 차지하여, 자체 사례발굴 비율보다 법적 문제와 관련한 외부기관들로부터의 사례 의뢰 비율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지원시설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례발굴 형태는 외부 관련 기관이 연계에 적극적이지 않을 때 사례발굴이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는 한계가 발생한다.

〈표 10〉 사례발굴 및 의뢰가 이루어지는 기관과 의뢰 비율

기관	사례발굴 의뢰 형태의 비율(%)							소계
	법원 및 보호 관찰소	경찰	원스톱 지원센터	1366, 1388	사이버 상담	아웃리치	기타	
a	21	15	0	3	0	6	55 (쉼터 51, 검찰 4)	100
b	11	51.9	0	7.4	0	0	29.7 (학교, 친구소개, 관련기관 의뢰)	100
c	24	25	0	0	5	0	46 (친구소개 및 쉼터 의뢰)	100
d	1	20	10	20	1	8	40 (성폭력상담소, 학교)	100
e※	14.7	14.7			7.4			
소계	57	111.9	10	30.4	6	14	170.7	400
백분율	14.3	28.0	2.5	7.6	1.5	3.5	42.7	100.0

※ e 기관은 응답한 비율의 합이 100%가 되지 않아 소계에서 제외하였음

(7) 청소년의 서비스 참여 정도

청소년지원시설에 입소한 청소년들의 서비스 참여정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다. '시설 입소 후 중도탈락' 하는 비율, '시설입소 후 적응기간을 거쳐 학력지원' 을 받는 비율, '시설입소 후 적응·학력지원·직업체험 및 인턴쉽 프로그램' 을 지원받는 비율, '시설입소 후 적응·학력지원·직업체험 및 인턴쉽 프로그램·자립훈련 매장 및 지원고용' 의 지원을 받는 비율, '시설 입소 후 적응·학력지원·직업체험 및 인턴쉽 프로그램·자립훈련매장 및 지원고용·취업 지원' 을 받는 비율을 조사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서비스 참여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제 2유형, 즉 시설입소 후 적응기간을 거치면서 학력을 지원 받는 경우이다. 이 유형은 전체 비율 중 61.7%로 나타나, 상당한 비율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제 1유형, 쉼터 입소 후 중도탈락하는 경우는 18.4%로 나타났고, 이외 3 유형, 4유형, 5유형은 10%의 비율을 넘지 못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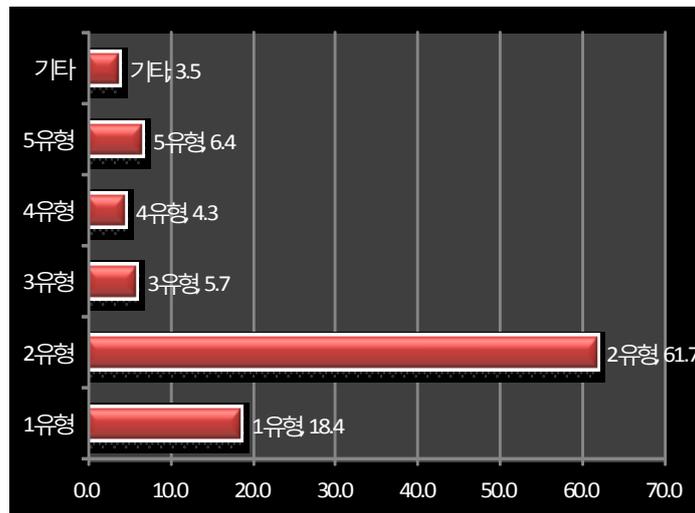
〈표 11〉 청소년의 서비스 참여 비율

기관	유형						소계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5유형	기타	
a	17	11	14	3	9	0	54
b	10	90	10	0	0	0	110
c	32	33	15	5	15	0	100
d	-	-	-	-	-	-	0
e	30	70	0	0	0	0	100
f	20	60	5	0	15	0	100
g	25	46.8	3.1	0	6.2	18.7 (병원입원, 귀가)	100
h	0	100	0	0	0	0	100
i	5	89	0	0	0	6	100
j	16.7	33.3	16.7	25	8.3	0	100
소계※	129	432	40	30	45	25	700
백분율	18.4	61.7	5.7	4.3	6.4	3.5	100.0

- ❖ 1유형 : 시설입소 - 중도탈락
- ❖ 2유형 : 시설입소 - 적응 - 학력지원
- ❖ 3유형 : 시설입소 - 적응 - 학력지원 - 직업체험 및 인턴쉽 프로그램
- ❖ 4유형 : 시설입소 - 적응 - 학력지원 - 직업체험 및 인턴쉽 프로그램 - 자립훈련매장 및 지원고용
- ❖ 5유형 : 시설입소 - 적응 - 학력지원- 직업체험 및 인턴쉽 프로그램 - 자립훈련매장 및 지원고용 - 취업

※ 소계 시 a 시설, b 시설, d 시설의 응답결과는 제외 함 ; a 기관과 b 기관은 응답에 오류(비율합계 100%에 미달되거나 초과함)가 있어 분석에서 제외 함, d 기관은 응답을 하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 함.

〈그림 6〉 청소년의 서비스 참여 비율



(8) 청소년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① 청소년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에서 성매매피해 청소년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현황을 제시한 표는 아래와 같다.

〈표 12〉 청소년지원시설 서비스 제공 현황 ; 전체 분야

기관	발굴	상담			학력지원			집단프로그램		
		생활상담	학업상담	가족상담	검정고시	일반학교 복귀지원	대안 학교 연계	심리치료	문화 체험	성장
a	1	1	1	1	1	1	1	1	1	1
b	1	1	1	1	1	1	1	1	1	1
c	1	1	1	1	1	1		1	1	1
d	1	1	1	1	1	1	1	1	1	1
e	0	1	1	1	1	1	1	1	1	0
f	0	1	1	0	1	1	0	1	1	1
g	0	1	1	1	1	1	1	1	1	1
h	0	1	1	1	1	1	0	1	1	1
i	0	1	1	1	1	1	1	1	1	1
j	0	1	1	1	1	1	1	1	1	1
소계	4	10	10	9	10	10	7	10	10	9

기관	취업지원										기타				
	직업 정보 제공	직업 상담 및 직업 지도 프로그램	자격증 취득 지원	기관 자체 직업 체험 프로그램	기관 자체 인턴십 프로그램	노동부 연계 직업 체험	노동부 연계 단기 인턴십	직업 훈련 매장 연계	아르바 이트	취업	창업	의료 지원	법률 지원	사후 관리	기타
a	1	1	1	0	1	1	1	0	1	1	0	1	1	1	0
b	1	1	1	0	0	0	0	0	1	1	0	1	1	1	0
c	1	1	1	0	0	1	1	0	1	1	0	1	1	1	0
d	1	1	1	1	1	1	1	1	1	1	1	1	1	1	0
e	1	1	1	0	0	0	0	0	1	0	0	1	1	1	0
f	1	1	1	0	0	0	0	0	1	1	0	1	1	1	0
g	1	1	1	0	1	0	0	0	0	1	0	1	1	1	0
h	1	0	0	0	0	0	0	0	1	0	0	1	1	1	0
i	1	1	1	1	0	0	0	0	1	1	0	1	1	1	0
j	1	1	1	1	1	0	0	1	1	1	0	1	1	1	자립금 마련
소계	10	9	9	3	4	3	3	2	9	8	1	10	10	10	1

※ 서비스 제공 시 '1' 로 코딩, 서비스 미제공 시 '0' 으로 코딩

이를 발굴, 상담, 학력지원, 집단프로그램, 취업지원, 기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째, '아웃리치 및 현장상담' 서비스는 총 10개 기관 중 4개 기관이 실시중에 있다. 전체 기관 중 40%가 기관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사례발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표 13〉 청소년지원시설 서비스 제공 현황 ; 사례발굴 분야

기관	발굴
a	1
b	1
c	1
d	1
e	0
f	0
g	0
h	0
i	0
j	0
소계	4
백분율(%)	40

※ 서비스 제공 시 '1' 로 코딩, 서비스 미제공 시 '0' 으로 코딩

둘째, 상담 서비스는 생활상담, 학업상담, 가족상담으로 나뉘는데, 청소년지원시설 모두에서 100%의 서비스제공율을 보이고 있다.

〈표 14〉 청소년지원시설 서비스 제공 현황 ; 상담 분야

기관	상담		
	생활상담	학업상담	가족상담
a	1	1	1
b	1	1	1
c	1	1	1
d	1	1	1
e	1	1	1
f	1	1	1
g	1	1	1
h	1	1	1
i	1	1	1
j	1	1	1
소계	10	10	10
백분율(%)	100	100	100

※ 서비스 제공 시 '1' 로 코딩, 서비스 미제공 시 '0' 으로 코딩

셋째, 학력지원서비스는 검정고시지원, 일반학교 복귀지원, 대안학교 연계 지원으로 나뉘는데, 검정고시와 일반학교 복귀지원은 전체 청소년지원시설에서 100% 실시하고 있고, 대안학교로의 연계는 전체 청소년지원시설 중 70%가 서비스 제공 중에 있다.

〈표 15〉 청소년지원시설 서비스 제공 현황 ; 학력지원 분야

기관	학력지원		
	검정고시	일반학교 복귀지원	대안학교 연계
a	1	1	1
b	1	1	1
c	1	1	0
d	1	1	1
e	1	1	1
f	1	1	0
g	1	1	1
h	1	1	0
i	1	1	1
j	1	1	1
소계	10	10	7
비율(%)	100	100	70%

※ 서비스 제공 시 '1' 로 코딩, 서비스 미제공 시 '0' 으로 코딩

넷째, 집단프로그램 서비스는 심리치료, 문화체험, 성장프로그램으로 나뉘는데, 심리치료와 문화체험은 전체 청소년지원시설에서 100% 실시하고 있고, 성장프로그램의 경우 전체 청소년지원시설 중 90%가 서비스 제공 중에 있다.

〈표 16〉 청소년지원시설 서비스 제공 현황 ; 집단프로그램 분야

기관	집단프로그램		
	심리치료	문화체험	성장
a	1	1	1
b	1	1	1
c	1	1	1
d	1	1	1
e	1	1	0
f	1	1	1
g	1	1	1
h	1	1	1
i	1	1	1
j	1	1	1
소계	10	10	9
비율	100	100	90

※ 서비스 제공 시 '1' 로 코딩, 서비스 미제공 시 '0' 으로 코딩

다섯째, 의료지원, 법률지원, 사후관리 서비스의 경우, 전체 청소년지원시설에서 100% 실시하고 있다.

〈표 17〉 청소년지원시설 서비스 제공 현황 ; 의료·법률·사후관리 분야

기관	의료지원	법률지원	사후관리	기타
a	1	1	1	0
b	1	1	1	0
c	1	1	1	0
d	1	1	1	0
e	1	1	1	0
f	1	1	1	0
g	1	1	1	0
h	1	1	1	0
i	1	1	1	0
j	1	1	1	자립지원 (자립금마련)
소계	10	10	10	1
비율	100	100	100	10

※ 서비스 제공 시 '1' 로 코딩, 서비스 미제공 시 '0' 으로 코딩

여섯째, 취업지원의 경우, 직업정보제공, 직업상담 및 직업지도프로그램, 자격증취득, 기관자체 직업체험 프로그램, 기관자체 인턴십 프로그램, 노동부연계직업체험, 노동부 연계 단기 인턴십, 직업훈련 매장 연계, 아르바이트, 취업, 창업으로 나누어진다.

‘직업정보제공’ 서비스는 전체 시설 중 100%가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 기초적인 ‘직업상담 및 직업지도프로그램’, ‘자격증 취득’ 지원은 전체 시설 중 90%가 제공 중에 있다. 한편, 기관자체적으로 직업체험프로그램이나 인턴십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경우는 각각 30%, 40%로 낮은 시행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노동부 연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직업체험’, ‘단기 인턴십’ 연계 서비스도 각각 30%, 30%로 낮은 제공율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직업훈련매장으로의 연계도 20%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 기관 자체적으로 아르바이트를 구하도록 하고, 취업을 시키는 서비스는 전체 시설 중 각각 90%, 80%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즉, 기관 자체적으로 직업상담 및 직업지도 프로그램,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돕는 기초적인 수준에서의 취업지원의 역할과 성매매피해 청소년들이 원하는 경우 아르바이트를 구하거나,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지원은 거의 모든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취업을 전

문적으로 준비시키는 역할, 예를 들어 직업체험, 인턴십, 훈련매장을 운영하거나 연계를 통해 참여토록 하는 역할은 총 10개 기관 중 2-4개의 기관에서만 시행중에 있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고, 기관마다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표 18〉 청소년지원시설 서비스 제공 현황 ; 취업지원 분야

기관	직업 정보 제공	직업상담 및 직업지도 프로그램	자격증 취득 지원	기관 자체 직업 체험 프로그램	기관 자체 인턴십 프로그램	노동부 연계 직업 체험	노동부 연계 단기 인턴십	직업 훈련 매장 연계	아르 바이트	취업	창업
a	1	1	1	0	1	1	1	0	1	1	0
b	1	1	1	0	0	0	0	0	1	1	0
c	1	1	1	0	0	1	1	0	1	1	0
d	1	1	1	1	1	1	1	1	1	1	1
e	1	1	1	0	0	0	0	0	1	0	0
f	1	1	1	0	0	0	0	0	1	1	0
g	1	1	1	0	1	0	0	0	0	1	0
h	1	0	0	0	0	0	0	0	1	0	0
i	1	1	1	1	0	0	0	0	1	1	0
j	1	1	1	1	1	0	0	1	1	1	0
소계	10	9	9	3	4	3	3	2	9	8	1
비율	100	90	90	30	40	30	30	20	90	80	10

청소년지원시설의 서비스 현황을 정리하면, 상담, 학력지원, 집단프로그램, 의료지원·법률지원·사후관리 분야는 거의 모든 시설에서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으나, 아웃리치 및 현장상담 서비스와 취업지원의 일부분인 직업체험,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혹은 연계, 직업훈련매장 연계에서 서비스를 활발히 시행하지 못하거나, 기관마다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② 위기청소년교육센터

위기청소년교육센터에서 성매매피해 청소년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현황을 제시한 표는 아래와 같다.

〈표 19〉 위기청소년교육센터 서비스 제공 현황 ; 전체 분야

유형	발굴	상담			학력지원			집단프로그램							
	아웃리치 및 현장상담	생활상담	학업상담	가족상담	검정고시	일반학교 복귀지원	대안학교 연계	심리 치료	문화 체험	성장					
a	0	1	1	1	1	1	1	1	1	1					
b	0	1	1	1	1	1	1	1	1	1					
c	0	1	1	1	0	0	0	0	0	0					
d	0	1	1	1	1	1	1	1	1	1					
e	1	1	1	1	1	1	1	1	1	1					
소계	1	5	5	5	4	4	4	4	4	4					
비율	20	100	100	100	80	80	80	80	80	80					
기관	취업지원											기타			
	직업 정보 제공	직업상담 및 직업지도 프로그램	자격증 취득 지원	기관 자체 직업 체험 프로그램	기관 자체 인턴십 프로그램	노동부 연계 직업 체험	노동부 연계 단기 인턴십	직업 훈련 매장 연계	아르 바이트	취업	창업	의료 지원	법률 지원	사후 관리	기타
a	1	0	1	0	0	0	0	0	0	0	0	1	1	1	0
b	1	0	1	0	0	1	1	0	0	0	0	1	1	1	0
c	1	0	0	0	0	0	0	0	0	0	0	1	1	1	1
d	1	1	0	0	0	0	0	0	0	0	0	1	1	1	0
e	1	1	0	0	0	0	1	1	1	0	0	1	1	1	1
소계	5	2	2	0	0	1	2	1	1	0	0	5	5	5	2
비율	100	40	40	0	0	20	40	20	20	0	0	100	100	100	40

※ 서비스 제공 시 '1' 로 코딩, 서비스 미제공 시 '0' 으로 코딩

이를 아웃리치 및 현장상담, 상담분야, 학력지원, 집단프로그램, 취업지원, 기타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웃리치 및 현장상담 서비스를 실시하는 센터는 1개 기관으로 20% 비율을 차지한다.

둘째, 상담 서비스는 생활상담, 학업상담, 가족상담으로 나뉘는데, 위기청소년교육센터 모두에서 100%의 제공율을 보이고 있다. 생활상담, 학업상담, 가족상담의 경향은 청소년지원시설과 비슷한 경향이다.

〈표 20〉 위기청소년교육센터 서비스 제공 현황 ; 사례발굴 분야

유형	발굴		상담	
	아웃리치 및 현장상담	생활상담	학업상담	가족상담
a	0	1	1	1
b	0	1	1	1
c	0	1	1	1
d	0	1	1	1
e	1	1	1	1
소계	1	5	5	5
비율	20	100	100	100

※ 서비스 제공 시 '1' 로 코딩, 서비스 미제공 시 '0' 으로 코딩

둘째, 학력지원서비스는 검정고시지원, 일반학교 복귀지원, 대안학교 연계 지원으로 나뉘는데, 검정고시와 일반학교 복귀지원, 대안학교 연계지원은 각 각 80%로 대부분의 위기청소년교육센터에서 실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높은 비율로 학력지원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은 청소년지원시설의 경향과 비슷하다.

〈표 21〉 위기청소년교육센터 서비스 제공 현황 ; 학력지원 분야

유형	학력지원		
	검정고시	일반학교 복귀지원	대안학교 연계
a	1	1	1
b	1	1	1
c	0	0	0
d	1	1	1
e	1	1	1
소계	4	4	4
비율	80	80	80

※ 서비스 제공 시 '1' 로 코딩, 서비스 미제공 시 '0' 으로 코딩

셋째, 집단프로그램 서비스는 심리치료, 문화체험, 성장프로그램으로 나뉘는데, 각 80%로 실시되고 있어, 높은 비율로 집단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높은 비율로 서비스 수행의 경향은 청소년지원시설과 유사하다.

〈표 22〉 위기청소년교육센터 서비스 제공 현황 ; 집단프로그램 분야

유형	집단프로그램		
	심리치료	문화체험	성장
a	1	1	1
b	1	1	1
c	0	0	0
d	1	1	1
3	1	1	1
소계	4	4	4
비율	80	80	80

※ 서비스 제공 시 '1' 로 코딩, 서비스 미제공 시 '0' 으로 코딩

넷째, 의료지원, 법률지원, 사후관리 서비스의 경우, 전체 청소년지원시설에서 100% 실시하고 있어, 이 경향도 청소년지원시설과 흡사하다.

〈표 23〉 위기청소년교육센터 서비스 제공 현황 ; 의료·법률·사후관리 분야

기관	의료지원	법률지원	사후관리	기타
a	1	1	1	0
b	1	1	1	0
c	1	1	1	1
d	1	1	1	0
e	1	1	1	1
소계	5	5	5	2
비율	100	100	100	40

※ 서비스 제공 시 '1' 로 코딩, 서비스 미제공 시 '0' 으로 코딩

다섯째, 취업지원은 청소년지원시설과 같이, 직업정보제공, 직업상담 및 직업지도프로그램, 자격증취득, 기관자체 직업체험 프로그램, 기관자체 인턴십 프로그램, 노동부연계직업체험, 노동부 연계 단기 인턴십, 직업훈련 매장 연계, 아르바이트, 취업, 창업으로 나뉘어진다.

직업정보제공 서비스는 전체 시설 중 100%가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 이는 청소년지원시설과 같은 결과이다. 그러나 '직업상담 및 직업지도프로그램', '자격증 취득' 지원은 각각 40%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어, 전체 시설 중 90%를 제공 중에 있는 청소년지원시설과는 다른 결과를 나타낸다. 또한 기관자체적으로 직업체험프로그램이나 인턴십 프로그램, 기관자체 직업체험 프로그램, 기관 자체 인턴십 프로그램, 아르바이트, 취업, 창업지원이 부분도 모두 0-20%를 나타내고 있다. 즉, 기초적인 직업정보제공 외에 다른 취업지원 서비스는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취업지원과 관련하여 외부 기관 연계는 시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노동부 연계 직업체험이나 노동부 연계 단기 인턴십 경우 각 20%, 40%의 서비스 지원율을 보인다.

이러한 서비스 현황은 위기청소년교육센터 자체적으로는 청소년들에게 직업정보제공, 직업상담 및 직업지도 프로그램, 자격증 취득 지원을 실시하고 있지만, 기관자체적으로 직업체험 프로그램이나,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어려운 구조임을 알게 한다. 또한 기관자체적으로 아르바이트나 취업, 창업을 지원하기 보다는 노동부에 연계하여 직업체험이나 단기 인턴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열악한 인력이 가동되는 위기청소년교육센터의 구조 상 당연한 결과로 보여진다.

〈표 24〉 위기청소년교육센터 서비스 제공 현황 ; 취업지원 분야

기관	취업지원										
	직업 정보 제공	직업상담 및 직업지도 프로그램	자격증 취득 지원	기관자체 직업체험 프로그램	기관 자체 인턴십 프로그램	노동부 연계 직업 체험	노동부 연계 단기 인턴십	직업 훈련 매장 연계	아르 바이트	취업	창업
a	1	0	1	0	0	0	0	0	0	0	0
b	1	0	1	0	0	1	1	0	0	0	0
c	1	0	0	0	0	0	0	0	0	0	0
d	1	1	0	0	0	0	0	0	0	0	0
e	1	1	0	0	0	0	1	1	1	0	0
소계	4	1	2	0	0	1	1	0	0	0	0
비율	100	25	50	0	0	25	25	0	0	0	0

※ 서비스 제공 시 '1' 로 코딩, 서비스 미제공 시 '0' 으로 코딩

위기청소년교육센터의 서비스 현황을 정리하면, 청소년지원시설과 마찬가지로 상담, 학력지원, 집단프로그램, 의료지원·법률지원·사후관리 분야는 거의 모든 센터에서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으나, 아웃리치 및 현장상담 서비스와 취업지원의 일 부분이 활발히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취업지원 부분은 청소년지원시설과 마찬가지로, 직업체험,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혹은 연계, 직업훈련매장 연계 서비스를 활발히 시행하지 못하고 있고, 청소년의 아르바이트나 취업과 관련한 지원도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지원시설과 위기청소년교육센터를 통틀어 보면, 전체 서비스 분야 중 '아웃리치 및 현장상담 서비스' 와 취업준비 서비스 중 직업체험 프로그램,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및 외부기관 연계, 직업훈련매장 연계 서비스가 다른 분야의 서비스에 비해 활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서비스 연계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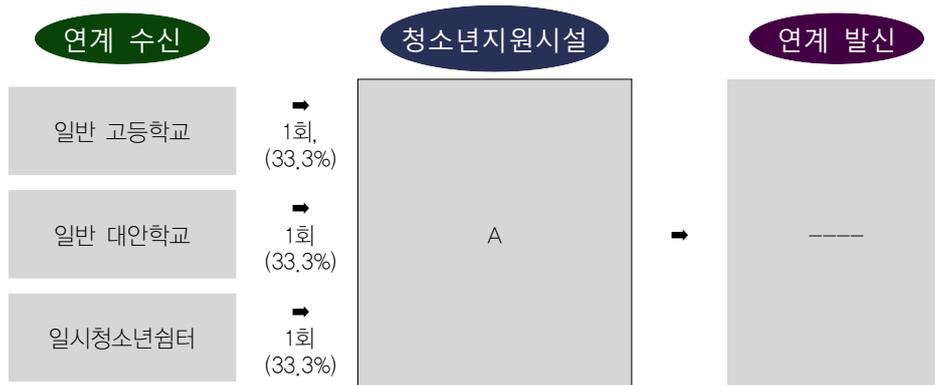
아래의 연계 현황은 각 시설과 센터에서 현재 시점으로부터 지난 6개월 동안 이루어진 연계현황을 표기한 것이다.

(1) 청소년지원시설

○ A 기관

A 기관의 경우, 지난 6개월 동안 외부로 의뢰를 하는 경우 없이, 정규 고등학교와 대안학교, 일시청소년쉼터로부터 각 1회씩(각 33.3%) 청소년 사례를 의뢰 받았다. 연계활동이 다른 기관에 비해 활동수가 적은편에 속한다.

〈그림 7〉 A 기관의 연계현황



○ B 기관

B기관도 지난 6개월간 총 5회의 연계활동이 있었는데, 연계 수신 활동만 있고, 연계 발신 활동은 일어나지 않았다. 타 시설에 비해 연계활동은 활발한 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연계 수신 내용은 모두 청소년 입소를 의뢰 받은 것이다. 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이동보호전문기관 등 청소년 지원 유관기관으로부터 2회(40.0%) 의뢰 받았고, 동일한 지원을 하는 청소년 지원시설로부터 1회(20%) 의뢰를 받았다. 그리고 여성긴급전화인 1366으로부터 2회(40%) 의뢰를 받았다.

〈그림 8〉 B 기관의 연계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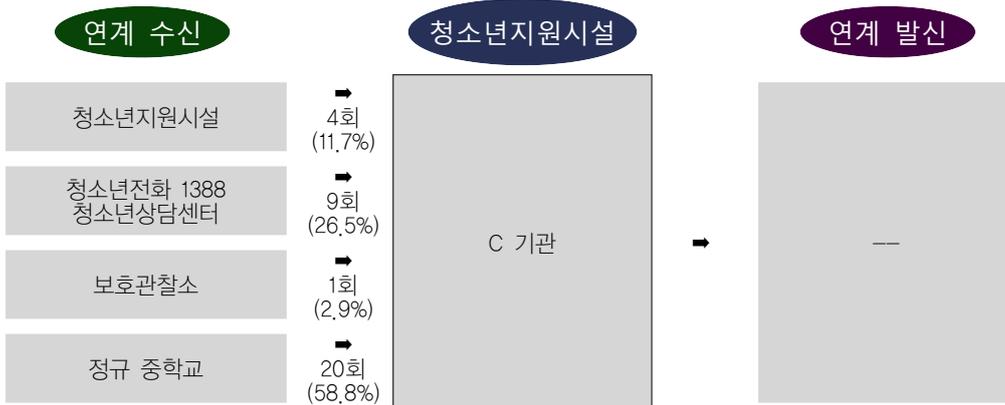


○ C 기관

C 기관은 지난 6개월간 총 34회의 연계활동이 오갔다. 연계활동 빈도로 따지면 활동정도가 높은 편에 속한다. 반면, 연계활동은 연계 수신 활동에 한정되어 있다.

연계 수신 활동 내용을 살펴보면, 청소년의 입소나 C 기관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연계기관에서 이용하고자 하는 의뢰로 나뉜다. 연계를 해오는 기관들을 살펴보면, 보호관찰소로부터 1회(2.9%)의 연계가 이루어졌으며, 동종의 청소년지원시설로부터 총 4회(11.7%)의 연계가 이루어졌고, 청소년 상담 관련한 기관으로부터 총 9회(26.5%)의 연계가 이루어졌다. 가장 많은 의뢰비율을 보인 기관은 정규의 중학교로써 학교와의 연계가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타 시설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그림 9〉 C 기관의 연계현황



○ D 기관

D 기관도 지난 6개월 간 연계수신 활동만 있고, 연계발신 활동은 발생하지 않았다. 연계수신 활동은 총 13회 이루어졌다.

연계 수신 내용은 청소년 입소의뢰가 좀 더 많이 이루어져 61.5%를 보였고, 이외 의료지원에 대한 의뢰가 38.5%가 이루어졌다.

의뢰기관들을 살펴보면, 청소년 상담 관련 기관으로부터 2회(15.4%)의 사례연계가 있었고, 성폭력 상담 및 지원 기관으로부터 5회(38.5%)의 연계가 있었다. 또, 청소년복지 관련 기관과 청소년 쉼터로부터 각 1회(7.7%)의 연계가 있었고, 정신과 병원과 법원·경찰청으로부터도 각 2회(15.4%)의 연계가 있었다. 연계 수신이 다양한 곳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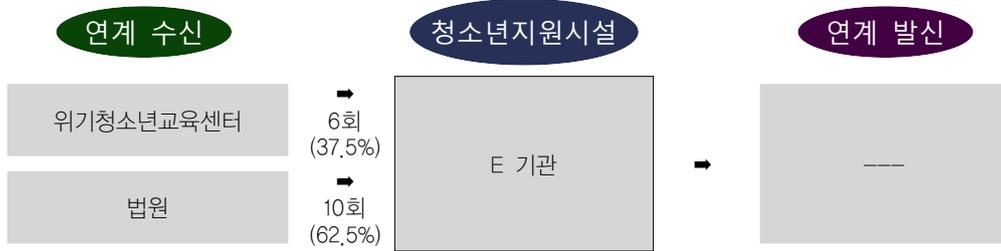
〈그림 10〉 D 기관의 연계현황



○ E 기관

E 기관의 경우에도 지난 6개월 간 연계수신 활동만 있었다. 연계수신 활동은 총 16회 이루어졌다. 연계 수신 내용을 살펴보면, 모두 청소년 입소를 의뢰 받은 것으로써, 성매매피해 청소년 지원체계 안에 있는 기관인 청소년위기지원센터로부터 입소의뢰를 6회(37.5%) 받았고, 법원으로부터 10회(62.5%)를 의뢰받아, 총 16회의 연계 수신 활동이 일어났다. 2개 기관과 네트워크를 시행중에 있지만, 빈도가 빈번함을 볼 때, 해당기관과의 교류가 활발함을 알 수 있다.

〈그림 11〉 E 기관의 연계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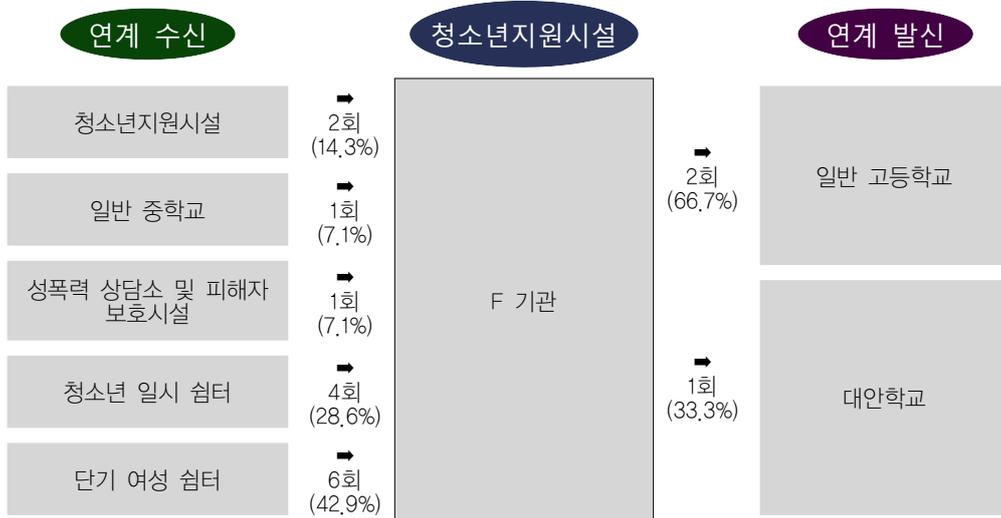


○ F 기관

F 기관은 사례의뢰가 다양한 곳에서 이루어졌다. 청소년지원시설에서 2회(14.3%), 일반 학교에서 1회(7.1%),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1회(7.1%), 청소년 일시 쉼터에서 4회(28.6%), 단기여성쉼터로부터 6회(42.9%)가 연계 수신되었다. 이 중 단기여성쉼터로부터의 연계가 가장 많은 비율을 보였다. 그 다음 순으로 청소년 일시 쉼터로부터의 연계가 많은 비율을 나타냈다.

연계 발송 활동은 성매매피해 청소년들의 학력지원을 위해 외부 일반학교(2회, 66.7%)와 대안학교(1회, 33.3%)로 연계를 실시함을 알 수 있다.

〈그림 12〉 F 기관의 연계현황



○ G 기관

G 기관은 지난 6개월 동안 비교적 활발한 연계활동이 시행하였다.

연계 수신 내용은 주로 사례의뢰가 대부분으로써, 법원(1회), 또래상담실(11회), 청소년상담센터(2회), 청소년 쉼터(4회), 일반학교(1회)로부터 연계가 이루어졌다. 이중 또래상담실로부터 이루어진 사례의뢰의 비율은 전체 연계 수신 중 57.9%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연계 발신 활동을 살펴보면, 청소년의 학력지원을 위해 대안학교로 연계가 5회(14.7%), 검찰청으로 연계가 1회(2.9%), 원스톱지원센터로 의뢰가 1회(2.9%), 위기청소년교육센터로 캠프참여를 12회 의뢰(35.3%)하였고, 청소년상담센터로 일시보호를 5회 의뢰(14.7%) 하였다. 그리고 타 청소년지원시설에 입소를 3회 의뢰(8.8%)하였고, 직업훈련매장으로 직업체험을 7회 의뢰(20.6%)하였다. 이들 연계발신을 살펴보면, 학력지원을 위한 대안학교로의 연계(14.7%)와 일시보호를 위한 의뢰(14.7%), 직업체험을 위한 의뢰(20.6%), 성장캠프 참여를 위한 의뢰(35.3%)가 연계발신 활동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황은 연계발신활동의 주요 부분이 성매매피해 청소년을 위해 학력지원과 일시적인 거주제공, 직업의 직접적인 체험을 위한 활동임을 드러내며, G 기관은 외부 자원을 통해 해당 분야를 지원해왔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3〉 G 기관의 연계 현황



○ H 기관

H 기관은 지난 6개월간 총 41회의 연계활동이 실시하였다.

연계 수신 활동 내용은 주로 사례의뢰가 대부분으로써, 청소년긴급지원센터 및 1388(7회, 77.7%), 가정법원(2회, 22.2%)으로부터 연계가 이루어졌다. 이중 청소년지원체계의 유관기관으로부터 가장 많은 의뢰가 수신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연계 발신 활동 내용을 살펴보면, 성장캠프 참여와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각 위기청소년교육센터(1회, 3.1%)와 재활원(21회, 65.6%)에 의뢰하였고, 직업 및 취업지원을 위해 두드림존(4회, 12.5%), 자활센터(1회, 3.1%), 중소기업(4회, 12.5%)에 의뢰하였다. 그 외 건강검진을 위하여 보건소(1회, 3.1%)에 의뢰한 활동이 있었다. 주로 집단 프로그램과 취업지원을 위해 외부연계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4〉 H 기관의 연계현황



○ I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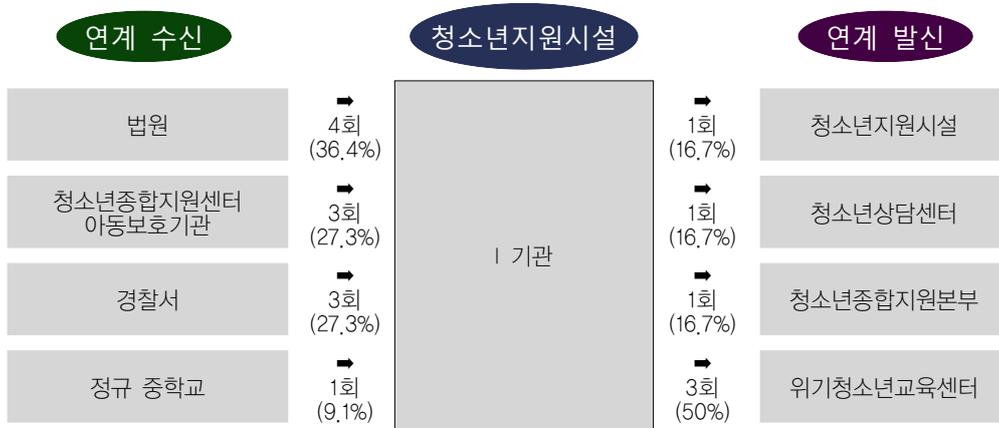
I 기관은 지난 6개월간 총 17회의 연계활동을 실시하였다.

연계 수신 활동 내용은 주로 사례의 입소의뢰에 대한 것으로써, 법원으로부터 4회(36.4%), 청소년 지원 유관기관으로부터 3회(27.3%), 경찰서로부터 3회(27.3%), 정규중학교로부터 1회

(9.1%) 의뢰되었다.

연계 발신 내용을 살펴보면, 동일지원기관인 청소년지원시설로 사례입소를 1회(16.7%) 의뢰하였고, 청소년의 학력지원과 취업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청소년유관기관에 2회(33.4%) 의뢰하였으며, 성장캠프에 참여시키기 위해 위기청소년교육센터에 3회(50%) 의뢰하였다. 연계발신 내용은 주로 학력지원, 집단프로그램 지원, 취업지원을 위해 타기관의 서비스에 연계한 것이다.

〈그림 15〉 I 기관의 연계현황



○ J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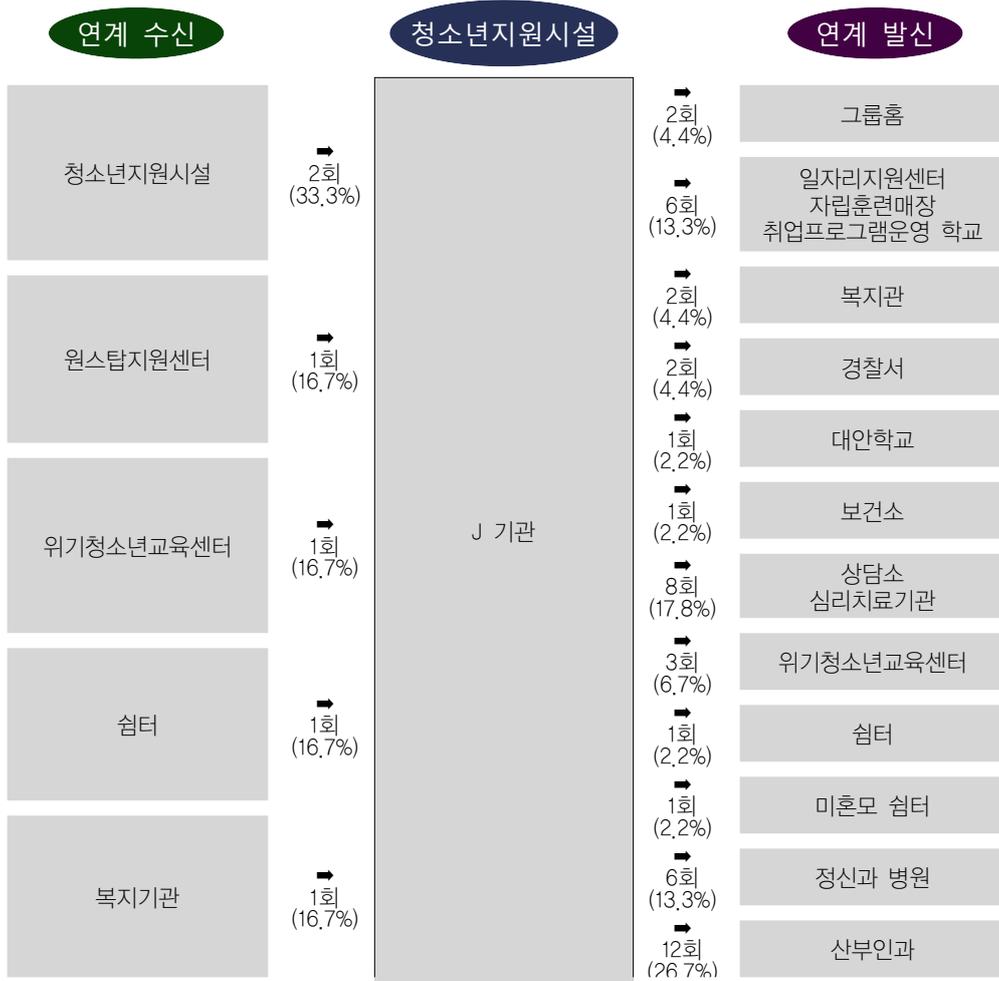
J 기관은 매우 다양한 외부기관과 연계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계 수신활동은 6회, 연계발신은 45회로 활발한 연계발신 활동을 보였으며, 총 51회의 연계활동을 실시하여 다른 기관들 보다 활발한 연계활동 양상을 나타내었다.

연계 수신 내용은 주로 사례의 입소의뢰에 대한 것이다. 의뢰기관은 청소년지원시설과 위기청소년교육센터로부터 각 2회(33.3%), 1회(16.7%) 이루어졌고, 유관기관인 윈스답지원센터로부터 1회(16.7%)의 연계가 있었다. 그 외 쉼터와 복지기관으로부터 각 1회(16.7%)의 연계활동이 있었다.

연계발신활동은 다양한 영역과 기관으로 연계를 실시하였다. 청소년의 학력(1회, 2.2%) 및 취업·인턴십 연계(6회, 13.3%) 뿐 만 아니라, 그룹홈으로의 연계와 미혼모 기관과의 연계활동도 눈에 띈다. 각 2회(4.4%)와 1회(2.2%)의 활동이 실시되었다. 한편, 독특한 연계사항은 성폭력 상담이나 치료적 연계, 정신과 상담등이 연계활동의 상당 비율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상담소 및

심리치료기관에 대한 연계는 8회(17.8%) 이루어졌고, 정신과치료로의 연계는 6회(13.3%) 이루어졌다. 이외 산부인과로의 연계도 12회(26.7%) 이루어졌다.

〈그림 16〉 J 기관의 연계현황



위와 같이, 청소년지원시설의 연계현황을 살펴본 결과, 주로 청소년들의 입소를 위해 외부 기관으로부터 연계를 의뢰받는 연계 수신 활동은 모든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연계 발신 활동의 경우, 활동이 없거나 활발하지 않은 유형이 총 10개 기관 중 6개기관이 해당되고(A, B, C, D, E, F), 연계 수·발신 활동 모두가 활발한 유형이 10개 기관

중 4개기관이 해당되었다(G, H, I, J). 즉, 연계활동, 특히 연계 발신 활동의 정도가 기관 마다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계 수신활동은 앞서 말했다시피 청소년의 입소에 대한 것이었는데, 주 연계 기관은 다음과 같다. 학교 영역에는 정규 학교, 대안학교가 연계기관으로 나타났고, 청소년 지원 영역에는 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1388등이 나타났다. 여성성폭력 지원 기관에는 1366, 원스톱지원센터가 있었고, 법과 관련한 영역에는 보호관찰소, 법원, 경찰청이 있었다. 성매매피해 청소년을 지원하는 기관 중에는 동종의 청소년지원시설, 위기청소년교육센터, 또래상담실이 있었고, 그 외 여성 쉼터, YWCA, 정신과병원이 연계기관으로 나타났다.

연계 발신 활동은 청소년들이 갖는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기관의 시도으로써, 다양한 영역에 연계가 이루어졌다. 연계 기관은 다음과 같다. 재입소와 일시보호를 위해서는 청소년지원시설, 쉼터, 미혼모 쉼터, 청소년상담센터에 의뢰를 실시하였다. 집단프로그램(캠프포함) 지원을 위해서는 위기청소년교육센터에 의뢰를 실시하였다. 학력지원을 위해서는 일반학교와 대안학교로 연계를 실시하였다. 직업 및 취업지원을 위해서 보다 다양한 영역에 연계를 시도하고 있었는데, 이에 두드림존, 직업훈련매장, 자활센터, 재활원, 중소기업, 일자리지원센터등이 해당된다. 심리치유를 위해서는 상담소, 심리치료기관, 정신과병원에 의뢰를 실시하였고, 심신의 건강을 위해서 보건소와 산부인과에 의뢰, 성인전환시기의 지원을 위해서는 그룹홈에 의뢰를 실시하였다. 그 외 복지관, 경찰서에도 연계 의뢰가 있었다.

(2) 위기청소년교육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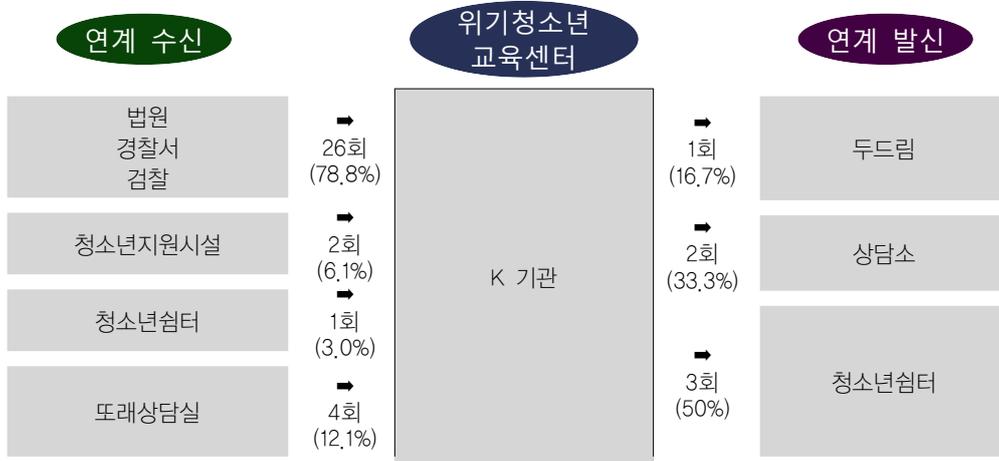
○ K 기관

K 기관의 경우 연계 수신활동은 33회, 연계발신은 6회로 지난 6개월 간 총 39회의 연계활동을 하였다. 연계 수신활동에 비해 연계 발신 활동이 낮다.

연계 수신 활동의 주요 내용은 청소년 교육 및 캠프 문의에 대한 것이다. 의뢰기관 중 법원·경찰서·검찰이 78.8%(26회)를 차지하여 연계빈도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외 또래상담실(12.1%), 청소년지원시설(6.1%), 청소년쉼터(3.0%)가 연계하고 있는 기관으로 나타났다.

연계발신활동은 청소년쉼터에 청소년을 의뢰하거나(50%), 두드림존에 검정고시를 문의하거나(16.7%), 청소년의 심리상담을 의뢰(33.3%) 하였다. 기관자체에 거주공간이 없고, 전문적인 상담 인력이 없어 연계를 통해 지원해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7〉 K 기관의 연계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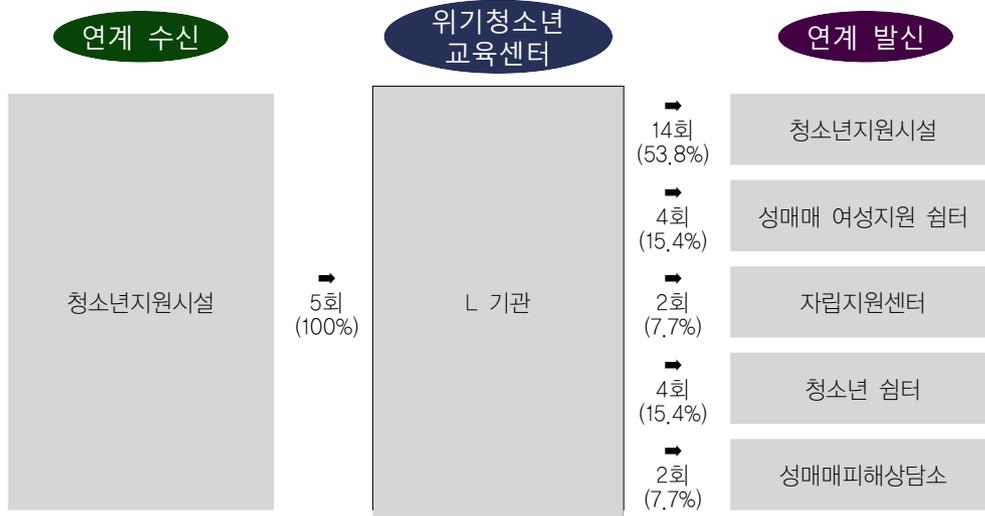
○ L 기관

L 기관의 경우 연계 수신활동은 5회, 연계발신은 26회로 지난 6개월 간 총 31회의 연계활동을 하였다. 이 기관은 연계발신활동에 비해 연계 수신활동이 낮다. 사례발굴이 활발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연계 수신 활동의 주요 내용은 교육에 참가할 청소년을 의뢰 받는 것이다. 모두 청소년지원 시설로부터 의뢰가 5회(100%) 이루어졌다. 사례발굴처를 다양하게 늘릴 필요가 있다.

연계발신활동은 주로 시설입소와 직업교육 지원을 의뢰하는 것으로써, 청소년지원시설에 14회(53.8%), 성매매여성지원 센터에 4회(15.4%), 자립지원센터에 2회(7.7%), 청소년 쉼터에 4회(15.4%)에 의뢰활동을 하였다. 이외 성매매법률을 문의하기 위해 성매매피해상담소와의 연계가 2회(7.7%) 있었다. 눈여겨 볼 것은 L 기관의 경우 청소년지원시설과의 연계활동이 타 기관과의 연계활동에 비해 매우 높다는 점이다.

〈그림 18〉 L 기관의 연계현황



○ M 기관

M 기관의 경우 연계 수신활동은 5회, 연계 발신 활동은 3회로 지난 6개월 간 총 8회의 연계활동을 하였다. 타 위기청소년교육센터의 연계활동수와 비교해보았을 때 연계활동수가 적은편이다.

연계 수신 활동의 주요 내용은 캠프 참여에 관한 의뢰이다. 의뢰기관에는 법원이 2회(40.0%), 정규중학교가 1회(20.0%), 청소년지원시설이 2회(40.0%) 연계하였다. 연계 수신 활동 빈도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연계발신활동은 주로 자격증 취득과 학력지원, 사후관리를 위한 것으로써 미용학원으로 1회(33.3%) 연계, 음악학원으로 1회(33.3%) 연계, 청소년육성지원센터로 1회(33.3%) 연계하였다. 연계 수신 활동과 마찬가지로 연계 발신 활동의 빈도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자격증 취득, 검정고시 지원을 위한 학원 연계등은 앞절에서 살펴본 청소년지원시설의 연계 활동 내용과 흡사하다. 이 부분에 대한 청소년들의 욕구가 청소년지원시설에 입소해서나, 위기청소년교육센터 프로그램에 참가해서나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기관의 자구책으로 학원을 연계하여 학력과 자격증 취득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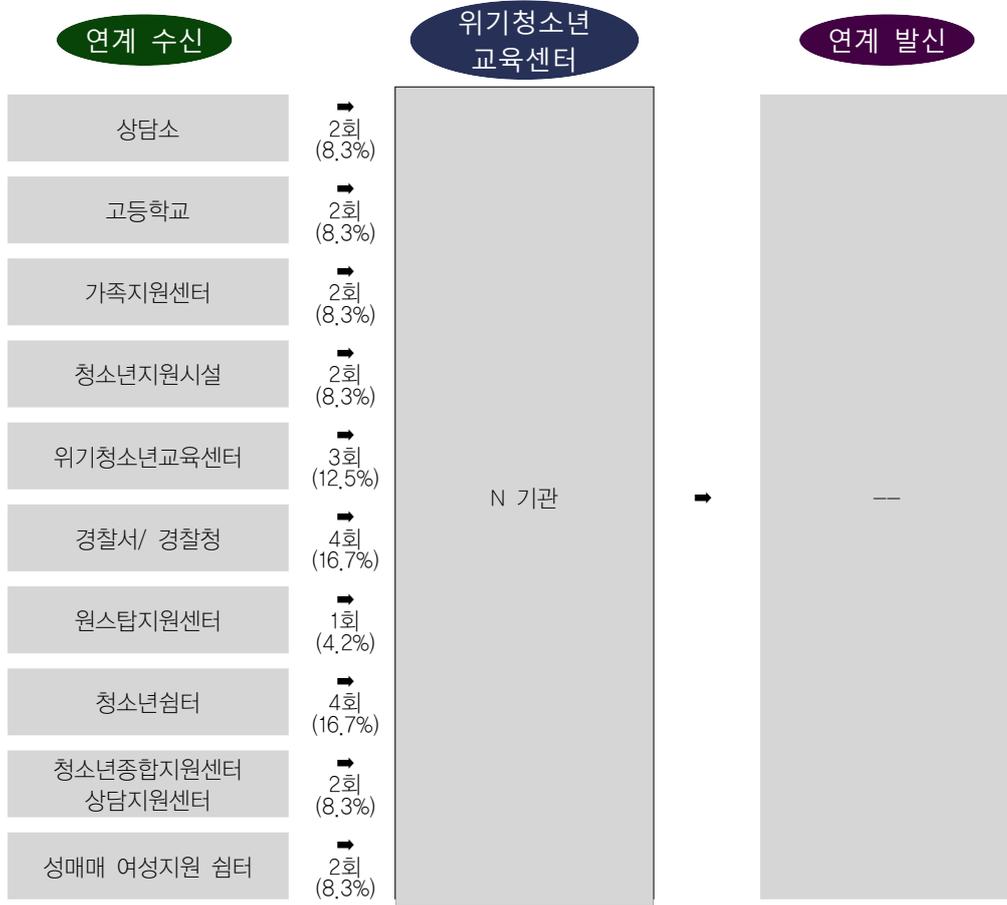
〈그림 19〉 M 기관의 연계현황



○ N 기관

N 기관의 경우 연계수신활동만 이루어졌는데, 총 24회의 연계수신활동을 실시하였다. 한편, 연계수신처는 매우 다양하였다. 연계 수신 활동의 주요 내용은 캠프 참여 의뢰이다. 의뢰기관에는 상담소가 2회(8.3%) 의뢰하였고, 정규 고등학교에서 2회(8.3%) 의뢰하였다. 가족지원센터와 청소년종합지원센터·상담지원센터는 각각 2회(8.3%) 의뢰하였다. 청소년지원시설과 위기청소년교육센터에서는 각각 2회(8.3%), 3회(12.5%) 의뢰하였다. 경찰서·경찰청에서 4회(16.7%) 의뢰하였고, 원스탑지원센터와 성매매여성지원 센터에서 각각 1회(4.2%), 2회(8.3%) 의뢰하였다. 그리고 가장 많은 빈도를 나타낸 기관은 청소년쉼터이다. 전체 연계수신 활동 중 16.7%에 해당된다.

〈그림 20〉 N 기관의 연계현황



○○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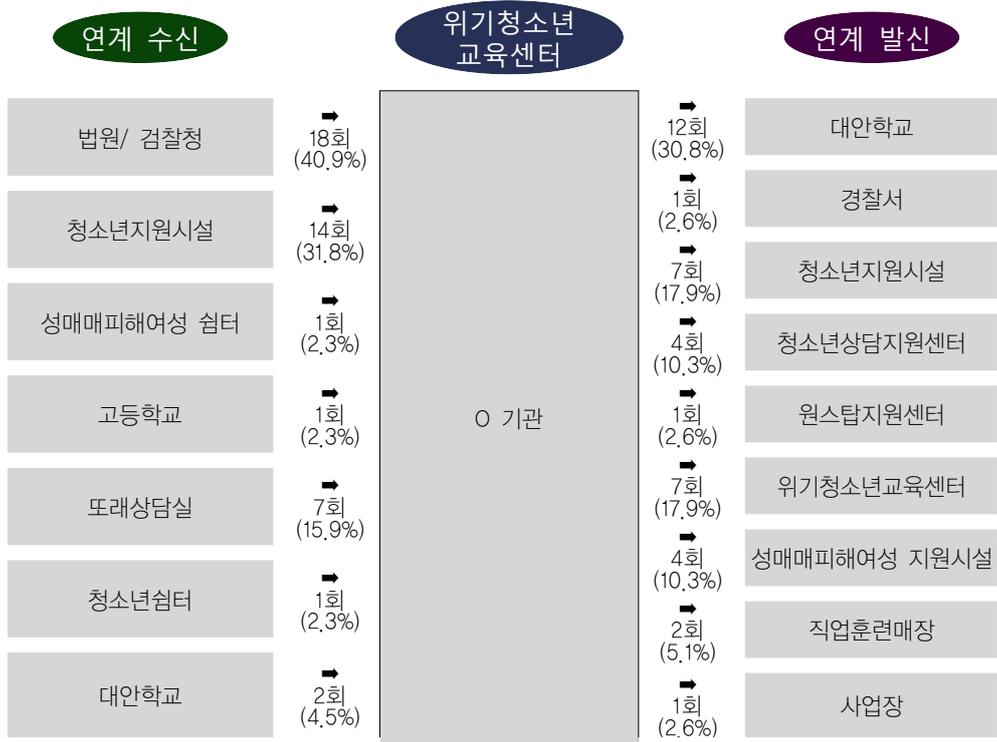
○ 기관의 경우 연계수신과 발신활동이 모두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우선 연계수신은 주로 청소년성장캠프 참여를 위한 의뢰로써, 법원·경찰청이 18회(40.9%)로 가장 많은 연계 횟수를 보였다. 그 다음으로 청소년지원시설이 14회(31.8%) 연계되었고, 또래상담실이 7회(15.9%) 연계 되었다. 그 외 성매매피해여성쉼터(1회, 2.3%), 고등학교(1회, 2.3%), 청소년쉼터(1회, 2.3%)가 있다.

연계 발신 또한 다양한 기관들에 이루어졌다. 가장 많이 연계 된 기관은 대안학교이다. 대안학교에 12회(30.8%) 연계하여 청소년들의 학력을 지원하였다. 그 다음은 청소년지원시설에 7회(17.9%) 연계하여 청소년들의 입소를 문의하였다. 또 위기청소년교육센터에 7회(17.9%) 연계

하여 재의뢰를 실시하였다. 이외 경찰서(1회, 2.6%), 청소년상담지원센터(4회, 10.3%), 원스탑지원센터(1회, 2.6%), 성매매피해여성 지원시설(4회 10.3%), 직업훈련매장(2회, 5.1%), 사업장 1회(2.6%)의 연계 기관이 있다. 이중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청소년들의 일시거주 마련을 위해 연계하는 곳이다.

〈그림 21〉 O 기관의 연계현황



위기청소년교육센터의 연계현황을 살펴본 결과, 청소년들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지원을 하고자 여러 기관들과 연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계 수신활동은 주로 연계 기관에서 청소년 캠프에 참여를 의뢰한 것이다. 청소년지원시설의 연계수신 활동현황과 비교해보면, 연계기관의 종류가 많지는 않지만, 청소년지원시설의 연계현황에서 보았던 기관들과 비슷하게 도출된다. 학교 영역에서는 정규 학교가 캠프에 청소년들을 의뢰하였고, 청소년 지원 영역에는 청소년쉼터가 교육캠프 참여를 의뢰해왔다. 여성성폭력 지원 기관에는 1366, 원스탑지원센터가 연계를 하였고, 법과 관련한 영역에는 보호관찰소, 법원,

경찰청등이 연계를 해왔다. 이외, 청소년지원시설, 위기청소년교육센터, 또래상담실에서도 캠프에 참여를 의뢰하였다.

한편, 연계 발신 활동에서도 다양한 영역에서 연계가 시행되었다. 주거지원과 학력지원, 직업훈련을 위해 청소년쉼터, 청소년지원시설, 대안학교 등에 의뢰하였고, 때로 쉼터나 시설에 의뢰하지 않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학원이나 대입준비를 위한 학원에 직접 연계를 하기도 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위기청소년교육센터는 주거시설을 갖춘 시설로의 연계가 많았고, 이는 청소년지원시설과 비교해보았을 때 위기청소년교육센터가 주거공간을 갖추지 못함에 따른 결과라 하겠다.

4) 성매매피해 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의 문제점

성매매피해 청소년들은 왜 성매매에 계속 유입되는가? 성매매피해 청소년들은 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 인프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입에서 차단되지 못하고 자립에 성공하지 못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현재 성매매피해 청소년들을 위한 자립지원의 문제점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성매매피해 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의 문제점은 큰 틀에서 보았을 때 다음 4가지로 파악되었다.

(1) 시설보호 중심의 서비스체계여서 시설을 선호하지 않는 성매매피해 청소년들의 접근성을 저하시키고 있다.

우리나라 성매매피해 청소년을 위한 지원체계는 시설보호 중심으로 볼 수 있다. 성매매피해 청소년을 위한 14개의 지원시설(쉼터)이 서비스의 핵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성매매피해 청소년을 위한 지원시설은 그 역사성 만큼이나 우리나라 성매매피해 청소년 지원의 핵심 축으로 역할을 해왔다. 물론 최근 들어 위기청소년교육센터가 10개로 늘어나면서 시설보호 방식 외의 지원이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시설보호는 성매매피해 청소년의 성장과 자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성매매피해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시설보호 중심이라는 사실은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제한점이 있다.

첫째, 시설보호를 선호하지 않는 성매매피해 청소년들의 접근성을 저하시킴으로서, 성매매로의 유입 차단에 한계를 갖고 있다. 성매매피해 청소년들에 대한 인터뷰를 분석해 보면, 시설에 들어가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다(제3장 참조). 이들은 시설보호에 들어갔을 때 받게 되는

규제와 규칙들을 싫어하고 두려워한다. 이러한 성매매피해 청소년들의 성향은 최근 청소년지원 시설의 입소율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와도 맞닿아 있다(표 3 참조). ‘자유롭게 잠을 잘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시설입소는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것이다. 물론 어떤 성매매피해 청소년들은 시설보호로부터 안정감을 찾고 많은 도움을 얻어 자립한다. 그러나 상당수 성매매피해 청소년들이 시설보호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성매매피해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현재의 시설보호 중심의 서비스체계에서 탈시설화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시설보호와 관련한 또 다른 문제는 지원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들이 대동소이하다는 점이다. 현재 청소년지원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와 프로그램은 성매매피해 청소년들의 정서적 측면에 대한 지원에서부터 학력지원, 취업지원에 이르기까지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표 12 참조). 그러나 이렇게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다보니 기관의 실무자들도 소진되기 쉽고, 에너지 투입이 많이 들어가야 하는 지원들도 기초적인 수준으로 이루어지기 쉽다. 이러한 서비스 제공 패턴은 대부분의 청소년지원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 결과 개별 성매매피해 청소년이 가진 독특한 욕구를 반영하기 어렵고, 욕구에 기반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 힘들다. 특히, 취업지원과 관련해서 기초적인 직업정보제공이나 프로그램 외에, 직업체험, 인턴십, 매장 훈련등이 활발하게 지원되지 않으므로 관련 부분의 욕구충족이 어렵다(표 18 참조).

한편, 15세 미만의 저연령의 성매매피해 청소년이 있다는 점(표 7 참조), 미혼모나 지적장애와 같은 특수욕구를 가진 성매매피해 청소년이 증가하거나 그 수가 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표 8 참조), 이에 특수화된 시설 또한 충분하지 않다는 것도 원활한 서비스 지원에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성매매피해 청소년의 연령과 다양한 욕구, 개별 특성에 맞는 서비스가 시행될 수 있도록 기존의 지원시설을 차별화하고 특화할 필요가 있다.

(2) 초기만남 즉 ‘만나주는 시스템’ 이 미흡하여 초기유입을 차단하는데에 어려움이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 성매매피해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체계는 주로 시설보호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시설보호 중심의 서비스 체계는 자연스럽게 시설보호를 선택하지 않거나 못하는 성매매피해 청소년들을 사각지대에 남겨 두기 쉽다. 시설보호를 선택할 수 없는 성매매피해 청소년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특히 성매매에 유입되는 초기단계에서 이들 성매매피해 청소년들을 걸러내어 지원해 줄 안정망이 필요하다.

그러나 성매매피해 청소년들이 공적지원체계로 편입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의 구축은 아직 미흡하다. 현재 청소년지원시설과 위기청소년교육센터 모두 아웃리치 및 현장상담 서비스를 활발히 시행하고 있지 못하다(표 12, 표 19 참조). 또한 이들 기관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사례발굴 유형은 자체적으로 사례를 발굴하기보다 경찰, 검찰, 1388·1366, 보호관찰소, 학교와 같은 타 기관으로부터의 연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주요 형태이다(표 9, 표 10 참조). 이러한 사례발굴 유형은 성매매피해 청소년에 직접 서비스를 시행하는 기관이 중심이 되어 성매매피해 청소년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발굴하는 시스템이라기보다는 수동적이거나 소극적으로 사례를 연계 받는 시스템이다. 외부 기관 연계를 통해 사례가 발굴되는 비율이 높을 경우, 외부 관련 기관이 연계에 적극적이지 않을 때 사례발굴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능동적으로 성매매피해 청소년을 만나러 가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둘째, 성매매피해 청소년을 만나는 적극적인 방법 중 하나로 사이버상담을 들 수 있다. 이미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사이버상담이 부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기존 연구들(홍봉선, 남미애, 2010; 성윤숙, 2009)에 의하면, 성매매피해 청소년이 공적지원체계에 접촉하는 초기에 무엇보다 효과적인 통로가 바로 사이버상담이다. 이는 청소년 성매매의 대부분이 인터넷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상담이 성매매피해 청소년 접촉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임을 말해준다. 현재 성매매피해 청소년을 위한 사이버상담은 수행 초기이기는 하지만, 나름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성매매피해 청소년이 성매매에 접촉하는 통로를 차단하기 위한 보다 확대된 공식적인 사이버상담 서비스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능동적인 초기 만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초기 만남 시 성매매피해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에 빠르게 부응할 수 있어야, 효과적으로 초기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다. 현재 경찰, 검찰, 1388, 보호관찰, 학교, 사이버 상담 등 초기접촉의 루트는 다양하지만, 이들 기관들이 청소년지원시설에 의뢰할 경우는 시설보호를 전제로 한다. 만일 성매매피해 청소년이 시설보호를 원치 않는 경우, 이 초기 접촉은 성공적이기 어렵다. 시설보호를 원치 않는 청소년들에게 잠시 거주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채 초기 만남이 이루어진다면 이들은 다시 잘 곳과 돈을 마련하기 위해 성매매로 재유입 되기 쉽다. 그러나 현재 이들 청소년이 잠시 거주할 일시보호센터나 드롭인센터는 매우 부족하며, 시급으로라도 돈을 벌 수 있는 루트가 거의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현재 성매매피해 청소년을 위한 초기만남 체계는 실질적인 초기만남이 이루어지고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3) 안정화를 위한 인프라가 부족하고 운영방식의 유연성이 미흡하여, 성매매피해 청소년들이 공식지원체계에 안착하는데 어려움을 겪기 쉽다.

성매매피해 청소년들이 공식지원체계에 안착하여 성장하고 자립준비를 하는 것을 ‘안정화’라고 본다면, 현 지원체계는 성매매피해 청소년의 안정화를 위한 인프라가 미흡한 편이다. 특히 청소년지원시설을 제외하고는 성매매피해 청소년들이 거주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매우 빈약하다. 성매매피해 청소년들의 안정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잠잘 자리’ 즉 거주 문제이다. 왜냐하면 ‘잠잘 자리’의 부재는 곧 바로 성매매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성매매피해 청소년의 거주 욕구는 다양하다. 어떤 청소년은 일시적 거주를, 또 어떤 청소년은 중장기적 거주를, 또 다른 청소년은 성인 전환기 과정에서 자립을 위해 거주를 필요로 할 수 있다. 이들에게 필요한 거주서비스는 성매매피해 청소년이 가진 욕구에 따라 다양해야 하는데, 현재 이들을 위한 거주 서비스는 욕구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획일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즉 지원시설을 제외하면 극히 일부에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중장기 쉼터 외에도 일시보호쉼터, 드롭인센터, 그룹홈 등 다양한 주거지원 인프라가 부족하다.

이러한 거주서비스의 결핍과 획일화 현상은 장기거주를 원해 지원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거의 모든 지원시설에서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성매매피해 청소년들의 욕구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의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운영방식을 유지함으로써 성매매피해 청소년들의 안착을 방해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는 보다 유연한 시설 운영방식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4) 성매매피해 청소년을 위한 노동시장 연계와 진입구조가 미흡하여 청소년들의 성매매 유입 방지에 효과성을 갖기 어렵다.

성매매피해 청소년들이 조건만남을 할 수 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소득을 가질 수 있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취업을 한다는 것은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니다.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는 학력이 필요하고, 직업훈련과 노동시장의 일자리 제공 모두가 필요하다. 현재 청소년지원시설과 위기청소년교육센터는 성매매피해 청소년들의 직업훈련과 일자리 확보를 위해 외부 기관과 연계하거나 지원시설 자체의 능력으로 커버 할 수 있는 정도로 수행중에 있다(표 18, 표 24 참조).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직업훈련, 인턴십 프로그램까지 참여하기 보다는, 시설입소 후 적응기간을 거쳐 대부분 학력지원 서비스에 한정하여 참여 하는 실정이다(그림 6 참조). 즉, 학력 - 직업훈련 - 인턴십 - 일자리의 연속적 지원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성매매피해 청소년들이 노동시장과 연계되고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지 못한 것

이다. 정리하자면 현재 성매매피해 청소년을 위한 취업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구조에 진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중심주체가 형성되어 집중적, 체계적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성매매피해 청소년의 특수성이 반영되고, 시장진입을 가능하게 하는 별도의 직업훈련과 인턴쉽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심조직이 필요하다. 현재는 일반 청소년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연계, 활용하는 수준으로서, 성매매피해 청소년에 대한 복지개입(사례관리)이 병행되는 체계적인 일자리 경험 기회가 부족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볼 때 시급 아르바이트에서부터 정규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취업처와 루트를 개발할 수 있는 이들 성매매피해 청소년을 위한 인턴쉽 센터의 설립이 요구된다.

또한 노동시장 진입에 필요한 학력취득의 경우에도 이들 성매매피해 청소년을 위한 별도의 학력지원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다. 이들 청소년은 대개 일반학교나 일반 대안학교에 의뢰되고, 극히 일부에서 위탁대안학교를 이용하고 있다. 성매매피해 청소년들이 가진 특수성을 고려할 때, 학력지원을 위한 인프라도 이들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예를들면, 서울시의 자립학교)가 확대되어야 하고, 특히 이러한 대안학교들이 교육청이 학력을 인정하는 위탁대안학교의 형태를 띠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이들 성매매피해 청소년들의 학력지원이 의미 있어지고,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자립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성매매피해 청소년의 자립은 다차원적이다. 심리,정서적 자립, 사회적 자립, 경제적 자립, 생활자립, 정치적 자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측면을 포괄한다. 이들 자립은 상호작용하고 상호 의존적이다. 심리정서적 자립이 경제적 자립을 끌어가는 동력이 되기도 하고, 거꾸로 경제적 자립이 심리정서적 자립을 가져오는 견인차가 되기도 한다. 이처럼 성매매피해 청소년이 노동시장에 진입해 소득을 가질 기회를 갖는다는 것은 자립의 다차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뢰점과 같다.

성매매피해 청소년의 자립은 어느 한 기관에 맡겨 놓으면 성취되는 그런 녹녹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의욕을 상실한 채 방황하는 한 인간을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갖게 하고, 그 의욕을 바탕으로 사회에서 독립된 주체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하게 하고, 실제로 사회 구조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체험하고 경험하도록 하는 장시간이 소요되는 지난한 과정이다. 따라서 자립을 이루어낼 수 있는 통합적 구조가 설계될 필요가 있고, 이 구조 속에 포함된 개별 기능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다양한 제도적 장치와 이음새가 필요하다.

3. 성매매피해 청소년의 삶의 경로와 자립 욕구

1) 성매매피해 청소년의 삶의 경로

지원시설 혹은 센터에 오기까지 십대 청소년의 경로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가출, 공동생활, 성매매, 초기접촉, 지원시설 입소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인터뷰에 참여했던 십대 청소년별 가출 후 지원시설 입소까지의 경로를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25〉 가출 후 지원시설 입소까지의 과정

사례 (연령)	가출 후 지원시설 입소까지의 과정	현재 이용 시설
1 A (19)	가정폭력 → 가출 → 공동생활(모텔) →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 → 1388 → 지원시설 입소 → 고시원생활과 일 병행 → 지원시설 재입소 → 사이버대학 입학, 인턴십, 사이버 또래 상담자로서 참여	지원시설
2 B (18)	가정폭력 → 가출 → 찜질방 생활 →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 → 경찰 인계 → 지원시설 입소 → 검정고시 준비 및 인턴십 예정	지원시설
3 C (19)	가정폭력 → 가출 → 공동생활(모텔) →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 → 임신 → 1388 소개 → 지원시설 연계 → 단기 지원시설로 이동 → 지원시설 재입소 → 수능준비	지원시설
4 D (17)	가정폭력, 부모의 이혼 → 가출 → 공동생활(아는 언니집) → 성매매 강요당함 → 임신 → 원스톱센터 → 지원시설 입소 → 검정고시 학원	지원시설
5 E (16)	가정폭력 → 가출 →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 → 1388 → 단기지원시설 → 공동생활(모텔) → 1388 → 지원시설 연계	지원시설
6 F (19)	가출 → 지원시설(여러 지원시설 이동) → 절도,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 → 법원 보호관찰 2년 지원시설 6개월 처분 → 법원 위탁으로 지원시설	지원시설
7 G (18)	가출 → 공동생활(모텔) → 절도,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 → 보호감찰 → 위기지원센터 성장 캠프 참여 → 현재 집에서 머물면서 센터 프로그램 참여(상담 등)	위기청소년 교육센터

① 가출의 배경

인터뷰에 참여했던 십대청소년의 대다수가 집을 나오게 된 주된 원인은 '가정폭력' 이었다. 가정폭력의 가해자는 아버지, 오빠, 엄마 등 가장 가까운 가족 구성원으로 '가정'이라는 공간이 청소년에게 안전한 삶의 장소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가출 원인의 또 다른 한 축은 학교에서의 문제로 친구관계에서의 '따돌림', 학업에 흥미가 없어서 이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한

경우도 있었다.

원래 그 아빠가 되게 착하거든요. 되게 착한데 화나면 가정폭력이 좀 있어요. 저는 잘 안 때리는데 엄마를 좀 그러니까. 엄마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집을 나갔었던 말이에요. 다시 들어왔는데 엄마가 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되게 그런 거에 충격 받고 그대로 지내다가 근데 아빠가 계속 그러니까 예전엔 돈도 안 벌어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래도 중학교 때나 그때까지는 엄마가 다시 들어오고서는 그래도 일 조금 했었거든요. 옛날에 아빠가 도박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도 한 단는데 그래도 좀 돈을 벌니까 괜찮은데 뭐 계속 가정폭력에다가 오빠도 계속 아빠 닮아가는 거예요. (사례A)

처음에는요. 학교에서 막 생활하는 게 뭐라 해야 하지 친구를 잘 못 사귀고 좀 그랬어요. 성격이. 그리고 있다가 집에서도 엄마 아빠가 짜증을 많이 내고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도 주고 좀 제판에는 스트레스도 많이 쌓였어요. 하고 있다가 학교에 누가 전학을 왔어요. 개랑 어떻게 하다 친구가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무 이유 없이 집에 싸우고 나와서 집에 들어가기 싫다고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계속 나왔어요. 집에 안 들어가고(사례F)

이들의 가출은 반복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가출 후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가출의 원인이 되었던 주변 환경이 변화되지 않음에 따라 또 다시 가출을 하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짐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나갈 생각은 없었는데 그 다음에는 그렇게 좀 있다 보니까 똑같아 지잖아요. 그게 하루 이틀? 한 3일? 정도는 잘해줘요. 예전과 다르게. 막 그러는데 3일 지나고 그러면 다시 또 똑같아 지나가 되게 지겹고 그래서 한번 나갔었으니까 뭐 두 번 못 나가겠느냐? 그래가지고 나왔죠. (사례A)

② 가출이후 생활

가출 후, 대다수의 십대 청소년들은 또래의 친구, 혹은 '이논' 언니 오빠와 공동생활을 하게 됨. 공동생활은 거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십대 청소년의 전략인 동시에 또래와의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 공동생활의 공간은 대다수의 청소년이 '모텔' 혹은 '친구집' 을 선택했고, 가출 초기 찜질방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가출 이후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 묻자)

사례A : 원룸 잡을 정도는 안 된다 싶으면 근데 좀 살만하다 싶으면 모텔에서 자고, 아니면 찜질방. 그러다 돈 얼마 없다 하면 PC방. 내려가죠.

연구자 : 돈을 주로 어떻게 벌어?

사례A : 성 매매 하거나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성 매매 하거나 아니면 그냥 아는 사람들에게 조금 그냥 밥 먹을 돈 정도 그 정도 꾸거나 좀 이렇게 빌려달라고 하고, 전 그거밖에 안 했어요. 그걸로.

처음에는 뭐 아는 친구 집이 있던가, 아니면 뭐 오빠 집에도 있던가, 안되면 계속 있기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돈을 벌려고 그런 원조교제도 하게 되고, 돈을 벌면 모텔 같은 데 아니면 짐질방이라던가(사례F).

이러한 청소년들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기관(가)의 대표는 ‘가출팸(가출 패밀리)’ 라고 표현하면서, 가출 청소년의 새로운 삶의 양식으로 볼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③ 성매매 배경 및 경로

가출이후, 청소년들은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들은 자연스럽게 쉽게 접촉 가능한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를 통해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였다.

한국인권진흥원(2011)에서는 “가출 청소년 성매매 유입 예방 및 지원 방안”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보호관찰소, 청소년지원시설, 위기청소년교육센터, 거리 등으로 할당하여 십대 여성 383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성매매 유입 경로는 ‘가출 후 생활비가 없어서’가 차지하는 비율이 68.7%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그냥 친구들이 함께 하자고 해서’와 ‘꼭 필요한 것을 하기 위해 돈이 필요해서’가 각각 6.1%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인터뷰에 참여했던 청소년들의 경우에도, 대다수의 청소년이 ‘가출 후 생활비가 없어서’ 성매매를 했다고 응답했다.

성매매 유입 경로로는 대다수의 청소년이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를 하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한국인권진흥원(2011)의 연구에서도 성매매 유입 경로는 인터넷 채팅이 84.7%로 높게 나타났다. 성매매는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성매매는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의 원인이 되거나, 임심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성매매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공동생활을 하는 구성원들이 감당해야하는 역할 혹은 책임으로 간주되어 강요되기도 함을 알 수 있다.

(성매매 과정에 대해서 묻자) 그때는 처음에 할 때는 조건 만남이라고 사이트 있잖아요. 언니랑 그 친구가 조건만남 사이트에서 했거든요. 아니다 거 아 거기서 했구나. 그거 하고 그렇게 하다가 핸드폰이 있으면 좋긴 한데 핸드폰이 없거나 우리가 너무 가출한 게 티 난다 아니면 주거가

었다. 그러면 버디버디 같은 거 메신저로 하죠. (사례A)

처음에는 밖에 그냥 나가 있었어요. 그리고 있다가 개도 처음에는 그 것에 대해 잘 몰랐나 봐요. 원조교제에 대한 것을. 우리 둘이 피시방에서 어떻게 돈 벌까 찾고 있었는데요. 그전에는 TV같은 데 보면 그런 10대들이 그러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딱 보고 개가 먼저 얘기를 꺼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세이에 채팅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찾게 됐어요. 처음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돈을 쉽게 버는 일이 그것 밖에 없잖아요. 한번 접하고 나니까. 하기 싫어도 먹고 자고 해야 되는데 계속 하게 되고. (사례F)

④ 초기 접촉

지원시설로 이동하게 되는 초기 접촉은 1388, 경찰, 법원위탁, 원스톱지원센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루어졌다. 사례B의 경우, '조건만남'을 하는 과정에서 경찰에게 검거된 이후, 지원시설로 인계되었다. 또 다른 경우, 임신, 절도 등의 범죄와 같은 특정 사건이 발생한 이후 지원시설로 연계됨을 알 수 있다.

(가출 후 2명의 언니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는데) 한 언니는 나가고 한 언니는 같이 있었는데 그 언니가 임신한 거예요. 그러가지고 할 게 없잖아요. 어디 갈 수도 없고,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세 명에서 그러니까 그 언니랑 셋이서 살다가 원룸잡고 살고 있었는데 그 언니는 배는 불러오고 다른 언니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어차피 애는 낳아야 할 거 아니에요. 이미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래서 1388 전화해서 신청 하겠다고, 그래서 **로 연결해 주더라고요. (사례A)

(지원시설로 오게 된 과정을 묻자) 처음에 좀.. 집도 잘 안들어가고 그랬어요. 아이들하고도 많이 놀고.. 집도 잘 안들어가고. 집을 주기적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몇 달에 한번 들어갈까 말까 들어가고 하니까. 솔직히 밖에 있으면서 아르바이트하고 막 그러지는 못하잖아요.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저희가 돈을 따로 준비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막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안 좋은 것도 많이 배워가고 그러다가 큰 아버지께서 1388을 소개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연계 되가지고 왔어요. (사례C)

⑤ 지원시설에서의 생활

성매매피해 청소년들의 경우, 가출 이후 현재 지원시설에 오기까지 하나의 지원시설에서 지속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단기쉼터 혹은 또 다른 장기지원시설 등 다양한 지원시설들을 거쳐 현재 지원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매매피해 청소년에게 지원시설 입소는 과거의 삶과 단절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또한 지

원시설은 '안전한 주거 공간', '가족 같은 분위기' 등 일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인 동시에 학업을 지속하게 해주는 역할, 직업 교육 등 다양한 의미가 있다.

(지원시설에 오게 된 이후 좋은 점, 달라진 점을 묻자) 일단 먹고 자고 할 수 있잖아요. 일단 그게 해결되면 뭐라도 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손을 먼저 내밀었지만 (지원시설에서 우리를) 받아줬고, 전화할 수 있었던 거는 우리를 많이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제가 그때 옛날과 달리 많이 편찮아졌거든요. 상담도 하고 미술치료도 하고, 선생님들이랑 하면서 세상에 대한 불신감도 없어졌고, 그런 게 힘들 때마다 생각난던 것 같아요. 왜냐면 가족이 가족 같지 않았잖아요. 새날은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이 해주었으니까. (사례A)

음.. 사람도 많으니까 재미있구요.. 가족같고.. 집에서는 혼자만 있는데 여기서는 여럿이 있고 같이 자고 하니가 좋은 거 같아요. (사례B)

그냥 밖에 보다 여기서 지내는 게 좋으니까. 편해요. 선생님들하고 가족들처럼 서로 장난도 치고 그러니까. 되게 편해요. 내가 학원을 다닐 수 있게 도와주는거랑 교통비도 지원해주시고.. 집에서 다녔으면 아마 이렇게 못 다녔을 꺼예요. 사람도 많으니까 재미있구요. 가족 같고, 집에서는 혼자만 있는데 여기서는 여럿이 있고 같이 자고 하니가 좋은 거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대화도 되게 많이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밖에 친구들과하고 노는 게 아니고 안에서든 맨날 보니까.. 안의 친구들이랑 많이 놀아요. 되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서로 잘 챙겨주고. 되게 많이 웃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사례C)

지원시설 내에서 지켜야 하는 규칙이 많지만 이러한 규칙을 따르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갖기보다 스스로 이러한 규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사례B와 사례C는 공동생활에서의 규칙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었고, 이를 지킴으로써 스스로 안정감과 소속감을 느끼고 있었다.

(현재 머물고 있는 숙소에서 어떤 규칙들이 있는지 묻자)

사례 B : 9시까지 들어와야 되고 무단 외박 3번 하면은..

연구자 : 나가야 되요?

사례 B : 네.. 그리고 폭력 안되고, 설거지는 각자 개인이 나눠서 해야 되고, TV는 2-5시 뭐 이런거랑 컴퓨터.. 토요일은 옷장 검사랑 일요일 날은 예배드리고..

연구자 : 토요일에는 옷장검사?

사례 B : 토요일하고 일요일에는 TV 무제한으로 볼 수 있고 그 대신 토요일 날은 10시에 기상이고 나머지는 9시에 기상이고, 청소도 해야되고 청소 안할 때 500원 깎이고. 그래서 3번되면 1000원되고 하고

연구자 : 많은 규칙이 있네요., 혹시 제일 지키기 어려운 규칙이 뭐예요?

사례 B : 다 지키는데 널널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현재 지원시설로 오기 전에 있었던 지원시설과 현재 지원시설의 차이를 묻자)

사례 C : 거기 ****(과거 머물렀던 지원시설)는 풀어놓고 산다면 양을 풀어놓고 산다면 여기는 양을 튼튼하게 짓고 살아요.(연구자: 울타리가 있어서?) 너무 튼튼하니까 제가 가끔 스트레스 받는다 하잖아요. 근데 또 어떻게 좋게 보면 되게 그런 게 있으니까 틀어잡히지 않나..(사례C)

그러나 모든 청소년이 지원시설 생활에 만족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지나친 규제와 간섭으로 청소년들의 '자유'가 침해되는 경우, 지원시설에 적응하기 어려운 기제로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례F는 지원시설에서의 어려움을 묻자 '그냥 자유가 없는 거'라고 응답하였다. 현재 지원시설에서의 규제들이 본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같은 시설에 머물고 있는 사례E의 경우도 현재 시설에서 외출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른 시설로 옮기고 싶다고 이야기하였다.

연구자 : 여기는 어떤 규칙들이 있어요?

사례E : 담배피지 말고. 프로그램 참여해야한다. 그리고 또 폭력하지 말아야 한다. 누가 짜는 사람 도와주면 너도 벌칙 먹는다

연구자 : 짜는 사람?

사례E : 도망가는 사람. 그리고 또 외출되면 외출 어기면 두 배로 못한다고.

연구자 : 외출 어긴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사례E : 처음에 한달 넘어서 외출이 풀려요.

연구자 : 답답하겠다. 외출을 못한다고 하면 아예 바깥으로 못나간다는 거예요?

사례E : 맞아요.

연구자 : 그럼 산책도 못해요?

사례E : 프로그램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요

연구자 : 다같이 움직이는 선생님들이랑? 그럴때만 같이 하는 거예요?

사례E : 예.

기관(나)의 대표는 현재 시설의 입소율이 떨어지는 것은 아이들이 시설을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싫어하는 이유는 시설안에서 지켜야 하는 규칙들(금주, 금연 등)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기관(가)의 대표는 '성매매피해 청소년의 경우, 위기 청소년들과 다르기 때문에 시설에서의 규칙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즉, 이들의 욕구를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이들의 삶의 경험에 기반하여 규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2) 자립 욕구

인터뷰에 참여했던 청소년들의 경우, 지원시설에서 생활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현재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된다. 사례B가 과거의 자신과 비슷하게 살아가는 친구들에게 ‘그렇게 살다가는 후회하게 될꺼야, 그렇게 살면 안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사례C가 ‘예전처럼만 안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때를 생각해보면 생각없이 돌아다니고 행동하고’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자신의 삶을 성찰하게 되고, 이러한 고민들은 ‘학업’ 혹은 ‘일’ 에 대한 욕구로 이어지게 된다.

지원시설 입소 후 십대 청소년들은 지원시설에서 제공하는 학업지원(검정고시), 직업교육 프로그램(제과제빵 등), 문화 프로그램, 인문학 프로그램, 성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다.

인문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생각해봐요. 뭐 주제는 다양하니까. 뭐.. 사랑이면 사랑, 성이면 성.. 뭐..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는가 인생에 대해서도하고 되게 다양해요. 또 그 다양한 것에 대해서 되게 보면 흔한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다보니까 되게 뭐랄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깊어지기도 하고.. 재미있었어요. (사례C)

학업과 관련하여, 십대 청소년들은 기존의 공교육에 편입되기보다 검정고시, 자립학교 등을 통해 학업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학교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질문에) 전혀 안 맞아요. 맞는 애들 있겠죠. 아니면 가고 싶다고나 그러면 보내주는 건 좋은데 가기 싫다는 애들을 굳이 보내서 뭘 하겠어요. 어차피 땀땀이 치고 어차피 똑같지 뭐. 그리고 뭐지? 그런 애들이 솔직히 자기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도 잘 다닐까 말간에 그건 솔직히 그렇게 안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닐까 말간에 뭐 억지로 보내서 뭘 할 거예요? 그게 좀 애들은 자유롭게 살았고 자유로운 생각을 갖고 있는데 거긴 너무 너 이 틀에 맞춰 이런 식인 거 같아서. 지루하고 (사례A)

전.. 학교를 별로 원하지 않았어요. 제가 학교를 대안학교도 가봤는데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제 생각하는 학교는 교복을 입고 싶은데 학교는 별로 다니고 싶지 않았어요. 또 학교를 다니면 제가 스무살되면 졸업을 하는건데 그렇게 하기도 싫고 그럴 바에는 똑같이 합격한 다음에 검정고시 본 다음에 대학 입하는 게 나올 것 같아가지고. (사례C)

일자리와 관련하여, 지원시설별 차이가 있으나 직업훈련(제과제빵) 교육에 참여하기도 하고, 제한된 경우이지만 자체적인 자립매장을 운영하여 직업 체험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도 있었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의 사례도 있었다.

보통 애들은 거의 대부분 미용 아니면 메이크업 이런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해보라 그래요. 오래하는 애들 없거든요. 그러면은 판거 해볼래. 이려고. 권유해주거나 이런 프로그램. 인턴십 같은 짧게라도 경험해 볼 수 있는 길게 아니라도 한달? 이정도 하면은 대충 알잖아요. 내가 이게 하고 싶은지 아닌지 이런 게 프로그램이 많으면은... 그래서 ****에서 인턴십한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사례A)

인턴십도 했었어요. 제과점에서 일을 했었는데. 일을 했었는데 정말 제가 생각했던거랑 약간 다른.. 그런 하루 종일 서있어야 되고 막..정말 다리는 너무.. 제가 일어서있는 걸 안 좋아해요. 맨날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거 완전 좋아하는데 거기서 맨날 일어서 있어야 하니까 너무 솔직히 힘든 거예요. 이건 내 적성에 잘 안맞는 것 같다. 제빵은 그냥 케익 데코 사진보고 나도 저렇게 데코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제빵학원을... 진짜 저는 케익 데코만 하는 줄 알았어요. 갔어요. 근데 케익 데코가 아니라 그빵 자체를 만드는 거예요. 재미있어요. 했어요. 기대했던 데코보다는 아니었지만 재미있었어요. 막.. 배워두면 좋지 않겠나 배웠는데 이런 쪽으로 직업을 갖고 싶다는 건 아니었죠. (사례C)

인터뷰에 참여한 대다수의 청소년의 경우, 제도권 교육 내에 있는 청소년들처럼 학업 이후 일을 갖는 순차적인 과정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지원시설에서 생활 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일’ 혹은 ‘학업’에 대한 욕구를 갖게 되는 경험을 하고 있었다. 아르바이트 혹은 직업훈련 과정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일을 찾게 되기도 하고, 반면에 공부의 필요성을 절감하기도 했다. 공부를 해야겠다는 결정하게 된 경우, 검정고시 혹은 수능이라는 목표를 갖고 공부를 하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 또한, 일과 학업을 병행하면서 자신의 목표를 더욱 더 명확하게 찾게 되기도 한다.

(공부 다시 시작한 이유를 묻자)음.. 그니까.. (웃음) 어렸을 때는 밖에 나가있을 때는 그런거 생각할 겨를이 없잖아요. 그냥 오늘 뭐먹고 자지 오늘은 어떻게 자지 이런 거 걱정했는데. 이제 좀 안정적으로 있다보니까 이제 그런 걱정이 없잖아요. 오늘 뭐먹고 자고 그런 걱정도 없고 솔직히 예전에는 나이가 어려서 그렇다고 치지만 지금은 점점 스무살을 바라보는 나이인데 내가 여기 과연 나와가지고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다른 애들은 다 학교 다니면서 고등학교도 이번에 졸업하게 되는데 나같은 경우는 또 이려고 공부 안하고 있다가 뒤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사례C)

사례A의 경우, 지원시설에서 제공하는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이전 카페에서의 아르바

이트, 공장에 취업하는 등 다양한 일을 한 경험이 있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사례A는 학력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다고 이야기했다. 현재 학업과 일을 병행한 경우로, 대안학교를 다니면서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지원시설 생활을 통해 학원을 갈 수 있는 자원이거나 기회를 얻었고, 지원시설에서 제공하는 직업 체험을 통해 본인의 적성을 구체화하고 있었다. 또한, 대학에서 상담을 전공하여 또래상담에 적용해보면서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처한 친구들에 대한 상담을 통해 자신이 ‘가치 있다’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했다.

(과거에 지원시설에서 머물다가 다시 나갔다 다시 들어오게 된 이유)

연구자 : 아 대학에 입학 하고 다시 들어온 거야?

사례A : 네 공부를 해야 되니까.

연구자 : 음....그러면 첫 번째 왔다가 10개월 있다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거잖아? 근데 왜 나갔었어?

사례A : 그때는 좀 더 놀고 싶다가보다는 그 때 지원시설에서 잘 지내긴 했는데 별로 맘에 들지 않는 사람이 많아서, 조금 그래서 그냥 자립 하겠다 하고 나와서 아빠 있는데 있다가 또 일도 했다가 그래서 지내다가 그냥.

연구자 : 아 집에 갔었구나?

사례A : 네. 집에 갔는데 집에선 한 달밖에 안 있었어요. 한달동안 놀고 맨날.

연구자 : 그러면 어디 있었어? 그 동안?

사례A : 그 동안 애인어랑 그때 사귀었던 사람어랑 같이 살거나 아니면 혼자서 고시원에서 일하면서 살거나.

연구자 : 고시원에서 일하면 어떤 일을 하는 거야? 사례A: 그냥 커피나 이런데 대충 그냥 되는데, 다 넣어보고. 그 때는 커피 했었거든요. 커피 하고 싶어서 그때는 카페에서 일했어요.

연구자 : 어..... 서빙 같은 거?

사례A : 네 카페에서는 그거 만드는 거.

연구자 : 만드는 거 했었어?

사례A : 근데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어요. 별로 그렇게 그렇진 않더라구요.

연구자 : 그럼 이제 그런 일을 하다가 사이버 대학도 입학하게 된 거고 그러면서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들어온 거야?

사례A : 네 그때 공장에서 일하면서. 대학 들어가기 전에 바로 공장에서 일했거든요.

연구자 : 무슨 공장?

사례A : 생산직 해가지고 갤럭시S 카메라 렌즈 만드는 거 했거든요. 아 공장에서 일하면서 아 나는 정말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공부를 해야 사람이 살만하구나. 이걸 느껴서. 학력이 좀 있어야 되더라구요.(중략) 애들한테 대하는 태도나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상담가로서 조금 해야 되는 자세들이나 이런 게, 그런 게 딱 기본으로 알고 있으니까 좀 괜찮은 거 같아요. 좀 더 배려해줄 수 있어요. 애들한테.

사례B는 현재 검정고시를 준비하면서 본인이 관심이 있는 일에 대한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다. 사례A와 마찬가지로 학업과 일을 병행하고 있는 경우로 본인의 꿈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조건들에 대해 생각하고 이를 위해 ‘영어랑 수학’ 등의 학업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향후, 검정고시와 인턴십을 통해 본인의 ‘꿈’을 찾고 ‘돈을 벌어야겠다’는 미래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현재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공부’라고 이야기했다.

연구자 : 사육사라던지 또래 상담이라던지 그런 일을 하려면 가장 필요한 일이 뭐 같아요?

사례B : 내 할 일 하는 거

연구자 : 지금 할 일이 지금 뭐든 거 같아요?

사례B : 공부?

연구자 : 공부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례B : 사람이 살아가면서 도움될까 봐서

사례C의 경우, 현재 수능을 보기 위해 학원에 다니고 있음. 사례C는 공부를 하기 전 직업교육으로 제빵교육도 받아보고, 이후 제과점에서 인턴십에도 참여해 보았는데 자신의 적성에 잘 맞지 않았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있을 것보다 현재 본인에게 필요한 것이 공부를 통해 능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수능을 준비하고 있다.

어렸을 때는 밖에 나가있을 때는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잖아요. 그냥 오늘 뭐먹고 자지 오늘은 어떻게 자지 이런 거 걱정했는데. 이제 좀 안정적으로 있다보니까 이제 그런 걱정이 없잖아요. 오늘 뭐먹고 자고 그런 걱정도 없고 솔직히 예전에는 나이가 어려서 그렇다고 치지만 지금은 점점 스무살을 바라보는 나이인데 내가 여기 과연 나와 가지고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다른 애들은 다 학교 다니면서 고등학교도 이번에 졸업하게 되는데 나 같은 경우는 또 이려고 공부 안하고 있다가 뒤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사례C)

인터뷰에 참여했던 청소년들은 지원시설에서의 생활을 기반으로, 인턴십에 참여했던 경험, 검정고시 혹은 수능을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지원시설을 떠나게 되는 20세가 되었을 때, ‘독립’ 혹은 ‘자립’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그러한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었다.

사례A는 과거 인턴십을 했던 일, 그리고 현재 사이버 대학에 다니면서 또래 친구들을 상담하는 일을 하면서 스스로 자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앞으로 사회복지사가 되어서 일을 하고 싶은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사례B는 현재 자신이 하고 싶은 '사육사' 라는 일을 찾았고 이를 공부를 해야하는 필요성을 인정하고 현재 검정고시를 준비 중이다. 또한, 지원시설에서 머물 수 있는 기간 이후인 20세에는 자신의 일을 갖고 성인 그룹홈에서 거주하면서 독립을 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사례B : 20살까지 있던 다음에 그룹홈 갈꺼예요

연구자 : 거기는 어떻게 갈 수 있는 곳인데요?

사례B : 돈 버는 사람만

연구자 : 자기가 일하는 사람들이..

사례B : 네

연구자 : 그룹홈 있는 건 어떻게 알았어요?

사례B : 요번에 만들었는데

연구자 : 아.. 이번에.. 만들어진지 얼마 안된 거예요? 혹시 아는 사람이 있어요?

사례B : 지원시설에 있던 언니가 거기 갔어요. 집세도 내고 다 자기 스스로,,, 밥도 자기 스스로 차려먹고..

현재 수능을 준비 중인 사례C의 경우, 수능을 본 이후 자신의 적성에 맞는 공부를 해서 일을 찾고 싶고, 이후 스스로 돈을 벌어 '독립' 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사례C는 자신의 현재 심정을 '두려우면 시작도 못해요. 일단 정말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안하는 것보다 후회가 더 안 들잖아요. 후회하더라도 해보고 후회하는 게 낫지. 두려워하면 하나도 해낼 수가 없어요' 라고 표현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두려움도 있지만 이를 극복하고 싶고, 독립을 하겠다는 본인의 의지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외국의 청소년 성매매 관련 법률 및 지원시스템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 성매매 관련 법률이 처음 법제화 된 시기가 2000년으로, 본 법안 제정 이후 이를 위한 제도가 갖추어지기 시작하였고 관련 연구들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앞서 청소년 성매매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성매매피해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했던 미국과 영국의 관련 법률 및 지원시스템 사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1) 미국의 청소년 성매매 관련 법규 및 시스템

(1) 미국의 청소년 성매매 관련 법규

1998년 아동보호와 성관련 범죄자 처벌법(Child Protection and Sexual Predator Punishment Act of 1998)은 성범죄를 행할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성범죄로 규정하고 있다(성윤숙, 2011). 이 법은 컴퓨터로 인해 조장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위협, 특히 끔찍한 성폭력에 대해 포괄적으로 대응한 법률이다. 이 법률은 신중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지원과 방법을 제시하여 미국의 아동들이 성범죄자들의 성적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수단을 취하고 있다(박병식 외, 2007).

이후, 2006년 제정된 아담 왈시 어린이 보호 및 안전 법(Adam Walsh Child Protection and Safety Act)에는 아동 학대, 유괴, 음란, 아동 포르노그래피, 음란물 등의 유통을 위한 인터넷 이용을 포함하여 아동 성 착취를 처벌하기 위한 법률이 마련되었다. 이 법안에는 아동의 성착취를 위해 아동 포르노그래피의 제작, 유통행위를 하거나 아동 성범죄자들의 DNA를 채취하여 등록하고 성범죄자들을 지속적으로 감시·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각 주에서는 이 법률에 따라 아동 성범죄자들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연방에 보고하여 기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성윤숙, 2009).

미국에서는 주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인터넷을 이용하여 성행위를 하려는 목적으로 아동에게 채팅 또는 이메일로 접근하는 행위를 인터넷 루어링(Internet Luring)²⁾으로 처벌하고 있다(박병식 외, 2007). 주법의 대표적인 사례로 플로리다 주를 살펴보면, 플로리다 주에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범죄 관련법(The Cybercrimes Against Children Act of 2007)’을 제정하였다. 이 법안은 “아동을 성적으로 유인하기 위한 컴퓨터 사용”과 같이 온라인으로 아동을 성적으로 유인하는 것에 대하여 추가적인 법령을 만들어 아동을 성적으로 유인하는 범죄에 대하여 강경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였다(성윤숙, 2009). 이처럼 미국 연방법과 주법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행위가 실행되기 전 단계에서 범죄인을 체포하는 것을 가능케 하였다(성윤숙, 2011).

(2) 미국의 청소년 성매매 관련 지원 시스템

미국의 대표적인 청소년 성매매 지원 시스템으로 실종 및 착취아동신고센터(National Center

2) 인터넷 루어링은 그루밍(grooming) 행위 중 하나로써 아동에게 성매매 또는 성폭력을 행사하기 전에 인터넷상으로 그루밍(믿음과 신뢰를 쌓는 것)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박병식 외, 2007).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NCMEC)를 들 수 있다. 이 센터는 1984년에 유괴를 당했거나, 위협에 처하고, 성적 착취를 당하고 있는 아동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아동과 가족에게 전문적이고 실제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립되었다(성윤숙, 2009).

본 센터의 역할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수사담당자와 전문가들에게 아동 포르노그래피와 성착취 사례를 이해하고, 조사, 해결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둘째, 아동학대 및 아동성착취, 아동 포르노그래피, 미아 사례를 수사하는 수사담당자와 전문가들의 전문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아동학대 및 착취 수사기법을 원조한다. 셋째, 실종 및 피착취 아동과 가족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공동체적 노력과 정보 교환, 종합적 사례관리를 강조하는 훈련 및 기술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넷째, 아동학대사태에 대한 각 기관간의 협동수사과정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각 기관간의 프로토콜을 개발한다(최인섭 외, 2000).

또 다른 대표적인 시스템으로 FBI의 사이버 범죄 방지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FBI의 '범국가적 무죄이미지 운동(Innocent Images National Initiative, IINI)'은 온라인을 통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아동포르노와 아동 성착취를 막기 위해 정보수집, 사전예방활동, 다기관협력 조사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범국가적 무죄이미지 운동'에서는 주, 지역, 국제 정부기관과 FBI 현장 사무소 그리고 법수행관들이 협력체계를 제공하고 있다. '범국가적 무죄이미지 운동'의 구체적인 역할을 살펴보면,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성착취와 학대 행위를 줄이고, 아동 피해자를 보호하고, 확인하는 업무를 하고 있으며, 인터넷 혹은 여러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여 개인 혹은 사업적으로 아동 성착취를 하는 성범죄자를 조사하고 기소하기도 한다. 최근 아동포르노그래피를 올리는 인터넷 웹사이트, 인터넷 뉴스그룹, 인터넷 채팅, 파일서버, 온라인 그룹, P2P 파일공유프로그램, 게시판 및 기타 온라인 포럼 등 인터넷과 온라인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성윤숙, 2011).

또한, 보건사회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의 가족 및 청소년 서비스국에서는 청소년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는 긍정적인 대안들을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기초센터 프로그램(Basic Center Programme), 집 없는 청소년을 위한 임시거주 프로그램(Transitional Living Program for Homeless Youth), 거리 현장접근 프로그램(Street Outreach Program), 국립 가출 전화(National Runaway Switchboard), 가출 및 집 없는 청소년을 위한 훈련 및 기술지원 체계(Runaway and Homeless Youth Training and Technical Assistance System) 등의 프로그램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공되고 있다(최인섭 외, 2000).

(3) 프로그램 사례³⁾

① 기초센터 프로그램(Basic Center Programme)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가출청소년들을 가족과 재결합하도록 도와주고, 그들의 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재결합이 불가능할 경우 청소년이 기거할 수 있는 곳을 찾아주어 제반 생활여건을 안정시키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기초센터 프로그램의 서비스 수혜 대상은 법원에서 지원시설에 보내지지 않는 12-18세 가출 청소년들로서 이들을 위한 단기 거주쉼터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가출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위기개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장단기 응급쉼터
- 가출청소년과 그들의 가족을 위한 개인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서비스
- 사후관리서비스
- 레크레이션 프로그램
- 서비스 연계
- 현장접근 서비스

② 집 없는 청소년을 위한 임시거주 프로그램(Transitional Living Program for Homeless Youth)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과도기를 이겨내고 자립적인 생활로 전환하고, 장기간 서비스 기관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적인 생활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데 있다. 과도기 생활 프로그램은 긴급쉼터와는 차이가 있는데, 긴급쉼터는 기본적으로 위기 중심적 서비스만을 제공하고, 대부분 거주기간을 30일로 제한하고 있지만 과도기 생활프로그램은 직업이나 집을 얻는 일 등의 청소년들이 스스로 결정한 목표들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이기에 때문에, 6개월에서 2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제공되는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 그룹홈이나 아파트, 개방가정에 안전하고 지지적인 주거 서비스 제공
- 정신적, 육체적 건강보호 서비스 제공
- 일상생활기술, 예산책정, 거주지를 찾고 유지하기, 직업계획 등 훈련서비스
- 직업훈련 기회 제공
- 청소년들을 위한 개별상담, 집단상담 및 통합서비스 제공

3) 최인섭 외(2000). 외국의 가출청소년 대책. 청소년보호위원회. 참조.

- 직업교육 및 구직 서비스 제공
- 현장접근 서비스

③ 거리 현장접근 프로그램(Street Outreach Program)

이 프로그램은 성적 학대와 가출 및 집 없는 청소년에 대한 착취를 예방하고 성적 학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가출 청소년, 거리 청소년, 집 없는 청소년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다.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거리에서의 교육과 상담
- 긴급쉼터
- 기본적인 생존 보장
- 개인별 사정
- 치료와 상담
- 예방 및 교육활동
- 정보제공 및 소개

④ 국립 가출 전화(National Runaway Switchboard)

국립가출전화는 비밀이 보장되고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국적 규모의 무료 긴급직통전화를 말하며 자원봉사체제로 운영되는 비영리조직이다. 이 전화는 위험에 처한 청소년들과 가족에게 위기 개입 상담을 통해 정보를 제공한다.

⑤ 가출 및 집 없는 청소년을 위한 훈련 및 기술지원 체계(Runaway and Homeless Youth Training and Technical Assistance System)

10개 지역 센터에서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가출 청소년과 집 없는 청소년들을 위한 기초센터 프로그램과 과도기거주프로그램, 약물남용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 담당자들에게 훈련과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훈련과 기술적 지원 서비스는 각 청소년 프로그램의 절차나 운영에 관한 정보교환을 활성화함으로써 프로그램 운영자들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기술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⑥ 밤의 아이들(Children of the Night)⁴⁾

1979년 설립된 민간지원 단체인 ‘밤의 아이들(Children of the Night)’은 일종의 지원시설로, 성매매를 경험한 11세에서 17세의 청소년들에게 집과 같은 환경에서 여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이 단체의 주요 프로그램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 Hot-line 운영으로, 성폭행, 구타, 약물 과다복용 등의 사유와 함께 길거리성매매에서 탈출하려는 청소년들을 위해 365일 24시간 긴급전화를 운영하고 있다. 준비된 상담원이 피난처를 찾는 청소년의 전화가 걸려오면 지원시설(shelter home)로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둘째, 현장구조 순찰차 운영으로 청소년들이 밀집된 거리를 순찰하면서 길거리 청소년들에게 단체의 긴급전화번호와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카드를 나눠주고 에이즈 예방을 위해 콘돔을 배부한다.

셋째, 지원시설 운영으로, 대학기숙사와 같은 방을 1인실 개인방을 배정하고, 청소년의 사회성, 심리적 안정, 학과 성취수준 등에 관한 측정 평가도 실시한다. 이후 장기거주를 위해 위탁 가정이나 그룹홈, 취업한 경우는 자신의 아파트나 기숙사 등 청소년마다 자신의 형편에 맞는 곳으로 배치된다.

넷째, 현장 대안학교로, 1997년 사립학교로 공식인가를 받아 청소년들은 학점을 받고 학교 졸업장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교사들은 유자격자로 구성되었고, 학과 커리큘럼은 개개 청소년의 영어, 수학, 사회과 학력수준에 맞춰서 개인별 욕구에 부합하도록 교육을 실시한다.

⑦ 미혼모 교육지원 및 그룹홈(Second Chance Homes) 사례⁵⁾

미국의 미혼모 교육지원 및 그룹홈 지원 사례의 경우, 성매매피해 청소년을 위한 지원 서비스와 차이가 있지만, 성매매피해 청소년들과 같이 특수한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차별화된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점, 즉 이 두 집단 모두 거주와 교육, 직업교육 등의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에게 시사점을 제공해줄 것이라고 보고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의 미혼모를 위한 서비스 중 교육지원 프로그램과 거주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미혼모를 위한 교육지원서비스는 일반 학교 내에 미혼모를 위한 지원시설을 갖춘 프로그램과 10대 미혼모만을 위한 별도의 대안 교육 프로그램의 2가지로 운영되고 있다. 일반학교에 10대 미혼모를

4) 미국의 사례는 홍봉선·남미애·아영아(2009). 성매수피해 청소년의 현황과 사회적 지원체계 점검. 보건복지부 / 김인숙·하지선(2010). 가출, 성매매 위기 십대여성의 자립지원 모델. 늘푸른여성지원센터. 두 연구의 내용 중 일부를 참조하여 요약한 것임.

5) 여성가족부(2005). 미혼모부자 종합대책에 관한 연구. 여성가족부. 참조.

위한 특별학습과 탁아시설을 운영하여 학업과 육아를 성취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 있다. 또한, 미혼모부를 위한 대안학교를 주와 시의 교육기금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미혼모의 아이는 대안학교와 연결되어 있고 대안교육을 통해 고등학교 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편, 주거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미전역에 7개 10대 양육모 보호 그룹홈이 운영되고 있다. 이들 그룹홈에서는 주거서비스, 슈퍼비전과 구조, 사례관리, 부모교육과 일상생활기술 훈련 등이 제공되고 있다. 이들 그룹홈(Second Chance Homes)은 성인의 감독을 받는 지지 그룹홈 혹은 10대모와 그 자녀를 위한 아파트 단지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주된 서비스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성인 슈퍼비전 및 지지적 주거 환경 제공
- 임신 예방서비스 혹은 의뢰
- 고등학교 혹은 학위를 마칠 것을 요구
- 아동보호, 보건, 송영, 상담과 같은 지원 서비스
- 부모 교육 및 생활 기술반 운영
- 교육, 직업훈련, 취업 관련 서비스
- 지역사회 참여
- 개별 케이스 매니지먼트 및 멘토링
- 문화적으로 민감한 서비스 제공
- 독립생활로 자연스럽게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 서비스

⑧ 위기 청소년 진로지도 프로그램

미국 청소년 직업봉사단(job corps)⁶⁾ 프로그램은 노동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직업훈련과 숙련도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통합적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며, 주요대상은 미국시민이거나 영주권을 갖고 있는 16-24세의 저소득, 중퇴 청소년이다. 직업봉사단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청소년들은 2-4주간의 오리엔테이션을 받는다. 이를 통해 개별능력테스트와 직업탐색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담당교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개별화된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을 결정하게 된다.

청소년직업훈련원의 주요 프로그램은 참가자 선발(outreach and admissions), 센터운영(center service), 취업알선(placement) 등이다. 청소년 직업봉사단 교육은 학생들 능력이 허용하는 한 신속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으며, 읽기와 수학 등과 같은 기본적인 교과교육,

6) <http://www.jobcorps.gov/employment> 참조.

일반학력인증서(GED)와 같은 고등학교 고등학교 수료증 취득을 위한 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지역사회대학교과의 연계 하에 인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청소년들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여 비취학 청소년들에게 다시 교육 체계 내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 영국의 청소년 성매매 관련 법규 및 시스템

(1) 영국의 청소년 성매매 관련 법규

영국은 오랫동안 단순 성매매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정도로 경미하게 다루어온 종전의 방법에서 탈피하여 청소년 성매매를 학대 및 성착취의 문제로 다루기 시작하였다. 또한 상업적 성착취의 근절을 위해서는 성매매에 대한 수요와 공급, 기회의 차단이 동시에 강력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토대 아래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정부의 통일된 지침마련, 강력한 법집행, 성매매 남성과 여성에 대한 다각적, 통합적, 전문적 개입, 지역사회에 바탕을 둔 다기관간 협력 등 다차원적인 접근을 강구하고 있다(홍봉선, 2007).

청소년 성매매와 관련된 법률을 살펴보면, 1978년 제정된 아동보호법이 2003년 성범죄법(Sexual Offences Act 2003)으로 일부 수정법률로 제안되었다. 이 법에 의하면 만 18세 이상인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을 성적인 목적으로 만나거나 어떤 수단을 통하여 연락을 취한 다음 만나기 위하여 이동하는 경우 및 만날 의도가 있는 경우(grooming)에 대하여 징역 10년 미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의 법에서는 피해자의 신뢰를 얻고 접촉하는 행위에 대한 세부 조항이 없었던 점을 보완하여 성적학대(sexual abuse)가 발생하기 전 아동 그루밍(child grooming)과 관련하여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법률적 체계를 마련하였다(성운숙, 2011).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는 2003년 성관련 범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신을 위하든 타인을 위하든 아동과의 만남을 자신을 위하든 남을 위하든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범죄로 정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박병식 외, 2007). 스코틀랜드에서도 성범죄법(Sexual Offences Act 2003)에 아동 그루밍(child grooming) 관련 조항을 새롭게 첨가하여, 2005년 아동보호와 성범죄 보호법(Protection of children and prevention of sexual offences Act 2005)을 개정하였다. 이 법안에 새롭게 추가된 내용은 16세 이하 아동의

7) 아동 그루밍(child grooming) 아동을 유인하는 교묘한 술책을 의미하는 것으로, 형식적으로는 합법적인 것 같지만 후에는 불법적인 행위로 이어지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가해자(groomer)는 아동과 그리고 아동의 가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동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선물을 주거나 현금을 주는 행위 등을 통해 신뢰 관계를 형성한 후, 아동에게 프로노그라피를 보여주고 아동이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을 꺼리지 않게 만들고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만드는 등의 범죄를 의미한다(http://en.wikipedia.org/wiki/Child_grooming 참조).

성적 그루밍(sexual grooming) 행위, 18세 이하의 아동에게 sexual 서비스에 돈을 지불하는 것, 아동이나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의한 성적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것, 이를 유인하고, 통제하고, 기획하는 것에 대한 규제와 함께 13세 ~ 16세 사이의 아동과의 불법적인 성관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앴고, 기존 법안에서 아동(children)의 외설적인 이미지를 유포하고, 소지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을 개정하여 16세 이하 아동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18세 이하의 아동의 이미지를 갖게 하는 것에도 적용되도록 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그루밍의 범위 또한 명시하고 있다. 첫째, 16세 이하의 아동과 만나기 위해 이동하거나 실제로 만나는 것. 또는 만남을 계획하는 것. 둘째, 아동에게 불법적인 성적 행동을 하도록 하거나 적어도 한번 사전에 아동과 만남을 가져왔던 경우 등이다⁸⁾. 이처럼 청소년 성매매 관련한 법안은 인터넷 상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에 관한 세부적인 법안을 마련하여 이를 법적인 규제로 이어지고 있다. 사실, 영국은 인터넷 내용에 관한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음(성윤숙, 2011)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아동포르노물이나 청소년 유해정보에 대한 규제나 이와 관련한 인터넷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있으며, 단순소지나 배포 등의 행위도 처벌(성윤숙 외, 2009)이 가능하다.

(2) 영국의 청소년 성매매 관련 지원 시스템

영국의 청소년 성매매 관련 지원 시스템의 대표적인 것으로, 아동착취온라인보호센터(Child Exploitation and Online Protection Center, CEOP)를 들 수 있다. 정부에서는 ‘아동착취온라인 보호센터’를 운영하여 인터넷의 성적 유인행위를 모니터링하고 법적으로 처벌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이 센터는 아동의 성적 학대를 근절시키고 영국 국내 및 국제경찰의 협조를 얻어 전과자 혹은 잠재적 범죄자를 단속하여, 아동 보호에 대한 종합적 접근을 위해 어린이자선 단체, 기업체, 정부, 기타 어린이 성폭력문제 관련 단체들의 전문성을 접목시키고자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성윤숙, 2011).

아동착취 및 온라인보호센터(CEOP), 런던경찰청 내 아동학대수사부 등의 기관이 위 그루밍 행위에 대하여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아동 청소년 성범죄 대책에 효과를 거두고 있다. CEOP 센터는 전국을 관할로 하고 있고, 취급하는 사건의 50% 이상이 그루밍 행위 관련 사건으로 이는 점차 증가 추세에 있으며 파견 경찰관으로 하여금 검거반을 편성하여 위 센터 내 정보반에서 수집한 범죄정보를 바탕으로 범죄자를 직접 검거, 단속한다(박병식 외, 2007).

8) Protection of children and prevention of Sexual offences(scotland) Act 2005
 (<http://www.legislation.gov.uk/asp/2005/9/contents>) 와
 Guidance: Protection of Children and Prevention of Sexual Offences(Scotland) Act 2005
 (<http://www.scotland.gov.uk/Publications/2006/11/17153941/2>) 참조.

(3) 프로그램 사례⁹⁾

① 범죄감소프로그램(Crime Reduction Program)

영국은 이와 같은 국가적인 시스템 구축과 함께 청소년 성매매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에서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다. 이처럼 영국이 성매매피해 청소년에 대한 접근에서 큰 변화를 시도하게 된 것은 성매매피해 청소년에 대한 선행연구, 시범사업 등 숨겨진 내용들이 밝혀지면서부터이다. 다양한 시도들을 가능하게 한 시범사업인 범죄감소프로그램(Crime Reduction Program)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11개 기관에서 범집행과 지역사회 연계 부분, 다이버전과 예방부분, 지지와 탈출부분 등 세 유형으로 나누어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실시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범 집행과 지역사회 연계 부분과 관련하여서, 프로젝트의 개입 방법은 CCTV 강화, 성매수 남자에게 경고편지를 보냄, 성매매거리의 폐쇄 계획, 미디어 캠페인, 지역사회연계와 조정전문가의 임명 등으로 이루어졌다. 둘째, 다이버전과 예방부분은 아웃리치, 성건강 서비스, 전담 약물위커, 청소년을 위한 데이터 추적시스템의 개발 및 실행 등을 통해 프로젝트의 개입이 이루어졌다. 셋째, 지지와 탈출 부분은 아웃리치 서비스, 경찰관과 판사에 대한 교육, 성매수 남성에 대한 강경조치와 재교육프로그램, 드랍인 서비스, 약물서비스에 대한 의뢰, 이웃집단과 연계 등을 통해 프로젝트 개입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지역사회 전문가가 경찰, 지역 주민, 성매매여성과 함께 일하는 곳에서 성매매 감소 효과가 높게 나타났고, 학대 남성에 대한 사법처리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위기 청소년에 대한 조기개입의 중요성과 전담 전문가 배치의 중요성, 실무자 교육 및 훈련의 중요성에 대한 권고가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드랍인 센터 서비스의 중요성, 광범위한 지지서비스의 연결의 필요성 등에 대한 프로젝트 평가를 통한 권고가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성매매피해 청소년에 대한 개입 모델을 마련하고 단계별 개입전략을 마련하는 등 향후 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② 미혼모 지원 주택 모델

영국의 미혼모 지원 주택 정책의 경우, 미국 사례와 마찬가지로 성매매피해 청소년을 위한 지원 서비스와 차이가 있지만, 두 집단 모두 거주와 교육, 직업교육 등의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양한 유형의 주택지원유형을 제안하는 영국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점을 제

9) 영국의 사례는 홍봉선(2007). “성매매 청소년을 위한 영국정부의 개입방향 및 전략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 제19권 제1호. p387-424. 연구를 참고로 요약 발췌한 것임.

공해줄 것이라고 보고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영국의 미혼모 지원 정책은 국가적 차원의 캠페인,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십대 미혼모 감소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십대들의 성과 이성교제에 대한 대처, 십대 미혼 양육모들을 성인으로 간주하고, 독립적인 주택에 살 수 있도록 주택복지의 정책이 구체화 되어 있다. 십대 미혼모를 위한 주택 모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공동지역에 접근할 수 있으면서 필요한 시설이 완비되어 있는 주택으로, 십대 미혼모와 임신모를 위한 서로 다른 5개 모델의 거주 공간에 대한 시범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직원이 거주하면서 집단이 운영되거나 부모와 아동이 편하게 들를 수 있는 공동 공간과 모든 시설이 완비되어 있는 형태가 있다. 둘째, 호텔 형으로 독립된 화장실과 부엌, 방을 제공하고 때때로 부엌과 화장실은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셋째, 공동주택 형으로 우리나라의 미혼모 생활시설과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넷째, 개별주택 형으로 미혼모들이 지속적으로 살 수 있는 거주 공간 혹은 임대주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십대 부모를 위한 교육, 부모 교육 프로그램, 간호, 그룹 활동들을 제공하는 지역 센터에 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유형이다. 마지막으로, 가정위탁 유형으로 특별가정 위탁하는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주택에 거주함에 있어서 미혼모들이 원하는 사항은 또래의 지지, 지지적인 직원들, 학업기회로 아동 발달과 자립기술 및 교육, 취업훈련 등의 기회가 주택 공간 내 혹은 인근에 배치되어 있을 것에 대한 욕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 외국 사례로부터의 시사점

① 인터넷상의 성매매에 대한 법률적 규제 강화 및 지원시스템 필요성

인터넷을 이용하여 성행위를 하려는 목적으로 아동에게 채팅 또는 이메일로 접근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법률적으로 명시하고, 성매매피해 청소년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09년 개정 법률에 따라, 성행위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성행위를 목적으로 만나기만 하여도 처벌되는 그루밍 처벌 제도를 갖추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강화 조치만으로는 청소년 성매매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우리나라 법안의 경우 신고건수가 미비하고, 만14세 이상의 경우 이에 대한 처벌에 있어 법률상의 해석에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¹⁰⁾. 따라서 좀더 실효성 있는 법률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처벌 조항 또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영국의 '아동착취와 온라인 보호센터(Child Exploitation and Online Protection Center, CEOP)'와 미국의 실종 및 착취아동신고센터(National Center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NCMEC)의 사례처럼 범집행, 아동보호, 의사소통기술 전문가로 이루어진 기관이 설치·운영되고 24시간 잠재적인 학대 피해 아동과 부모에 대한 상담 및 정보 제공, 고위험 범죄자에 대한 조사, 경찰과 함께 위기지원 등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성매매피해 청소년의 발견부터 최종 정착과 돌봄까지 지속적이고 통합적으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성윤숙, 2011).

② 성매매피해 청소년의 초기 개입의 필요성

미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국립 가출 전화, 임시거주 프로그램, 거리 현장접근 프로그램 등 다양한 초기 개입 프로그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미국의 사례에서처럼 아웃리치의 강화 및 전담 인력이 배치된 지원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으며, 청소년들이 자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드롭인(Drop-in)센터와 일시쉼터를 설치하여 청소년들로 하여금 간단한 간식제공, 콘돔, 약물치료, 건강관련 서비스, 상담, 교육, 훈련 기타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③ 성매매피해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학교의 필요성

미국의 '밤의 아이들' 사례에서처럼 성매매피해 청소년들을 위한 별도의 대안학교를 운영함으로써 청소년들이 학점을 인정받고 졸업을 통해 성매매피해청소년들이 기존 교육 체계와 차별화된 학력 인정제도를 마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성매매피해 청소년들

10)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을 구매하거나 인터넷 채팅 등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 또는 부추긴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경찰청에서 배포한 유스키퍼 프로그램으로 채팅화면을 저장한 뒤 신고하면 된다. 이 같은 조치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행위의 90%가 각종 조건만남, 애인대행사, 채팅 등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데 따라 취해졌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유스키퍼 프로그램과 그루밍 처벌조항에 대한 홍보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월 1일부터 15일까지 유스키퍼 신고 사례는 1건에 불과하다. 2007년 한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된 인터넷 불건전만남 신고 사례 1만 2000여 건, 지난달 24일부터 일주일간 경찰청에서 적발한 인터넷 성매매 건수 80여건에 비해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서울신문, 1월 18일 인터넷 기사 참조, "그루밍 첫 적발" <http://www.seoul.co.kr/news>).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만 13세 이하의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을 경우 아동보호법에 따라 이유를 막론하고 처벌을 받게 된다. 반면 만 14세부터 18세까지는 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라 성매매, 거짓말이나 협박에 의해 성관계를 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하지만 청소년이 '좋아해서', '합의하에' 상대방과의 합의로 성관계를 맺었을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법률적 해석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뉴 데일리 2010년 9월 18일 "만14세 이상은 합의하면 성범죄 아니라고?" <http://www.newdaily.co.kr/news>).

을 위한 대안학교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④ 진로지도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

미국의 '직업봉사단 프로그램' 에서 알 수 있듯이, 위기청소년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개별능력테스트와 직업탐색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개별화된 훈련 및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참가자 선발, 센터운영, 취업알선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청소년직업훈련원'이 있다. '청소년직업훈련원'의 청소년 직업봉사단 교육은 읽기와 수학 등과 같은 기본적인 교과교육, 일반학력인 증서(GED)와 같은 고등학교 수료증 취득을 위한 과정을 이수하게 되며, 지역사회대학교와의 연계를 통해 청소년들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의 취업과 관련된 시스템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학교밖 십대 청소년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위기청소년, 성매매피해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지도와 직업교육, 취업지원을 담당할 기관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⑤ 다양한 거주 시설의 필요성

영국의 미혼모에 대한 주택지원 정책 사례에서처럼 성매매피해 청소년을 위한 지원시설의 유형 또한, 호스텔 형, 그룹홈 유형, 개별주택형 등 다양한 형태의 고려해볼 지원시설 유형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으며, 이들을 위한 활동들을 제공하는 지역 센터를 통해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형태를 필요가 있다.

Ⅲ. 성매매피해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 자립지원 모델

1. 통합적 자립지원 모델의 목표와 기본방향

1) 통합적 자립지원 모델의 목표

성매매피해 청소년을 위한 통합적 자립지원 모델의 목표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주체화이고, 다른 하나는 지역사회에의 통합이다. 통합적 자립지원 모델의 궁극적 목표는 이들 청소년들이 주체성을 갖추어 지역사회에 통합되는데 있다. 즉, 성매매피해 청소년들이 다차원의 자립지원을 통해 주체성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에 통합되는데 있다.

(1) 주체화

주체란 사물의 주된 부분 또는 중심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국어사전, 2005). 주체화(subjectification)란 하나의 개인이 지배적 규범과 가치를 내면화함으로써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 승인되는 과정적 양상이다(이미란, 2008). 이러한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주체화는 개인이 사회의 지배적 규범과 가치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내적 현상이지만 사회적 힘들을 관리하고 그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된다.

성매매피해 청소년들은 대부분 환경적 악조건에 처해 있다. 그러나 사회는 이들에게 지배적 규범의 틀로 그들을 규정한다. 그들은 부모와 선생, 친구, 익명의 타인을 포함한 사회적 시선과 기대에 매우 취약하다. 이 기대와 시선을 거부하면 사회와의 불화로 자기존재에 대한 심각한 회의와 의심을 갖게 된다(김인숙, 2009). 이로 인해 이들 십대여성들은 흔히 좌절감과 죄책감, 사회적 낙인을 경험을 경험한다(민가영, 2009; 유은주, 2005).

이러한 상황에서 성매매피해 청소년들은 자신을 둘러싼 사회적 시선에 직면하여 사회의 지배적 규범과 가치를 재해석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자립의 가능성도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자립을 위한 모든 노력들은 바로 이 주체화를 목표로 집중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성매매피해 청소년들에게 지배적 규범을 주입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주체화는 지배적 사회 논리에 종속되지 않으면서 자신과 사회세계를 재해석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로 바라보아야 하고, 이러한 전제하에 자립지원이 구성되고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 지역사회통합

지역사회통합이란 해당 당사자들이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최윤정, 2010). 어떤 대상을 지역사회 통합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그 대상이 지역사회의 다른 사람들처럼 지역사회활동에 얼마나 참여하는지, 지역사회의 자원을 동등하게 이용하고 있는지, 지역사회 내의 사람들과 얼마나 네트워크를 맺고 관계를 맺고 있는지 등 가상이 아닌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지역사회라는 공간 안에 얼마나 관여되고 개입되는지를 고려한다는 것이다.

성매매피해 청소년들에게 있어 지역사회에 통합된다는 것은 어렵고도 지난한 과정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들은 지역사회에 자연스럽게 통합되는 일반적 조건들을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우선,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는 사실이 여성 스스로 자신을 억압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주는 억압을 견디어내기 어렵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통합되어 간다는 것은 힘든 과정이 될 수 있다(김인숙, 2009).

사실 자립이라는 말과 지역사회통합이라는 말은 상당 부분 공통분모를 갖는다. 자립이라는 의미 자체가 이미 사회 혹은 지역사회를 배제하고 성립할 수 없기도 하고, 자립의 궁극적 목적이 지역사회에 통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지역사회통합은 성매매피해 청소년들이 자립준비 과정을 통해 달성해야 할 목표이자 목적이다.

성매매피해 청소년들에게 있어 지역사회통합은 “사회로부터 배우고 사회 속에서 배우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학원을 보낸 경우 학원 관련 주변 사람들과 잘 지내면 되는 것”이고, “시설 안에만 있으면 자격증을 따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잘하든 못하든 지역사회로 나가 부딪치게 하는 것”이고, “직장 잘 다니고 직장 사람들 잘 사귀는 것”이며, “봐주면서 모의상황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부딪치게 하는 것”이다(실무자 인터뷰 중에서). 이처럼 지역사회통합은 성매매피해 청소년들을 모의적 상황에 두지 않고 진짜의 현실과 접촉하게 하는 것이다. 이 접촉을 통해 주체화를 이루어나가고, 주체화의 역량은 다시 지역사회로 통합되게 하는 힘을 갖게 한다.

2) 통합적 자립지원 모델의 기본방향

통합적 자립지원 모델의 기본 방향은 크게 세 가지이다. 시설보호 중심의 서비스 체계에서 시설보호와 탈시설화를 병행하는 서비스 체계로 전환하고, 성매매피해 청소년들의 서비스 선택권이 가능한 확대되도록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 그리고 성매매피해 청소년의 욕구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상의 기본방향은 현재의 성매매피해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의 실태와 문제로부터 도출되었다.

(1) 시설보호 중심의 서비스 체계에서 ‘시설보호와 탈시설화를 병행’ 하는 서비스 체계로 전환한다

현재 성매매피해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은 시설보호 중심의 패러다임이다. 그러나 시설보호 중심의 패러다임은 앞서 언급했듯이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시설보호를 선택하지 않는 청소년들을 커버할 수 없고, 청소년들의 욕구의 다양성이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가장 크다. 또한 이러한 시설보호 중심의 서비스 체계는 성매매피해 청소년에게 필요한 서비스의 전문화를 촉진시키지 못하기도 한다. 따라서 현재의 시설보호 중심의 서비스 체계를 시설보호와 탈시설화를 병행하는 서비스 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탈시설화는 시설보호를 폐기하지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탈시설화는 기존의 시설보호를 차별화하여 특화하고, 시설보호로 커버되지 못하던 초기만남과 노동시장 진입 부분을 보완하지는 의미이다.

(2) 성매매피해 청소년의 서비스 ‘선택권’ 이 확대되도록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

현재 성매매피해 청소년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 그들의 욕구에 기반하여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의 여지는 매우 협소하다. 지원시설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위기청소년교육센터의 교육, 사후지도를 받을 수 있는 정도이다. 이렇게 선택의 폭이 협소한 서비스 체계에서 청소년들은 발 굴되기도 어렵고, 초기에 성매매로의 유입을 차단하지도 못한다. 따라서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초기만남에서 잠자고 돈을 벌 수 있는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성매매피해 청소년이 학력취득을 원할 수도, 아니면 일자리를 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욕구에 따라 이를 위한 지원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초기만남 지원체계를 재구조화하여 모델에 반영한 것, 그리고 학력 특화 및 일자리 특화를 모델에 반영한 것은 이러한 청소년들의 선택권 확대라는 기본방향에 입각한 것이다.

(3) 성매매피해 청소년의 '욕구의 다양성' 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한다

성매매피해 청소년들의 욕구는 단일하거나 획일적이지 않다. 청소년들이 처한 상황이 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이다. 잠시 머물다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청소년도 있고, 잠시 머물러 일자리가 필요한 청소년도 있고, 집에 돌아갈 수 없어 학력과 취업 모두를 집 밖에서 획득해야 하는 청소년도 있다. 어떤 경우이건 성매매피해 청소년들은 그들의 '지금 현재(here and now)' 상황에서 도움을 받아야 성매매로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다. 따라서 통합적 자립지원 모델을 제시하는 데 있어 이들 청소년들의 욕구 다양성을 고려하여 이를 서비스 체계에 반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 서비스 지원체계는 시설보호의 욕구가 있는 청소년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지원 인프라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고, 이들의 생애주기 관점에서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통합적 자립지원 모델을 제안하는데 있어 초기만남 서비스 체계를 위해 사례발굴을 강화하고, 거주 형태를 다원화하며, 인턴십센터의 구축을 통해 노동욕구의 다양성을 반영하도록 한 것은 바로 이러한 '다양성'의 방향을 모델에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통합적 자립지원모델의 기본전략

1) 청소년지원시설의 기능을 차별화하고 특화한다.

- (1) 현재 청소년지원시설들이 가지고 있는 운영적 특성 및 장점을 특화하여 청소년들의 심리 및 정서, 사회적 욕구에 따른 선택권의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운영 특화에 따른 재배치는 '초기만남 - 학력 및 취업지원 - 사회통합' 이라는 일련의 연속 선상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
- (2) 각 청소년 지원시설은 성매매피해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에 따라 차별화, 특화되어야 한다. 청소년의 심리 및 정서 지원, 정신과적 문제 지원에 보다 초점을 둔 '치유중심 시설', 정신지체 및 정신질환 혹은 그 외 특수 욕구를 가진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욕구 중심 시설', 청소년의 성인기로의 전환에서 거주와 취업지원을 위주로 하는 '성인전환기 시설', 그리고 기존의 지원시설처럼 보호를 위주로 하면서 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호중심 시설'로 차별화되고 특화되어야 한다.

(3) 각 청소년지원시설은 기존에 시설이 내포하고 있는 운영적 장점을 충분히 파악하여 이 장점이 잘 발휘될 수 있는 방향으로 특화를 진행해야 한다. 특화를 통해 서비스 지원에 독특성을 획득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서비스 선택의 범위를 넓힐 수 있고, 그들이 가진 다양한 욕구에 충분히 반응할 수 있다. 이렇게 차별화되고 특화된 청소년지원시설은 초기만남 체계 및 노동연계 체계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연속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이루어야 한다.

2) 초기만남 시스템을 강화, 재구조화 한다.

(1) 현재 성매매피해 청소년에 대한 초기만남은 아웃리치 정도를 각 개별 청소년지원시설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도이다. 그리고 사례발굴은 주로 외부기관연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한편, 성매매피해 청소년을 만나는 적극적인 방안으로 고려되고 있는 사이버상담의 경우, 이제 막 시작단계로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재의 수동적이고 개별 기관 단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초기만남 체계를 강화하여 한편으로는 성매매피해 청소년이 시설보호의 공적체계로 적극적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편으로는 시설 입소의 욕구가 없는 청소년들의 경우 초기만남체계에서 필요한 자원을 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성격의 초기만남 체계의 성격은 시설보호와 탈시설화를 병행하는 서비스 체계 전환에 밑받침이 될 것이다. 또한 청소년의 선택권이 행사될 수 있는 체계구축의 토대를 이룰 것이다.

(2) 초기만남 시스템의 구축과 안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사이버 상담을 확대한다. 이미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사이버상담이 부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위해 현재 개별기관에서 시행되는 사이버상담 역할을 현, 위기청소년교육센터로 이전하고, 기능 및 역할을 확대하도록 한다.

사이버상담은 모든 위기청소년교육센터가 담당할 필요는 없다. 위기청소년교육센터를 중앙단위와 지역단위로 나누어 중앙단위에서 사이버 상담을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러한 위기청소년교육센터의 역할 확대는 초기 만남 및 적극적인 사례발굴을 보다 다원화하고 강화하는 의미가 있으며, 청소년들을 보다 가깝게 만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렇게 발굴된 사례는 청소년지원시설로 연계하는 것을 우선 원칙으로 하여 청소년의 공적 지원 체계 편입을 활성화 시키고, 추후 구축될 성매매피해특화 대안학교, 인턴십 센터로 직접 연계도 시도하여 하여 시설 밖의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효과적으로 이행한다. 이렇게 될 때 성

매매피해 청소년의 전반적인 지원체계의 사례연계 흐름은 보다 원활해 질 수 있다.

둘째, 초기만남에서 청소년들이 성매매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일시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곳과 돈을 벌 수 있는 곳을 찾는 것이다. 요컨대 초기만남에서 일시적 거주와 시급 아르바이트 일자리의 제공이 필요하다. 잘 곳이 없어서 혹은 일할 자리가 마땅치 않아 성매매로 유입되는 것을 막아주는 장치로 일시적 거주와 시급 아르바이트를 지원하는 것이다. 시설에 들어가야 할것인지를 선택하는 중에 일시적 거주는 성매매유입을 막아주는 좋은 울타리가 될 것이며, 아르바이트를 통해 시간당 돈을 버는 것은 바로바로 돈이 필요한 가출상태의 청소년들에게 무엇보다 숨통을 트이게 할 요긴한 수단이 될 것이다.

따라서 초기만남 체계는 사이버 상담, 일시적 거주, 시급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결합된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 위기청소년교육센터가 일시보호쉼터나 드롭인센터를 운영하거나 외부 일시보호쉼터(신설)나 드롭인 센터(신설)와 공고한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한 위기청소년교육센터는 인턴십센터(신설)와의 연계구축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시급 혹은 정규의 일자리를 매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럴때 시설 밖의 청소년들의 성매매로의 유입을 예방하거나 차단할 수 있다. 또한 시설 밖에 있으면서도 공적지원 체계를 만날 수 있어, 그들의 선택권이 옹호될 수 있다. 또한 현 시스템에는 미미한 일시보호쉼터나 드롭인센터 처럼 잠시 머물곳을 잘 연결해주는 곳이 생기고, 금전이 빨리 돌 수 있는 시간당 일자리를 매개해주는 곳이 생긴다는 것은 청소년들의 욕구에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체계로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 위기청소년교육센터의 역할이 재정리되어 초기만남 체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도록 기능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취업지원을 위한 인턴십센터를 구축하고 연계체계를 형성한다.

- (1) 성매매피해 청소년을 위한 지원체계 전반을 살펴보았을 때 현재, 시설 중심의 서비스 체계는 청소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취업지원이 개별 시설의 역량에만 주로 맡겨져 있는 상황이다. 성매매를 하는 주요 이유가 “돈이 필요해서” 라는 것을 감안할 때, 청소년들이 성매매에 재유입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알수 있다. 이러한 성매매피해 청소년들의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취업지원을 전문적으로 시행하여 효과성을 나타낼 수 있는 지원 인프라가 필요하다. 이 인프라가 기존 청소년지원시설과 위기청소년교육센터의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연동하여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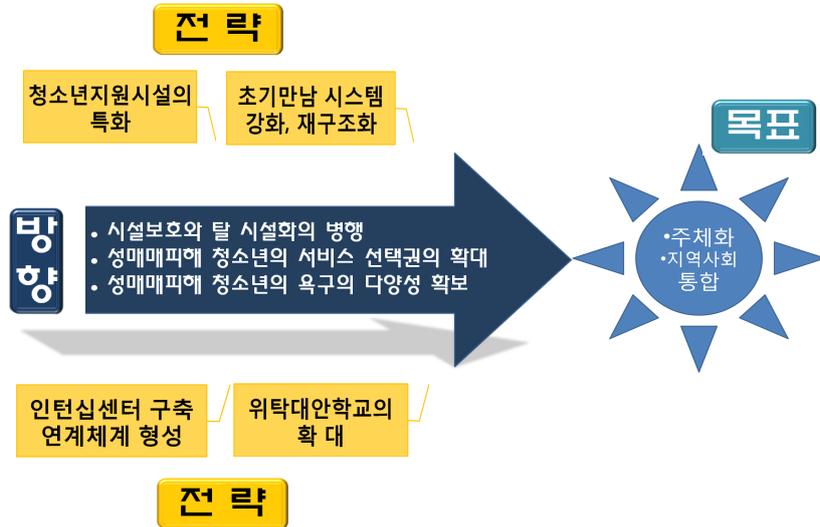
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취업지원 인프라로 고려할 수 있는 핵심은 인턴십센터이다. 인턴십센터는 청소년지원시설, 위기청소년지원센터(가칭)와 연계를 이루면서 사례에 공동개입해 나가, 그동안 청소년지원시설과 위기청소년교육센터에서 시행하기 어려웠던 직업체험과 단·장기 인턴십, 훈련매장 취업 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욕구에 적확히 부응하면서도 수준 높고 적성에 맞는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게 도울 것이다.

- (2) 인턴십 센터는 시급 아르바이트에서부터 정규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취업처와 루트를 개발하는 역할을 하도록 한다. 또한 성매매피해 청소년들에 대한 전문적인 직업 정보제공, 직업교육 및 훈련, 직업체험, 취업지원, 취업사후관리의 역할을 한다.

4) 학력지원을 위한 위탁대안학교를 확대한다.

- (1) 한국사회에서 학력의 획득은 성매매피해 청소년들의 자립에 매우 중요하다. 문제는 이들 청소년들이 일반학교의 적응에 성공하는 확률이 매우 적고, 검정고시 합격도 점차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들 청소년이 우리사회에서 사회구성원으로 주체적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특수성에 부응하는 커리큘럼을 가진 교육이 시행되어야 한다. 이 커리큘럼은 성매매로 인해 청소년이 겪게 되는 적응의 어려움이나 심리·정서적 어려움이 충분히 감안되어, 성매매피해 청소년의 자질과 적성을 충분히 키워 줄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커리큘럼으로 구성된 교육이 학력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한 가지 대안은 위탁대안학교의 설립 및 확대이다. 위탁대안학교는 지역의 상황에 따라 중등과정과 고등과정을 분리하여 설립될 수도, 통합하여 설립될 수도 있다.
- (2) 또한, 위탁대안학교 외에도 현재 서울시의 ‘자립학교’ 나 ‘노원학교’ 처럼 성매매피해 청소년들에 학력지원을 위해 연계할 수 있는 대안학교가 설치되어야 한다.
- (3) 이렇게 학력지원이 성매매피해 청소년의 특성과 욕구에 특화될 때, 청소년들의 지원에 효과성을 갖게 되고, 청소년들은 여러 학교 중에 자신의 적성과 이해, 욕구에 적합한 학교를 선택하여 진학할 수 있어 청소년들의 선택권이 확보될 것이다.

〈그림 22〉 통합적 자립지원모델의 목표, 방향, 전략도



3. 통합적 자립지원 모델의 유형

성매매피해 청소년의 주체화와 지역사회통합을 현실적으로 이루기 위해 ‘통합적 자립지원 모델’을 수립하였다. 이 모델은 현장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왔던 지원체계의 방향성을 토대로, ‘시설보호 중심의 서비스 체계에서 시설보호와 탈시설화를 병행하는 서비스 체계로의 전환’, ‘성매매피해 청소년들의 서비스 선택권의 확대화’, ‘성매매피해 청소년의 욕구의 다양성의 반영’이라는 세가지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한 모델이다.

이 방향으로의 진전을 위해 통합적 자립지원 모델은 ‘청소년지원시설의 기능을 차별화하고 특화’하는 것, ‘초기만남 시스템의 강화 및 재구조화’, ‘취업지원을 위한 인턴십센터 구축과 연계체계 형성’, ‘학력지원을 위한 위탁대안학교의 확대’를 구체적인 전략으로 정하였다.

이 전략을 기반으로 통합적 자립지원모델은 총 네가지의 모델로 구성된다. ‘청소년지원시설 특화 모델’, ‘학력지원 특화 모델’, ‘취업지원 특화 모델’, ‘비시설보호 특화 모델’ 이 네가지 모델이다. 이 모델들은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황을 최대한 반영하여 구성된 모델이며, 인프라구축에 있어 효율성을 감안한 모델이다. 네가지 모델은 청소년지원시설의 특성과 지역의 특성에 따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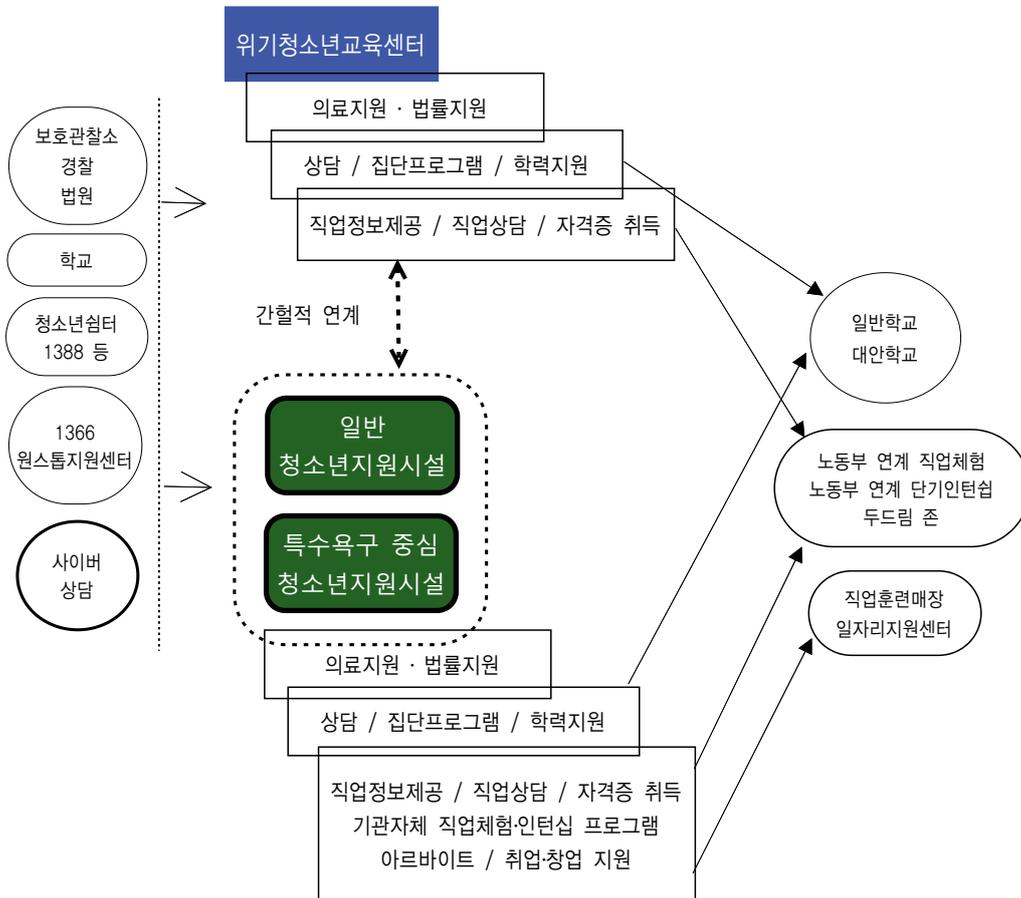
1) A 유형 : “청소년지원시설 특화 모델”

(1) 모델 A의 기본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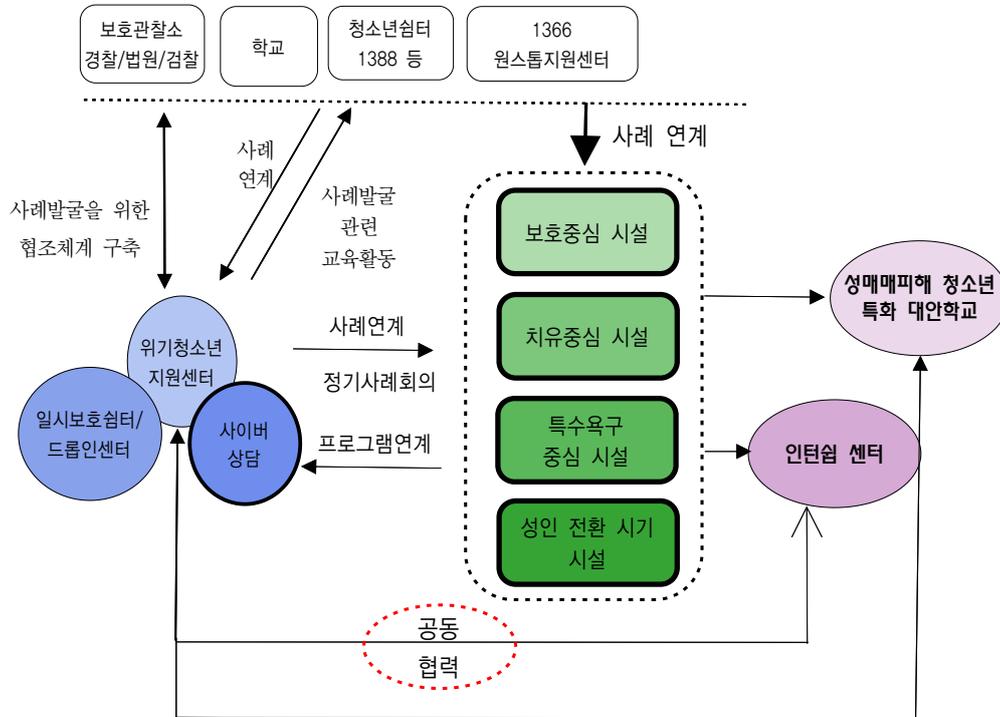
- ① 성매매피해 청소년의 주된 인프라는 청소년지원시설과 위기청소년교육센터이다. 이 두 기관의 프로그램 및 서비스 내용 중 학력지원(검정고시 지원, 대안학교 연계, 일반학교 복귀지원)과 취업지원의 일부(직업정보제공, 직업 상담, 자격증 취득)는 거의 유사하여 중복적인 측면이 있다(〈그림 A-1〉 참조). 따라서 두 기관의 서비스가 조정될 필요가 있다. 청소년지원시설은 청소년의 거주안정과 생활안정을 기반으로, 학력 및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는 역할에 주안점을 두는 쪽으로, 위기청소년교육센터는 초기만남과 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채 지원을 받기를 원하는 청소년들의 지원에 주요 역할을 하는 쪽으로 역할 재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
- ② 특히 이 두 기관들은 청소년들의 모든 욕구에 개입하여, 복합적으로 서비스를 시행하다 보니 전문적이고 특수한 서비스를 시행하기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각 기관의 특화된 지원을 제고하기 위해, 학력지원과 취업지원 측면에 새로운 인프라, 즉 성매매피해 청소년 특화 대안학교와 인턴십센터가 구축되어 관련부분의 전문적인 지원을 수행한다.
- ③ 성매매피해 청소년 특화 대안학교와 인턴십센터 인프라 구축과 동시에 청소년지원시설과 위기청소년교육센터는 기능을 전환한다. 첫째, 청소년지원시설은 각 시설별 지원내용과 특성을 특화하여 상담, 집단프로그램등이 그 시설의 특성에 알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그동안 청소년시설들 간 비슷비슷한 프로그램을 시행함으로써, 시설별 차별성을 갖기 어려웠던 것에 비할 때, 청소년들의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둘째, 사례발굴은 위기청소년지원센터(가칭)와 청소년지원시설 모두에서 이루어지되, 위기청소년지원센터(가칭)는 사례발굴을 위한 초기만남에서 주요 역할을 맡는다. 청소년이 시설거주를 원할 경우 발굴된 사례는 청소년지원시설로 연계하는 것을 우선 원칙으로 하며, 청소년이 시설거주를 원치 않을 경우에는 성매매피해 청소년 특화 대안학교와 인턴십 센터로의 연계를 실시한다. 이로써, 위기청소년지원센터(가칭)는 청소년지원시설과 유사한 프로그램 및 지원내용에서 탈피하여 사이버상담이나 거리청소년의 구조작업에 지원을 더욱 투입하고, 시설 밖의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도록 한다.
- ④ 이에 청소년들이 서비스를 선택할 때, 선택의 범위를 넓히고,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청소년지원시설과 위기청소년교육센터 간, 청소년지원시설과 청소년지원시설 간 프로그램 및 지원 영역을 특화하고 기능전환을 이루어내는 모델이 요구된다. 아래에 제

시하는 “청소년지원시설 특화 모델” (모델A)은 현재 존재하고 있는 단일 청소년지원시설과 위기청소년교육센터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기관들의 장점을 발전시킨 모델이다. 위기청소년지원센터(가칭)와 청소년지원시설의 프로그램 및 서비스 내용을 조정하고, 기관 간 운영을 차별화·특화하여 청소년들의 다양한 특성과 욕구에 부응하도록 구성되었다. 또한 성매매피해 청소년 특화 대안학교 설립 및 구축을 통해 학력지원에 관한 청소년의 욕구에 더욱 부응하도록 구성되었고, 인턴십 센터의 구축을 통해 그 간 청소년지원시설과 위기청소년교육센터에서 전문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웠던 취업지원 측면을 보강할 수 있다(〈그림A-2〉 참조).

〈그림 A-1〉 현 청소년지원시설 및 위기청소년교육센터 중심의 서비스체계



〈그림 A-2〉 통합적 자립지원 모델 A ; 청소년지원시설 특화 모델



(2) 모델 A의 실행을 위한 조건들

모델 A 유형의 실행을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다.

① 일반 청소년지원시설의 기능전환 및 특화

일반 청소년 지원시설의 특화는 여러 가지 성격으로 발전할 수 있으나 주요하게는 ‘보호중심 청소년지원시설’, ‘치유중심 청소년지원시설’, ‘특수육구 지원 중심 청소년지원시설’, ‘성인전환기지원 중심 청소년지원시설’로 기능전환 및 특화를 꾀할 수 있다.

② 위기청소년교육센터의 기능 강화 및 재구조화

위기청소년교육센터는 청소년 캠프 운영 외에 사이버 상담이나 사례발굴을 위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적극적인 사례 발굴 및 효과적인 초기만남을 실행하기 위해 기능을 전환해야 한

다. 이 의미를 가시화하기 위해 ‘위기청소년지원센터(가칭)’로 이름을 변경한다. 또한 일시보호 센터나 드롭인센터 등 임시의 거주공간을 제공하고, 인턴십센터와의 공동협력을 통해 당장의 생활 궁핍과 곤란에서 청소년을 벗어나게 해, 성매매로의 유입을 방지하고 시설입소 여부를 떠나 공적지원체계로 편입시키는 역할을 한다.

③ 성매매피해 청소년 특화 대안학교, 인턴십 센터의 구축

성매매피해 청소년 특화 대안학교(위탁대안학교)와 인턴십센터는 새롭게 구축되어야 할 인프라로, 두 기관 모두 성매매피해 청소년의 독특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커리큘럼과 접근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이때 성매매피해 청소년 특화 대안학교는 정규학교의 학력이 인정되는 위탁 대안학교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인턴십센터는 시급 아르바이트에서부터 정규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취업처와 루트를 개발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직업 정보제공, 직업교육 및 훈련, 직업체험, 일자리 정보제공 및 취업지원, 취업사후관리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3) 모델A 구성요소의 역할과 기능

① 청소년 지원시설의 차별화, 특화

가. ‘보호 중심 청소년지원시설’은 기존의 일반청소년지원시설의 성격과 유사하다. 그러나 성매매피해 청소년 특화 대안학교, 인턴십 센터로 연계를 실시함으로써 이전보다 상담, 집단프로그램, 의료지원 및 법률지원 등을 청소년 별 개별화하여 개입할 수 있다. 그리고 성매매피해 청소년 특화 대안학교와 인턴십센터로의 연계에 있어 연결성과 효과성을 보다 증진시킬 수 있다.

나. ‘치유중심 청소년지원시설’은 성매매피해 청소년 중 심리 및 정서지원, 정신과적 어려움에 주요하게 개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청소년에게 특화된 시설이다. 치유를 중심으로 특화하여 청소년 심리상담 및 정서지원의 역할에 더욱 충실할 수 있으며, 심리안정과 정서적 안정을 희망하는 청소년들의 욕구에 높게 부응할 수 있다. 이 시설 또한 심리 및 정서안정 이후에 청소년이 학력지원 혹은 취업지원을 희망할 때, 성매매피해 청소년 특화 대안학교, 인턴십센터로 연계를 실시할 수 있다.

다. ‘특수육구지원 중심 청소년지원시설’은 정신지체청소년을 위해 특화된 시설이다. 이 시설도 청소년이 원할 경우, 성매매피해 청소년 특화 대안학교, 인턴쉽 센터로 연계를 실시할 수 있다.

라. ‘성인전환기지원 중심 청소년지원시설’은 19세 이상의 청소년을 위해 특화된 쉼터로써 청소년의 연령이 아니라는 이유로 서비스가 지원되지 못하는 성인 전환기 청소년에 유용한 시설이다.

② 사례발굴 및 초기 만남

가. 기존의 서비스체계에서의 사례발굴은 적극적이고 조직적으로 사례를 발굴하는 특성을 갖지 않았다. 청소년지원시설 마다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기관 아웃리치를 제외하고는, 자체적으로 사례를 발굴하는 시스템이기보다 위기청소년교육센터나 청소년보호시설 모두 보호관찰소나 경찰, 일반학교, 1388, 1366 등으로부터 사례를 의뢰받아 발굴하는 양상을 띠었다.

나. 사례발굴은 위기청소년지원센터(가칭)와 청소년지원시설 모두에서 이루어지되, 위기청소년교육센터가 위기청소년지원센터(가칭)로 기능전환 하여, 성매매피해청소년 관련 기관(1388, 1366, 보호관찰소, 경찰 및 검찰, 학교 등)들에 사례 발굴 관련 교육과 홍보활동을 정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여, 사례발굴에 효과성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물론, 외부기관에서 청소년지원시설로 바로 사례를 의뢰해도 좋으나, 위기청소년지원센터(가칭)가 성매매피해 청소년의 사례발굴을 위한 환경조성 사업에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띠는 것이다. 위기청소년지원센터(가칭)는 보호관찰소나 학교, 1388·1366, 경찰 등의 외부기관들과 사례발굴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청소년들에 대한 조기개입과 구조, 사례발굴에 대한 중요성을 각인시키고, 상시적이고 활발한 사례연계를 이끌어낸다. 또한 중앙단위와 지역단위로 위기청소년지원센터(가칭)가 나뉘어져, 중앙단위에서 사이버 상담을 실시하고, 각 지역단위의 위기청소년지원센터(가칭)와 긴밀히 공조하여, 청소년들의 구조를 효율적으로 실시한다. 현재 여성가족부 지원으로 사이버 상담이 시작하는 단계에 있으므로 관련 인력과 예산이 증가되어 사이버상담의 모니터, 슈퍼비전 체계를 갖춘 하나의 단위로써 기능하도록 지원되어야 한다.

- 다. 위기청소년지원센터(가칭)에서 일시보호센터 및 드롭인센터를 운영하거나 연계체계를 구축하여(권역별이나 성매매피해 청소년 집결지역에 설립), 긴급한 청소년의 구조를 지원하고 청소년지원시설의 입소에 욕구가 없는 청소년도 공적지원체제로 무리없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한다.
- 라. 위기청소년지원센터(가칭)는 인턴쉽 센터와 연계하여 시급의 아르바이트 자리를 마련해 준다. 일자리 연계 및 관리를 통해 돈이 필요해서 성매매로 유입되는 청소년의 유입경로를 차단, 예방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일자리를 매개로 사례를 효율적으로 발굴한다.
- 마. 이렇게 개발된 사례는 사례의 특성에 따라, 특화된 청소년지원시설로 연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연계 이후 정기사례회의를 운영하여, 사례가 지원체계 밖으로 밀려나가지 않도록 한다. 정기사례회의의 개최는 공동으로 개최하고, 사례 담당 기관도 사례별 지정하도록 하여 사례를 어느 기관에서 담당할 것인가에 관한 혼란을 불식시키도록 한다. 한편 청소년지원시설은 입소 청소년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위기청소년지원센터(가칭)에서 운영하는 캠프에 참여를 의뢰할 수 있어, 상호연계가 활발하도록 하도록 지원한다.

③ 학력 및 취업 지원

- 가. 특화된 청소년지원시설에서 성매매피해 청소년이 일정기간 적응기간을 거치고 나면, 성매매피해 청소년의 욕구에 기반하여 성매매피해 청소년 특화 대안학교나 인턴쉽센터 등으로 연계, 사후관리를 실시 할 수 있다.
- 나. 위기청소년지원센터(가칭)에서는 청소년지원시설로 편입되기를 희망하지 않는 청소년의 경우, 직접적으로 성매매피해 청소년 특화 대안학교나 인턴쉽센터로의 연계를 실시할 수 있다.

(4) 모델A유형의 장점

- ① 청소년지원시설을 특화하여 운영할 경우, 청소년에게 가장 시급한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어 개입을 함으로써, 개입의 효과성이 높아진다. 특히 심리·정서, 정신과적 문제를 가진 청소년들과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청소년, 성인전환시기에 놓인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이 보다 확대되고 가시화됨으로써 이들 청소년의 욕구에 크게 부응할 수 있다.

- ② 청소년지원시설의 경우 여러 영역의 서비스를 다루다보니 전문적인 수준의 서비스 시행에 어려움을 있어왔으나, 시설 특화가 이루어질 경우, 성매매피해청소년의 특성에 적합한 프로그램 및 접근양식을 기관 차원에서 더욱 개발할 수 있으며, 서비스의 선별과 집중이 이루어짐으로써 청소년들의 욕구에 높은 수준으로 부응 할 수 있다.
- ③ 특화된 청소년지원시설에서 성매매피해 청소년 특화 대안학교 또는 인턴십센터로의 연계는 기존 연계와 달리, 성매매피해 청소년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립된 인프라로의 연계이므로, 연계의 연속성과 지속성이 획득되는 장점이 있다.
- ④ 위기청소년지원센터(가칭)의 경우 캠프 운영 이후에 갈 곳이 없는 청소년들에게 일시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고, 일자리를 매개해 줌으로써, 성매매로의 유입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다. 아울러 효율적으로 사례발굴을 진행할 수 있으며, 사례관리에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 ⑤ 위기청소년지원센터(가칭)에서 임시거주와 일자리를 매개함으로써 시설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는 청소년들에게도 공적지원을 줄 수 있다. 성매매피해 청소년 지원을 전체적으로 보면, 시설보호와 탈시설화가 동시에 병행됨으로써 공적지원체계가 커버할 수 있는 성매매피해 청소년의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2) B 유형 : “학력지원 특화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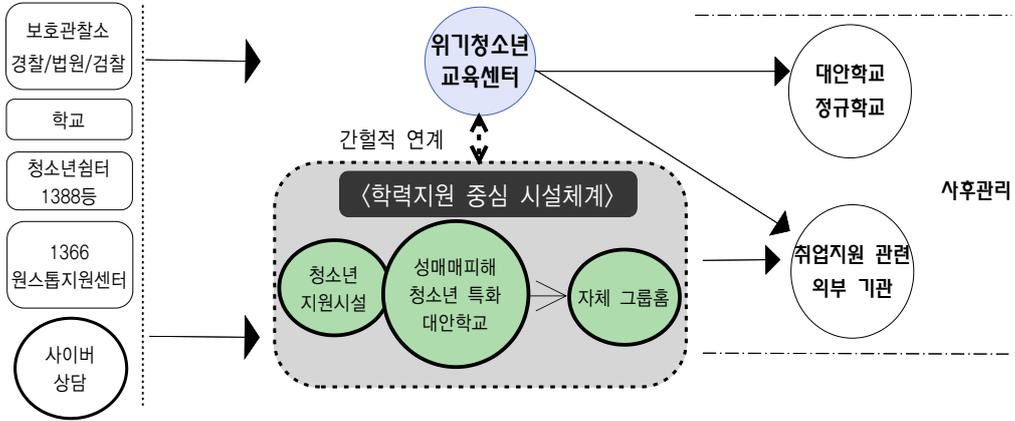
(1) 모델 B 유형의 기본 구조

- ① 현재 성매매피해 청소년을 지원하는 주요 인프라에는 청소년지원시설, 위기청소년교육센터가 있다. 대부분의 청소년지원시설은 청소년의 자립에 필수적인 학력지원을 위해 검정고시 준비를 시키거나 주로 대안학교나 일반학교에 복귀 지원하는 것을 돕고 있다. 위기청소년교육센터도 캠프 운영 이후에도 청소년들에게 검정고시 학원 연계, 정규 및 대안학교 연계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연계를 실시하는 대안학교나 정규학교는 성매매피해 청소년에 특수한 커리큘럼을 개발하거나, 접근양식을 가진 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이 다시 학교로부터 멀어지기 쉽고, 연계가 단절되거나 연계 수준도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 ② 한편, 현재 청소년지원시설 중에는 한 법인이 청소년지원시설과 성매매피해 청소년 특화 대안학교, 그룹홈등을 공동운영하는 형태가 존재한다. 이 시설체계는 성매매피해 청소년 특화 대안학교를 법인 자체적으로 운영해, 지원체계 안에 성매매피해 청소년 특화 대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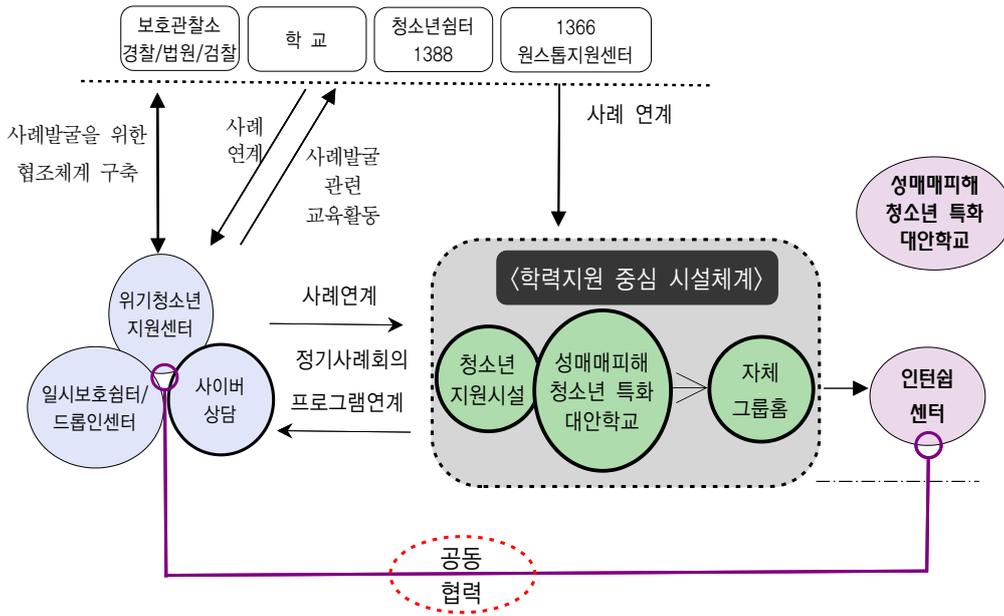
학교가 들어와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자 큰 강점이다. 이 체계에서는 성매매피해 청소년이 장기적으로 거주하면서 시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성매매피해 청소년 특화 대안 학교에 참여함으로써 그들 특성에 적합한 연속적인 주거-학력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그룹홈이 함께 제공됨으로써,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전환시기에 주거 및 학력 지원의 서비스가 단절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체계는 청소년이 취업지원을 원하는 경우 성매매피해 청소년에 특화되지 않은 외부 취업지원 관련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서비스가 진행되기 때문에 성매매피해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취업지원 연계가 어려울 수 있다. 이는 성매매피해 청소년에 대한 주요 인프라인 위기청소년교육센터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그림B-1〉 참조)

- ③ 모델 B는 상기에서 언급한 학력지원 중심 시설체계의 장점을 이어받되, 기존체계에 내포되어 있는 취업지원 분야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초기만남과 취업연계를 강화한 것으로서, “학력지원 특화 모델”로 명명하였다(〈그림B-2〉 참조).
- ④ 학력지원중심시설체계는 모델 A와 마찬가지로 학력지원 중심 시설체계가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일시보호쉼터와 사이버상담 기능을 갖춘 위기청소년지원센터(가칭)가 필요하고, 인턴십센터를 구축하여 성매매피해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취업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⑤ 위기청소년지원센터(가칭)는 사례발굴을 위한 초기만남에 주요 역할을 맡아, 발굴된 사례가 학력지원을 받는 것이 필요할 경우 학력지원 중심 시설체계로 연계하는 것을 우선 원칙으로 한다. 만일 청소년이 시설로 입소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외부 성매매피해 청소년 특화 대안학교로 연계할 수 있다.
- ⑥ 학력지원 중심 시설체계는 청소년 입소 이후 학력지원의 서비스가 안정기로 들어서면, 인턴십센터로의 연계를 통해 전문적인 취업지원을 도모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턴십센터는 취업지원의 측면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학력지원 중심 시설체계의 학력지원의 고유한 특성은 배가 될 수 있다. 이로써 안정된 거주 상태에서 학력지원을 집중적으로 받기를 원하는 청소년들에게 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고, 기존의 학력지원 중심 시설체계에서 보완이 필요했던 전문적인 직업체험 및 인턴십 등의 서비스가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그들의 욕구에 집중화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학력지원과 취업지원이 분리되지 않으면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그림 B-1〉 현 학력지원 중심의 서비스체계



〈그림 B-2〉 통합적 자립지원 모델 B ; 학력지원 특화 모델



(2) 모델 B의 실행을 위한 조건들

모델 B 유형의 실행을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다.

① 현, 학력지원 중심 시설체계의 지속화

현, 학력지원 중심 시설체계를 새로운 모델에서도 지속시켜 현장에서 대안으로 찾아온 방법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위탁 대안학교로써의 성매매피해 청소년 특화 대안학교

학력지원 중심 시설체계 내 성매매피해 청소년 특화 대안학교는 위탁대안학교여야 한다. 그래서 성매매피해 청소년들에게 정규 학력 인정이라는 실제 이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위기청소년교육센터의 기능 강화 및 재구조화

모델A 유형과 마찬가지로 위기청소년교육센터의 역할을 재구조화하여 위기청소년지원센터(가칭)로 기능을 전환해야 한다. 첫째, 사례발굴은 위기청소년지원센터(가칭)와 청소년지원시설 모두에서 이루어지되, 위기청소년지원센터(가칭)는 청소년 캠프에만 중점을 두지 않고 적극적인 사례발굴 기관으로 역할 해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조건은 사이버상담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것이다. 위기청소년지원센터(가칭)를 중앙단위와 지역단위로 나누어 중앙단위에서 사이버상담을 운영하고 지역단위의 위기청소년지원센터(가칭)로 긴밀히 연계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사이버상담을 위한 예산 증액등이 필요하다. 또한 사이버상담을 하는 인력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 수퍼비전 체계도 마련되어야한다. 둘째 사례발굴 관련 외부 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적극적인 사례발굴을 시도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일시보호쉼터나 드롭인 센터등 임시의 거주공간을 마련하고, 인턴십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시급의 일자리가 주어져야 한다. 임시거주공간과 시급의 일자리가 공조하는 사례발굴은 청소년들이 지원체계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는 좋은 매개가 될 것이다.

④ 학력지원 중심 시설체계의 의뢰 우선원칙

위기청소년지원센터(가칭)에서 발굴된 사례 중 안정된 거주와 함께 학력지원에 관심이 있는 사례는 학력지원 중심 시설체계의 우선 의뢰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성매매피해 청소년 특화 대안학교, 인턴십센터의 구축

학력지원 중심 시설체계 내 성매매피해 청소년 특화 대안학교가 있을 지라도, 시설에 편입되지 않은 청소년들을 위해 외부 성매매피해 청소년 특화 대안학교가 생성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모델 A 유형과 마찬가지로 인턴십 센터를 구축해야 한다.

(3) 모델 B 구성요소의 역할과 기능

- ① 학력지원 중심 시설체계에서는 청소년의 중장기주거와 성인전환시기에의 주거 지원, 그리고 무엇보다 성매매피해 청소년 특화 대안학교 지원에 주안점을 두어 개입을 실시한다. 청소년지원시설에 입소 후 청소년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성매매피해 청소년 특화 대안학교를 십 분 활용하여 청소년들의 특성과 현재성에 맞는 학력지원을 이끈다. 학력지원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지원시설 체계에서 일정 기간 지원 이후 청소년이 취업지원에 욕구가 있을 때, 인턴십 센터로 연계,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 ② 위기청소년교육센터는 초기만남 부분에서 핵심역할을 수행한다. 위기청소년교육센터는 위기청소년지원센터(가칭)로 기능전환 하여, 성매매피해 청소년 관련기관들에 사례발굴 관련 교육과 홍보활동을 정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여 사례발굴을 위한 환경조성 사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또한 외부연계기관과 사례발굴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청소년들에 대한 조기개입과 구조, 사례발굴에 대한 중요성을 각인시킨다. 이로써 상시적이고 활발한 사례연계를 이끌어낸다. 또한 중앙단위와 지역단위로 나뉘어져, 중앙단위에서는 사이버상담을 실시하고 각 지역단위의 위기청소년지원센터(가칭)는 사이버상담과 긴밀한 연계를 통해 현장상담 및 구조등을 실시한다. 현재 여성가족부 지원으로 사이버상담이 시작하는 시점에 있으므로 관련 인력 지원과 예산 증가를 통해 효율적인 장치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한다.
- ③ 위기청소년지원센터(가칭)는 일시보호쉼터 및 드롭인센터를 운영하거나 권역별, 성매매피해 청소년 집결지역에 설립된 일시보호쉼터 및 드롭인센터와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긴급한 청소년의 구조를 지원하고, 청소년지원시설에 입소의 욕구가 없는 청소년의 공적지원 체계로의 편입을 추동시킨다.
- ④ 위기청소년지원센터(가칭)는 발굴된 사례를 사정(assessment) 하여 중장기 거주와 함께 학력지원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력지원 중심 시설체계로 연계해야 한다. 이때 위기청소년지원센터(가칭)는 성매매피해 청소년에 특화되지 않은 다른 기관에로의 연계보다 학력지원 중심 시설체계로 연계하는 것을 우선 원칙으로 한다. 또

한, 연계이후 정기사례회의를 운영하여 사례가 연계과정에서 탈락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정기사례회의의 개최는 공동으로 개최하고, 사례담당 기관은 사례별 지정하도록 협의하여 사례 담당에 관한 기관 간 갈등을 미연에 방지한다. 한편 학력지원중심 시설체계에 서는 입소 청소년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위기청소년지원센터(가칭)에서 운영하는 캠프에 참여를 의뢰할 수 있다. 이로써 위기청소년지원센터(가칭)와 학력지원 중심 시설체계 간 연계를 공고히 하고 활발한 상호작용이 일어나도록 한다.

- ⑤ 위기청소년지원센터(가칭)는 인턴십센터 연계를 통해 시급의 아르바이트 자리를 청소년 들에게 마련해준다. 일자리 연계 및 관리를 통해 돈이 필요해서 성매매로 유입되는 청 소년들의 유입동기를 예방하고, 성매매유입경로를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일자리를 매개로 사례를 효율적으로 발굴한다.
- ⑥ 청소년이 학력지원 중심 시설체계로 입소를 원치 않을 경우 청소년지원센터는 외부 성매 매피해 청소년 특화 대안학교로 직접 연계를 실시하여, 청소년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다.

(4) 모델 B의 장점

- ① 청소년들의 욕구와 특성에 맞는 중장기의 주거지원과 학력지원을 한자리에서 완성도 높 게 지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는 특히 저연령의 성매매피해 청소년에게 더욱 효과 적이고 발달단계 특성에 맞는 지원이 될 것이다.
- ② 여러 청소년지원시설 중에 성매매피해 청소년 특화 대안학교를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시설보호와 상담, 집단프로그램을 병행하는 것은 분명 차별성을 갖는 것이다. 시설 운영 자체적으로 서비스의 선별과 집중이 나뉘어져 진행되고, 이것이 청소년의 학력지원이라 는 큰 우산속에 통합됨으로써 보다 효과적이고 성매매피해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학력 지원을 가능케 한다.
- ③ 인턴십센터가 새로 구축되고 연계체계안에 삽입됨으로써 학력지원 중심 시설체계에서는 지원분야가 취업지원 분야까지 퍼지지 않아 학력지원부분에 보다 초점이 맞추어지고 전 문화된 프로그램 개발, 개입 방식을 개발할 수 있다. 이로써 청소년은 보다 전문적인 학 력지원을 받을 수 있고, 나아가 취업지원에 욕구가 발생하는 경우 인턴십센터로 연계되 어 전문적인 취업지원까지 이어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④ 위기청소년지원센터(가칭)의 경우, 캠프 운영 이후에 시설체계로 입소를 원치 않는 청소 년들에게 일시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주고, 일자리를 매개해줌으로써, 성 매매로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다. 일시거주와 일자리 지원은 효율적인 사례발굴을 가능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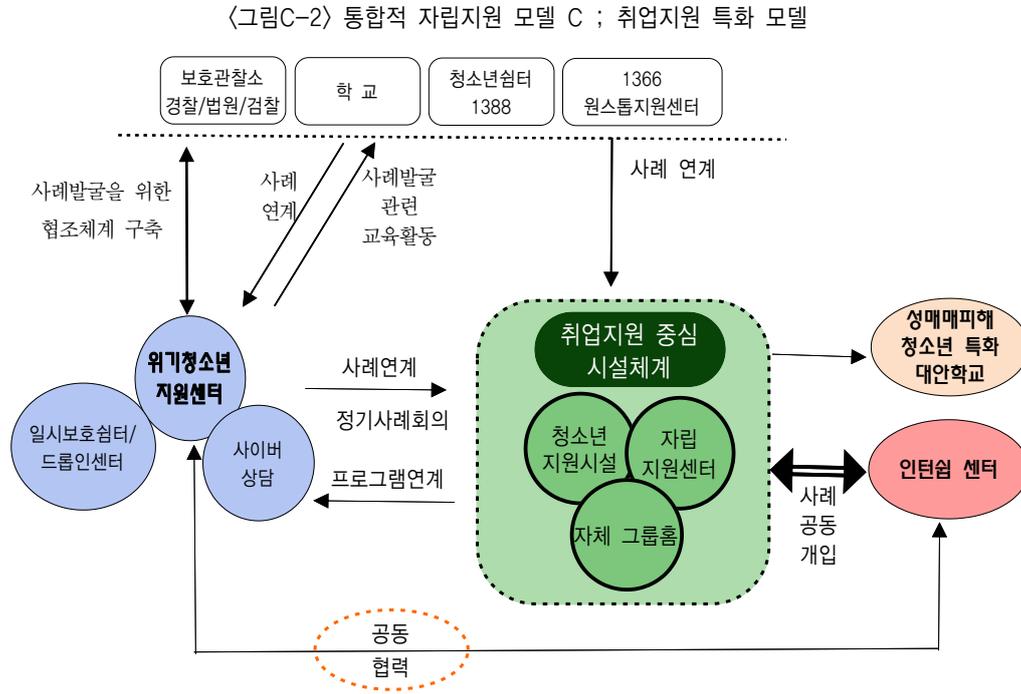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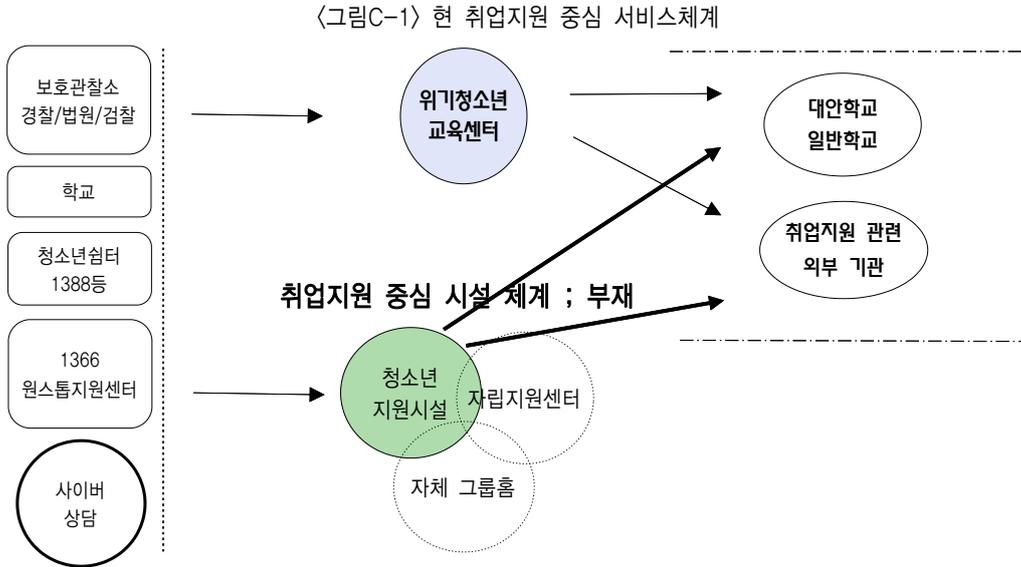
하고, 발굴된 사례의 관리에 지속성을 부여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지원체계는 시설보호와 탈시설화를 동시에 병행하는 것으로써 지원체계가 포괄하는 성매매피해 청소년의 범위가 확장되는 이점이 있다.

3) C 유형 : “취업지원 특화 모델”

(1) 모델 C의 기본 구조

- ① 대부분의 청소년 지원시설과 위기청소년교육센터는 자립의 일환으로 청소년이 노동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취업지원의 일부를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것과 취업지원 관련 외부 기관과의 연계방법을 병행하고 있다. 자체적으로는 직업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직업과 관련한 상담을 실시하고, 때로 기관자체적으로 직업체험과 인턴십을 실시한다. 연계를 통해서도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직업체험이나 인턴십을 활용하거나 직업훈련매장으로의 연계를 시행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취업지원의 모든 하위분야를 망라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청소년들의 모든 욕구에 개입하다보니 기초단계 수준의 취업지원이 이루어지기 쉽고, 전문화된 취업지원의 커리큘럼을 개발하기 어려우며, 인턴십이나 고용에 진입한 청소년들을 집중적으 사례관리 하는데에 일정정도의 한계를 갖는다. 또한 연계를 실시하는 외부기관들(노동부, 성인직업훈련매장 등)이 성매매피해 청소년에 특수한 커리큘럼을 개발하거나, 접근양식을 가진 기관들이 아니어서 연계가 단절 되기 쉽고 연계 수준도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 ② B 유형에서 보이는 학력지원 중심 시설체계는 한 자리에서 청소년이 중장기의 거주와 그들에 특화된 학력을 지원받는다는 점에서, 그리고 초기만남에서 취업지원에 이르는 연속선 상에서 유기적으로 통합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된다. 마찬가지로 취업지원에 욕구가 큰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한 자리에서 중·장기의 거주와 그들에 특화된 취업지원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즉, ‘취업지원 특화 모델(〈그림 C-2〉 참조)’은 취업지원에 욕구가 있는 성매매피해청소년을 위한 모델유형으로 청소년들의 취업지원에 강점을 갖는 모델이다. 이 ‘취업지원 특화 모델’은 청소년지원시설, 자립지원센터, 자체 그룹홈이 공동운영되는 형태를 갖는 취업지원 중심 시설체계를 핵심적으로 내포한다. 그리고 ‘사례발굴 및 초기 만남 측면’을 보강하고, 외부 성매매피해 청소년 특화 대안학교와 외부 인턴십센터 설립을 통해 ‘취업지원’의 연계체계를 통합적으로 구축한 모델이다(〈그림C-2〉 참조). 그러나 학력지원 중심 시설체계와 달리, 현재 청소년지원시설 중 한 법인이 청소년지원시

설과 자립지원센터, 자체 그룹홈을 공동운영하는 형태는 존재하지 않는다(〈그림C-1〉 참조). 따라서 공동운영 시설로, 자립지원센터의 새로운 구축이 요망된다.



(2) 모델 C의 실행을 위한 조건들

모델 C 유형의 실행을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다.

① 취업지원 중심 시설체계의 형성

취업지원 중심 시설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법인에서 청소년지원시설과 자립지원센터, 자체 그룹홈을 공동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받거나, 청소년지원시설과 자체그룹홈을 갖춘 기존 시설 중에서 자립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여 취업지원 중심 시설체계를 형성한다. 이때 자립지원센터는 성매매피해 청소년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취업지원과 관련한 특수화된 사례관리와 프로그램 개발·진행하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취업지원의 욕구를 갖고 있는 청소년들이 입소해 효율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② 인턴십센터와 취업지원 중심 시설체계의 긴밀한 연계체계 구축

특히, 이 모델유형은 인턴십센터와의 긴밀한 연계체계 구축이 관건이다. 다른 유형의 모델보다 이 체계로 편입되는 청소년들은 취업에 관한 욕구가 높기 때문에 취업지원중심시설체계와 인턴십센터가 사례에 대해 공동개입을 하여 취업지원에 효과성을 배가 시켜야 한다. 공동개입은 말 그대로 사례에 대해 공동의 책임을 지는 것이다. 공동개입시 사례에 대한 지원 역할의 분담을 세세하게 배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턴십센터의 구축이 우선 필요하고, 구축된 인턴십센터와 취업지원 중심 시설체계간 공동개입 협약을 맺을 필요가 있다.

③ 위기청소년교육센터의 기능 강화 및 재구조화

모델 A와 B 유형과 마찬가지로 위기청소년교육센터의 역할을 재구조화하여 위기청소년지원센터(가칭)로 기능전환을 꾀한다. 위기청소년지원센터(가칭)는 적극적인 사례발굴 기관으로 역할 하는데, 사이버상담과 일시적인 주거지원, 시급의 일자리 지원을 마련하여 효과적인 사례발굴을 실시하고 청소년을 공적지원체계로 빠르게 편입시키며, 발굴된 사례를 유실하는 경우를 낮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위기청소년지원센터(가칭)는 사례발굴과 관련한 연관기관들에 사례발굴에 대한 필요성과 절차, 정기적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또, 사이버상담을 중앙단위의 위기청소년지원센터(가칭)에서 실시하고 지역단위의 위기청소년지원센터(가칭)는 사이버상담으로 발굴된 청소년을 직접 만나러가거나 연계를 받는 역할을 하여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사이버상담은 이제 막 시작단계에 있으므로 인력과 예산지원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일시보호쉼터나 드림인 센터등을 위기청소년지원센터(가칭)에서 직접 운영하

거나, 외부에 설립된 임시거주공간과 연계하여, 청소년과 접촉하는 기간 동안이라도 쉼터를 제 공함으로써, 사례가 유실되지 않도록 한다. 셋째, 인턴십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일정기간을 기다 렸다가 급여를 타는 것이 아니라, 일한 시간만큼 급여를 타는 시간제 일자리를 통해 당장의 금 전적 어려움을 줄여주어, 돈이 없어 성매매를 하게 되는 연결고리를 끊어주어야 한다.

④ 취업지원 중심 시설체계의 우선의뢰 원칙

위기청소년지원센터(가칭)에서 발굴된 사례 중 안정된 거주와 함께 취업지원에 욕구가 있는 사례는 취업지원 중심 시설체계로 우선 의뢰해야 함을 원칙으로 수립해야 한다.

⑤ 성매매피해 청소년 특화 대안학교의 구축

취업지원 중심시설체계 내에 청소년에 특화된 대안학교를 운영하지 않음으로, 취업지원과 동시에 학력지원에 욕구가 있는 청소년들은 외부 성매매피해청소년 특화 대안학교로 연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성매매피해청소년 특화 대안학교 설립이 필요하다.

(3) 모델 C 구성요소의 역할과 기능(그림 C-2 참조)

- ① 취업지원 중심 시설체계에서는 청소년지원시설, 자체그룹홈, 자립지원센터의 운영을 통해 청소년의 중장기 주거와 성인전환시기에의 주거지원, 취업지원을 효과적으로 결합하여 지원한다. 특히, 성매매피해 청소년의 취업지원에 주안점을 두어 그들의 취업지원 욕구 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구조를 이루어야 한다. 청소년이 청소년지원시설에 입 소 후 그들의 직업적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자립지원센 터를 적극 활용하여 청소년들의 특성과 적성에 맞는 취업지원을 도모한다.
- ② '자립지원센터'는 취업과 관련한 프로그램 및 상담, 직업훈련, 취업지원에 특화된 사례관 리 서비스를 실시하고, 공동작업장이나 자립훈련매장 운영등을 통해 직업과 관련한 활동 을 직접적으로 점검, 훈련, 연습하는 지원을 수행한다. 자립지원센터는 외부 인턴십 센 터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사례에 공동개입함으로써 이전 서비스와 달리 취업지 원에 전문적인 프로세스를 갖추어 개입하게 된다.
- ③ 취업지원 중심 시설체계에서 일정기간 지원 이루어진 이후 청소년이 학력지원에 욕구가 있을 때, 외부 성매매피해 청소년 특화학교로 연계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에 높은 수준으로 부응해야 한다.
- ④ 위기청소년지원센터(가칭)는 위기지원센터로 기능전환 하여, 초기만남 부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관련 기관들에 사례발굴 교육과 홍보활동을 정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여 사례발굴을 위한 환경조성 사업을 이끌고, 사례발굴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성매매피해 청소년들에 대한 조기개입과 구조, 지원체계로의 편입을 지원한다. 또한 중앙단위와 지역단위로 위기지원센터의 운영을 나누어, 중앙단위에서는 사이버상담을 실시하고 각 지역단위의 위기청소년지원센터(가칭)에서는 중앙단위와 긴밀히 협력하여 사이버상담으로 접촉되는 청소년들을 지역단위에서 구조하거나 현장상담을 실시한다. 현재 여성가족부 지원으로 사이버상담이 초기단계에 접어들었으므로 관련 인력 및 예산지원을 통해 사이버상담 시행에 완결성을 기하도록 한다.

- ⑤ 위기청소년지원센터(가칭)는 임시거주(일시보호쉼터 및 드롭인센터)를 운영하거나 임시거주시설과의 연계성을 통해 긴급한 청소년의 구조를 지원하고, 시설 입소에 욕구가 없는 청소년의 지원을 담당한다.
- ⑥ 위기청소년지원센터(가칭)는 발굴된 사례의 사정(assessment)를 통해, 중장기 거주와 함께 직업 및 취업지원에 욕구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취업지원 중심시설체계'로 연계해야 한다. 이때 위기청소년지원센터(가칭)는 성매매피해 청소년에 특화되지 않은 다른 기관으로의 연계보다 취업지원 중심 시설체계로 연계하는 것을 우선 원칙으로 한다. 또한 연계 이후 정기사례회의 개최를 통해 사례가 연계 과정에서 탈락되거나 기관간 연계성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여, 사례연계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정기사례회의는 공동으로 개최하고, 사례담당 기관은 회의를 통해 사례별 지정하도록 협의하여 사례 담당에 관한 기관 간 갈등을 방지하고, 사례개입의 효과를 높인다. 한편, 취업지원 중심 시설체계에서는 입소 청소년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위기청소년지원센터(가칭)에서 운영하는 캠프에 참여를 의뢰할 수 있다. 이로써 위기청소년지원센터(가칭)와 취업지원 중심 시설체계가 원활한 연계가 이루어지고 안정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⑦ 위기청소년지원센터(가칭)는 인턴쉽센터 연계를 통해 사례발굴을 통해 만나게 되는 청소년들에게 시급의 아르바이트 자리를 마련해준다. 일자리 연계 및 관리를 실시함으로써 그 동안 당장의 생활비가 필요해서 성매매로 유입되는 청소년들의 유입동기를 최소화하고, 성매매 유입 경로를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시급의 일자리는 아직 지원체계로 편입되지 않은 청소년들을 발굴하는 데에 효과성 높은 매개물로 역할 할 것이다.
- ⑧ 청소년이 시설로의 입소를 원치 않으나, 학력지원을 원할 경우 위기청소년지원센터(가칭)는 외부 성매매피해 청소년 특화 대안학교로 연계를 실시하여, 청소년의 욕구에 부응하도록 한다.

(4) 모델 C 의 장점

- ① 청소년들의 욕구와 특성에 맞는 중장기의 주거지원 함께 취업지원을 한자리에서 완성도 높게 지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는 특히 사회에 진입해야 되는 나이를 가진 청소년, 즉 고연령의 청소년들에게 더욱 효과적이고 욕구에 맞는 지원이 될 것이다.
- ② 여러 청소년지원시설 중에서 자립지원센터를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시설보호와 상담, 집단프로그램 등이 취업지원을 위한 흐름에 맞추어지는 것은 다른 청소년지원시설과 차별화 되는 지점이다. 시설 운영 자체적으로 취업지원으로 서비스의 성격이 재편되고, 프로그램과 접근에 있어 선별과 집중이 이루어져, 청소년의 취업지원이 효과적으로 지원될 수 있다.
- ③ 인턴십센터와 성매매피해 청소년 특화 대안학교가 새로 구축됨으로써 취업지원 중심 시설체계의 기능이 더욱 원활히 수행될 수 있다. 특히 이 모델에서는 자립지원센터와 인턴십센터가 공동으로 사례에 개입을 실시하는 협력체계를 갖추므로써, 매우 전문적으로 취업지원을 도모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이 취업지원과 함께 학력지원에 욕구가 있을 경우, 학력지원 부분의 지원이 단절되거나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성매매피해 청소년 특화 대안학교로의 연계를 실시하여, 전문적인 취업지원과 더불어 학력지원까지 통합적으로 지원되는 장점이 있다.
- ④ 모델 A와 B 유형과 마찬가지로, 위기청소년지원센터(가칭)의 경우, 캠프 운영 이후에 시설체계로 입소를 원치 않는 청소년들에게 일시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주고, 일자리를 매개해줌으로써 성매매로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다. 일시거주와 일자리 지원은 효율적인 사례발굴을 가능케 하고, 발굴된 사례의 관리에 지속성을 띠게 할 것이다. 또한 시설입소를 하지 않은 청소년들에 대한 서비스도 지원되어, 서비스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한다. 이처럼 적극적인 사례발굴과 배급, 각 단위의 특성화와 긴밀한 연계체계의 구축은 지원체계 전체적으로 볼때 성매매피해 청소년에 대한 지원율을 증가시키고 청소년들의 선택권과 욕구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4) D유형 : “비시설보호 특화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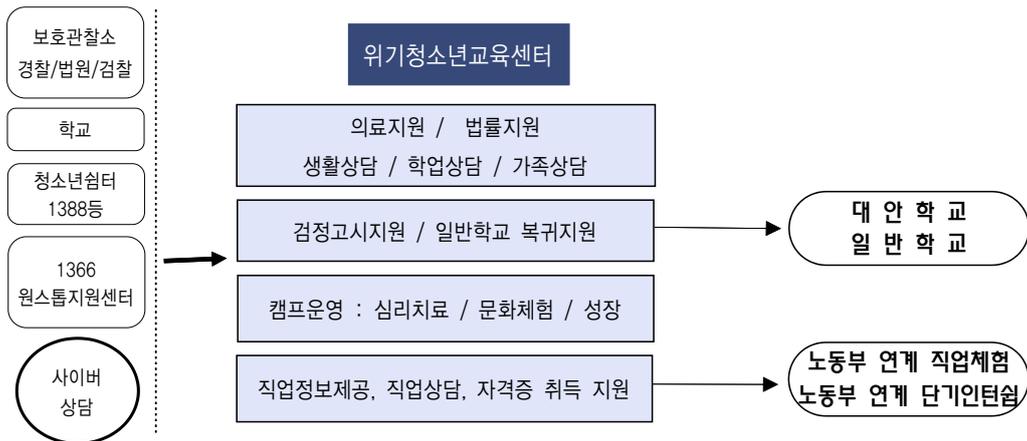
(1) 모델 D의 기본 구조

- ① 현재까지는 성매매피해 청소년 중 가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건만남을 하거나, 성매매피해를 당하거나, 쉼터입소를 거부하는 경우, 공적 지원체계 밖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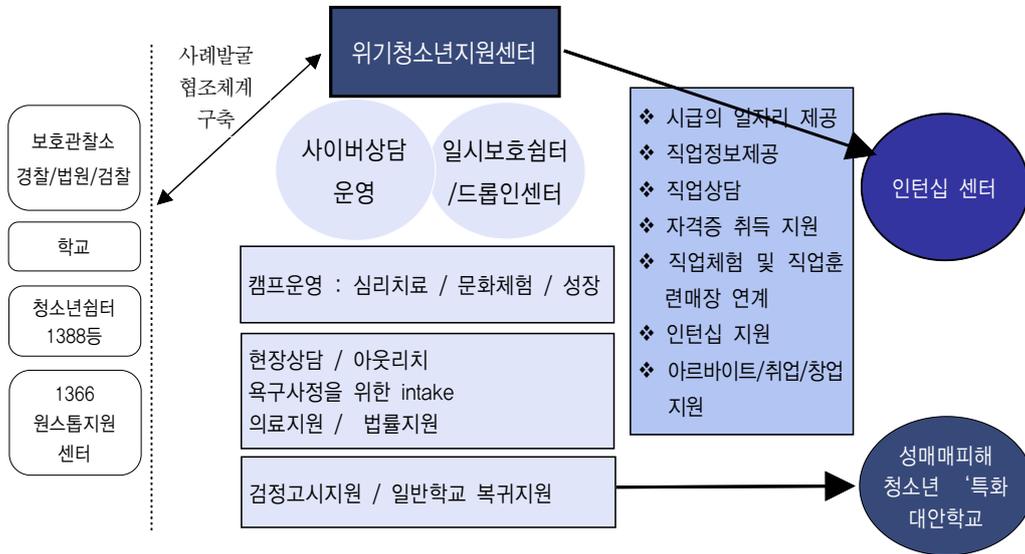
모델 D는 이러한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을 핵심적으로 고려한 모델이다. 시설 입소와 상관없이 심리·정서적 안정을 꾀하고, 상담이나 집단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학력지원과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하다.

- ② 위기청소년교육센터가 기존 프로그램과 서비스 내용을 재편하여, 위기청소년지원센터(가칭)로 기능전환하고, 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채 지원을 받기를 원하는 청소년들의 지원에 주요 역할을 한다. 이때 새로운 인프라인 성매매피해 청소년 특화 대안학교와 인턴십 센터가 위기청소년지원센터(가칭)의 비시설 보호 특화 지원을 효율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로 작동한다.
- ③ 위기청소년지원센터(가칭)는 청소년의 초기 만남에서 성매매피해 청소년 특화 대안학교와 인턴십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시설 미입소상태에서 학력지원과 취업지원을 시행하고, 더불어 일시보호쉼터와 드롭인센터 운영 혹은 연계를 통해 임시의 주거를 제공한다. 이로써 탈시설화의 지원이 성매매피해 청소년 지원체계에 한 지원 패턴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같은 서비스 지원 패턴은 청소년들의 서비스 선택의 범위를 넓히고,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것이다. 다음에 <그림 D-1>과 <그림 D-2>를 제시하였는데, <그림 D-1>은 현재 비시설보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원 양상을 도식화 한 것이고, <그림 D-2>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위기지원센터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발전시킨 "비시설 보호 특화 모델(모형 D)"이다. 위기청소년교육센터의 프로그램 및 서비스 내용을 조정하고, 비시설 보호의 측면을 특화함으로써 시설을 중심으로 지원을 수행하는 시설보호와 위기청소년지원센터(가칭)를 중심으로 하는 탈시설보호의 병행을 가능케 하였다.

<그림 D-1> 현 비시설 보호의 서비스 체계 현황



〈그림 D-2〉 통합적 자립지원 모델 D ; 비시설보호 특화 모델



(2) 모델 D의 실행을 위한 조건들

모델 D 유형의 실행을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다.

① 위기청소년교육센터의 기능 강화 및 재구조화

사례발굴은 위기청소년지원센터(가칭)와 청소년지원시설 모두에서 이루어지되, 위기청소년교육지원센터는 서비스 내용의 재편을 통해 청소년 캠프 운영 외에 사례발굴을 위한 협조체계 구축과 사이버 상담(중앙단위) 및 현장상담·아웃리치(지역단위)를 통해 적극적인 사례발굴과 초기 만남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임시주거시설의 직접운영 혹은 연계 구축, 성매매피해 청소년 특화 대안학교와 인턴십센터와의 연계구축을 통해 시설에 편입하지 않은 청소년들을 위한 서비스를 운영하는 핵심 기관으로 역할한다.

② 성매매피해 청소년 특화 대안학교, 인턴십센터의 구축

성매매피해 청소년 특화대안학교(위탁대안학교)와 인턴십센터는 새롭게 구축되어야 할 인프라로, 두 기관 모두 성매매피해 청소년의 독특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커리큘럼과 접근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성매매피해 청소년 특화 대안학교는 정규학교의 학력이 인정되는 위탁대안학교

의 성격을 갖는다. 또한 인턴십센터는 직업정보제공, 직업교육 및 훈련, 직업체험, 일자리 정보제공 및 위법지원, 시급 아르바이트에서부터 정규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취업처 개발, 취업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성매매피해 청소년 특화 대안학교와 인턴십이 지원될 때 위기청소년지원센터(가칭)의 서비스 내용이 선별, 집중화될 수 있어, 적극적인 사례발굴을 시행할 수 있고, 공적지원체계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돕는 사례관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다.

(3) 모델 D 구성요소의 역할과 기능

모델 D의 핵심 구성요소는 위기청소년지원센터(가칭)와 성매매피해 청소년 특화 대안학교, 인턴십센터가 있다. 위기청소년지원센터(가칭)의 비시설 보호를 지원하기 위해 성매매피해 청소년 특화 대안학교와 인턴십센터가 어떻게 연계되어야 할지를 살펴보았다.

첫째, 위기청소년지원센터(가칭)는 일시보호쉼터 및 드롭인센터를 운영하거나 연계체계를 구축하여(권역별이나 성매매피해 청소년 집결지역에 설립), 시설 밖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임시의 거주지를 마련해주어 공적지원체계로의 편입을 촉진시킨다.

둘째, 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성매매피해 청소년 특화 학교나 인턴십센터로 연계하여 학력 및 취업지원을 실시하도록 한다.

셋째, 인턴십센터는 두가지의 효과를 가져오도록 협력한다. 하나는 인턴십센터와 연계하여 시급의 아르바이트 자리를 마련해주어 돈이 필요해서 성매매를 하게 되는 경우의 수를 줄여주고, 성매매로의 유입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오도록 개입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시설에 입소하지는 않으나 적성에 맞는 일자리에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청소년들에게 체계적인 취업지원을 시행할 수 있다.

넷째, 위기청소년지원센터(가칭)는 성매매피해 청소년 특화 대안학교와 인턴십센터, 임시거주시설과의 연계 구축에 있어 세 단위(위기청소년지원센터(가칭), 성매매피해 청소년 특화 대안학교, 인턴십센터)의 공동 사례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연계에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종합적으로 개입해 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위기청소년지원센터(가칭)는 사례발굴 및 초기 만남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여 공적지원체계로 편입되지 않은 청소년들을 발굴해 내야 한다.

첫째, 중앙단위와 지역단위의 위기청소년지원센터(가칭)가 각각 사이버상담과 현장상담 및 아웃리치를 실시하여 청소년의 구조를 효율적으로 실시한다. 현재 여성가족부 지원으로 사이버상담이 시작중에 있으니, 관련 인력과 예산 증가로 사업의 효율성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위기청소년지원센터(가칭)는 성매매피해 청소년의 사례발굴을 위한 환경조성 사업을

진취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위기청소년지원센터(가칭)는 보호관찰소나 학교, 1388·1366, 경찰 등의 외부기관들과 사례발굴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청소년들에 대한 조기개입과 주고, 사례발굴에 대한 중요성을 각인시켜, 상시적이고 활발한 사례연계를 이끌어낸다.

(4) 모델 D 유형의 장점

- ① 위기청소년지원센터(가칭)가 비시설보호 특화 모델의 중심 역할로 자리매김 한다면, 좀 더 안정적이고 계획적으로 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청소년들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현재 위기청소년지원센터(가칭)는 인력부족과 예산부족과 더불어 폭넓은 범위의 복잡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시행해오면서 업무과다와 청소년들의 욕구에 민첩하게 부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따라서 위기청소년지원센터(가칭)가 초기만남과 비시설보호 중심의 서비스의 핵심 기관으로 재배치 된다면 서비스의 선별과 집중이 이루어짐으로써 청소년들의 욕구에 높은 수준으로 부응할 수 있다.
- ③ 특히 성매매피해 청소년에 특화된 대안학교와 인턴십 센터의 인프라가 구축되어 함께 청소년을 지원함으로써, 학력과 취업지원에 관한 연계가 연속성과 지속성이 확보되는 장점이 있다.
- ④ 비시설보호 서비스 체계는 시설 입소 외에 뚜렷한 대안이 없는 서비스체계에 시설보호와 탈시설 보호의 병행이라는 대안을 제시해줄 수 있어, 비입소 청소년들이 더욱 열악한 상황에 처해지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한다. 청소년들에게 일시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쉼터를 마련해주고,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일자리를 매개해줌으로써 성매매로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효과를 준다. 이로써 공적지원체계의 대상자 포괄 범위가 확대될 수 있는 효과를 갖는다.

IV. 결론 및 제언

성매매피해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 자립지원 모델을 구축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것은 현재의 서비스체계가 과연 청소년들의 욕구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으며, 이들의 다양한 욕구가 서비스를 '선택' 하는데 반영되고 있는가하는 것이었다. 즉 통합적 자립지원 모델의 근간을 성매매피해 청소년들의 '욕구'와 욕구에 기반한 '선택권'에 두고 구축하려 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의 욕구는 무엇이고, 현재의 서비스체계는 이러한 욕구를 얼마나 충족시키고 있는가? 청소년들의 욕구와 현재의 서비스 지원체계가 어느 정도 부합되는가?

본 연구결과 성매매피해 청소년들의 욕구는 시설입소만으로 충족될 수 없는 다양성을 띠고 있었는데, 이러한 다양한 욕구에 기반해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현재 우리나라 성매매피해 청소년에 대한 서비스지원의 핵심 패러다임은 '시설보호 중심의 서비스 체계'이다. '시설보호 중심의 서비스 체계'는 시설보호의 범위 안에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점은 있지만, 시설보호를 원치 않는 청소년들을 커버하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최근 들어 위기청소년교육센터의 운영으로 시설보호를 꺼리는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 생기기는 하였지만, 예산과 인력의 부족으로 운영과 서비스체계가 체계적이지 못하다.

본 연구에서는 성매매피해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 지원체계의 사각지대로서 성매매 유입 초기에 청소년들을 만나주는 '초기만남 체계'의 구축이 매우 미흡하며, 돈을 벌기 위한 직업의 욕구를 가진 청소년들에 대한 서비스체계가 구축되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사실 '초기만남 체계'는 성매매피해 청소년들이 성매매로의 유입 초기에 이들을 만나주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성매매 유입을 차단하고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지점이다. 그러나 현재 성매매피해 청소년을 위한 '초기만남 체계'는 학교, 보호관찰소, 경찰, 사이버 상담, 1388 등 인프라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초기만남'을 극대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체계는 갖추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의 취업지원을 위한 서비스체계도 매우 부족하였는데, 이는 성매매피해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 지원의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위기청소년교육센터와 청소년지원시설 모두에서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매매피해 청소년의 욕구에 기반한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재의 초기만남 체계를 재구조화하고 강화하며, 취업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에서 모델들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4가지 모델은 성매매피해 청소년들의 욕구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그러한 욕구에 기반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모델 A, B, C는 시설보호를 기반으로 하여 청소년의 욕구 양상 여하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모델이고, 모델 D는 시설보호를 원치 않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모델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4가지 모델들은 가능한 현행의 서비스 체계를 기반으로 하여 이를 보완하되, 기존의 서비스 체계가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이들 4개 모델 모두는 '초기만남 체계'의 강화와 취업지원 체계의 강화라는 공통의 기반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모델들이 현실에서 뿌리내리고 성매매피해 청소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다음의 몇 가지 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 (1) 앞서 제시한 네 가지의 통합적 자립지원 모델은 해당 지역의 특성 또는 성매매피해 청소년 시설 및 기관의 특성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획일적인 모델 제안이 아닌 다양한 모델을 제안하였다. 그 이유는 지역마다 그 특성이 다르고, 현재의 기존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에서였다. 하나의 모델을 제안하는 것은 기존의 인프라와 자원을 지나치게 많이 재구조화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자원의 낭비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원의 효율화를 극대화하면서도 성매매피해 청소년들의 욕구과 선택을 다원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델을 구축하였다. 물론 한 지역이나 시설에서 하나의 모델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 이상의 모델을 동시에 선택할 수도 있다. 예를들어, 모델 D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모델 B를 시행할 수도 있다.

- (2) 모델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초기만남 체계'와 '취업지원 체계'의 강화는 모든 모델에서 공히 강조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성매매피해 청소년들에게 '초기만남'은 유입 방지와 차단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는 현재 사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발굴의 시기를 좀 더 앞당겨 성매매피해 청소년들을 조기에 지원하기 위한 체계이다. '취업지원 체계' 또한 마찬가지이다. 시설입소를 통해 지원되는 취업지원에 앞서 시설입소를 할 수 없거나 할 의사가 없는 초기상태에서 이들 청소년들이 시급으로라도 돈을 벌 수 있다면 성매매로의 진입을 늦출 수 있다. 따라서 성매매피해 청소년들에 대한 취업지원은 확력을 갖춘 다음에 밝아야 하는 단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학력을 갖추기 전이라도 성매매 유입 방지를 위해 초기단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모델을 제안하였지만, 모든 모델에서 공히 ‘초기만남 체계’와 ‘취업지원 체계’는 강화되어야 한다.

(3) 새로운 ‘초기만남 체계’의 중심을 이루는 위기청소년지원센터(가칭)를 위해 예산과 인력의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델에 의하면, 새로운 ‘초기만남 체계’는 위기청소년교육센터의 기능과 위상의 변화를 요구한다. 현재 위기청소년교육센터는 5박6일의 청소년 캠프를 중심으로 이후 청소년들에게 대한 사후관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초기만남 체계’에 의하면, 위기청소년교육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확장하여 ‘위기청소년지원센터(가칭)’로 전환하고, 중앙위기청소년지원센터(가칭)에서 성매매피해 청소년을 위한 보다 체계적인 사이버상담을 실시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사이버 상담은 성매매피해 청소년들을 발굴하는 주요 통로이다. 따라서 최근 여성가족부의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사이버 또래상담’을 보다 체계화하고 확장하여 청소년들의 성매매 가장 큰 통로인 사이버 상에서 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위기청소년지원센터(가칭)는 사이버 상담과 함께 시설입소를 꺼리는 혹은 시설입소를 할 필요가 없는 청소년들을 그들의 욕구 여하에 따라 지원시설, 대안학교 혹은 인턴십센터에 의뢰하고 연계함으로써 이들의 성매매로의 유입을 차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기존의 예산과 인력으로는 이러한 기능전환 및 확장에 따른 역할을 담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기청소년교육센터에 대한 예산과 인력이 보장되어야 한다.

(4) ‘초기만남 체계’에서 성매매로의 유입방지를 위한 일시거주시설(일시보호쉼터/드롭인센터)을 확대하되,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배치하도록 한다.

‘초기만남 체계’에서 일시적으로 거주하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은 필수적이다. 성매매피해 청소년들 중에는 시설에 갈 수 없거나 원하지 않지만 집으로는 돌아갈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가장 어려운 것이 거주할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일시적으로 거주할 공간을 갖는다는 것은 이들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로의 유입을 방지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다. 그 이유는 청소년들의 말에 의하면, 거주할 곳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성매매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일시보호쉼터나 드롭인센터와 같은 일시적 거주 공간은 성매매피해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가장 높은 곳을 선택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로서는 위기청소년교육센터가 이들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성매매피해 청소년 측면에서도 그리고 서비스 제공 주

체 측면에서도 접근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위기청소년교육센터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고,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최적점이면 어디든지 가능하다고 본다.

(5) 성매매피해 청소년을 위한 새로운 인턴십센터를 구축하되, 성매매피해 청소년을 위한 모든 인프라 체계와의 ‘연계’와 ‘협력’이 핵심이 되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델의 새로운 측면 중의 하나는 성매매피해 청소년들을 위한 취업지원을 전담하는 ‘인턴십센터’의 구축이다. 인턴십센터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직업정보, 직업체험, 아르바이트 연계, 직업훈련, 취업지원을 위한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턴십센터 자체가 독립적인 기관이기는 하나, 그 핵심 역할을 ‘연계’와 ‘협력’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그렇지 못할 경우 본 연구에서 제안한 네 가지 모델들의 유기적 작동은 어려워지게 된다. 인턴십센터는 초기만남의 과정에서든, 학력을 거친 이후의 과정에서든 청소년들이 취업지원의 욕구가 발생하는 어느 지점에서든 개입할 수 있도록 다른 기관들과 협력하고 연계해야 한다. 그것이 협약의 형태이건, 사례 공동관리의 형태이건, 아니면 일시적 연계 형태이건 무엇이 되었든 ‘연계’와 ‘협력’을 인턴십센터 작동의 핵심 기제로 두어야 한다.

(6) 성매매피해 청소년을 위한 위탁형 대안학교의 확대를 위해 관련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한국사회에서 성매매피해 청소년들에게 있어 학력을 획득하는 것은 자립으로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지뢰점이다. 학력은 취업의 전제조건이기도 하고,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최적점이기도 하다. 실제로 학교를 중도에 그만둔 성매매피해 청소년들은 일반학교에 적응하기는 힘들지만 학교를 그리워하고 동경한다. 이처럼 성매매피해 청소년들의 자립에서 학력을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요소이다. 현재 성매매피해 청소년들의 대부분은 검정고시나 일반학교, 혹은 일반 대안학교에 의뢰된다. 그러나 성매매피해 청소년들이 특수성을 고려할 때 범속학교의 대안학교와 같은 위탁형 대안학교의 확대는 꼭 필요하다. 성매매피해 청소년과 같은 복지서비스를 받는 특수한 대상을 목적으로 하고, 이들에게 학력인정은 물론 정규학교에서 제공하는 각종 교육복지 혜택이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가족부가 이러한 위탁형 대안학교를 직영으로 하여 이를 지원, 위탁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나아가 여성가족부의 특수목적의 위탁형 대안학교 직영을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위탁형 대안학교에 관한 법 개정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권창국(2001). “ ‘청소년 성매매’ 행위 등에 대한 규제방법으로서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검토”.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46호, p199-224.
- 권해수 외(2008). “위기청소년의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두드림존 프로그램 특성화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44호, 한국청소년상담원.
- 김은정(2009). “저소득층 십대 여성의 성매매 유입/재유입을 통한 사회화 과정 분석: 구조와 행위간 이중적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전기사학회대회 자료집, p329-354.
- 김연주(2010). 신빈곤층 십대 여성들의 성매매 경험과 자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문화협동과정 박사학위청구논문. 미간행.
- 김인숙(2009). “시설거주 10대 성매매피해여성의 자활 과정”. 「한국아동복지학」, 30호, p133~157.
- (2011). “가출, 성매매 위기 십대여성 ‘자립모델’ 개발 보고”. 가출·성매매 위기 십대여성 ‘자립모델’ 개발 포럼 자료집. 서울시 늘푸른여성지원센터
- 김인숙·하지선(2011). 가출, 성매매 위기 십대여성의 자립지원 모델. 늘푸른여성지원센터.
- 김정연·하지선·김인숙(2011). 시설 십대 청소년의 “자립” 척도 개발: 십대 여성 지원 시설 입소 및 이용자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3(2), p23-53.
- 김주희(2006). “성산업 공간인 티켓 영업 다방 내 십대 여성의 ‘일’ 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학위청구논문.
- 노 혁(2004). “빈곤계층 청소년의 자립능력개발을 위한 복지지원 방향: 생활 및 자립지원시설 실태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1(1), p94-117.
- 노충래(2001). “시설보호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자립”, 제3회 한국아동복지학회 워크샵 자료집.
- 도미향·윤지영(2004). “청소년 성매매와 성보호법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제9권 1호, p19-33.
- 문태식(2009). “우리나라 청소년쉼터 운영실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 지역개발학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민가영(2002). “성매매화된 사회 속의 소녀들”, 「당대비평」, 18호, p109-122.
- (2009). “청소년 성매매 행위의 ‘자발성’ 과 그 맥락에 대한 질적 연구를 통한 성매매

- 청소년의 자발성 논쟁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청소년연구』, 제20권 제1호(통권 제52호), p173-202.
- 박병식 외(2007). 온라인상 청소년 성보호 관련 법적규제 도입을 위한 연구. 국가청소년위원회.
- 변혜정·민가영(2007). “청소년의 가출의미에 대한 연구”. 『한국여성학』, 제23권 1호, p5-37.
- 보건복지가족부(2008). 2008년 제2차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추세와 동향분석: 2000년부터 2007년간 성범죄추세. 보건복지가족부 연구보고서.
- 성윤숙(2010). “성매매피해 청소년 지원시스템 점검과 제언”. 『여성과 인권』. 통권 제3호, p34-59.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성윤숙 외(2009).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실태와 대응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여성가족부(2010). 2010년도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 유문무(2005). “청소년 성매매 현상의 원인과 대책”, 『한국공공관리학보』, 제19권 제2호, p163-194.
- 유은주(2005). “성매매청소년의 자의식 탐색”. 『한국청소년연구』. Vol. 16, p195-224.
- 윤덕경·박현미·장영아(2003). “여자청소년 성보호 관련법의 현황과 과제”. 『소년보호연구』, Vol. 5, p105-126.
- 이민희(2001). “청소년 성매매의 원인에 관한 고찰”. 『한국청소년연구』, 통권 제34호, p99-130.
- 이자림(2008). “성매매피해 경험청소년의 생애사 분석”. 『청소년복지연구』, Vol.10 No.1, p69-92.
- 정진연(2001). “청소년 성매매에 관한 형사정책적 고찰”, 『소년보호연구』, 제3호, p269-296.
- 조양순(2011). 한국 성매매청소년의 재활과정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정보호학과 박사학위청구논문. 미간행.
- 최인섭(2000). 외국의 가출청소년 대책. 청소년보호위원회.
- 한국여성인권진흥원(2011). 가출 청소년 성매매 유입 예방 및 지원 방안. 발간예정.
- 최윤정(2010). “정신장애인의 회복에 대한 지역사회통합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4(4), p252-288.
- 홍봉선·남미애·아영아(2009). 성매수 피해청소년의 현황과 사회적 지원체계 점검. 보건복지부.
- 홍봉선·남미애(2010). “성매수 피해청소년의 욕구와 사회적 지원방안”. 『청소년복지연구』. 제12권, 제1호, Vol.12, No.1, p1-33.
- 홍봉선(2011). “청소년 성매매의 환경적 요인과 사회적 대처방안”, 『여성과 인권』, 통권 제3호, p8-23.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홍선미(2006). “자활지원 사례관리 모형과 운영방안 연구”. 『사회복지연구』, 29, p133-165.

- Cook, Ronna. J, and Dorothy I. Ansell. 1986. "Independent living service for Youth in substitute care". District of Columbia; Rockville, Md.: Westat Research, Inc.
- Hewer, J. C. 1994. "Preparation for independence? A case study of a program for Ontario youth in transition".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Section A: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 Farley, M. & Kelly, V. (2000). "Prostitution : a critical review of the medical and social sciences literature" *Women & Criminal Justice* 11(4): 29-64.
- Malucio, A., R. Krieger, B. A. Pine. 1990. "Assession skills for Interdependent living. In A. N. Maluio, R. Kreiger, and B. A. Pine(eds.), *Preparing adolescents for life after foster care*". Washington DC: Child Welfare Legue of America. 77-89.
- Trussell, J., & Vaughn, B. (1991). Selected results concerning sexual behavior and contraceptive use from the 1988 National Survey of Family Growth and the 1998 National Survey of Adolescent Males. N. F. : Office of Population rsearch.

온라인 참고자료

- Protection of children and prevention of Seuxual offences(scotland) Act 2005(<http://www.legislation.gov.uk/asp/2005/9/contents>)
- Guidance: Protection of Children and Prevention of Sexual Offences (Scotland) Act 2005(<http://www.scotland.gov.uk/Publications/2006/11/17153941/2>)
- 아동 그루밍 : http://en.wikipedia.org/wiki/Child_grooming 참조
- 미국 위기 청소년 직업 봉사단: <http://www.jobcorps.gov/employment> 참조.

기사 자료

- 뉴데일리 2010년 9월 18일 "만14세 이상은 합의하면 성범죄 아니라고?" (<http://www.newdaily.co.kr/news>)
- 서울신문, 1월 18일 인터넷 기사 참조, "그루밍 첫 적발" (<http://www.seoul.co.kr/news/>)

참고법률

아동청소년의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8호)

부록1. 청소년 지원시설용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2011년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는 “성매매피해 청소년 자립지원 모델 개발”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가톨릭대학교 연구팀입니다.

실무자 선생님들께서는 사업을 수행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연구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설문지를 보내드리오니 작성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답해 주신 내용은 비밀과 익명이 보장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모든 질문 내용에는 옳고 그름이 없으므로, 평소에 생각하시고 행동하시는 대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설문지는 아래의 주소로 꼭 보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실 주소 : (420 -743)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2동 산 43-1번지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인숙교수

2011년 10월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인숙교수 드림

기본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남 ② 여
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_____ 세
3. 귀하의 직급은 어떻게 되십니까? _____ 직급
4. 귀하의 현 기관의 근무 경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_____년 _____ 개월

다음은 기관 현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5. 귀 기관의 설립년도는 언제 입니까? _____ 년
6. 귀 기관의 상근 직원수는 몇 명입니까? _____ 명
7. 2009년부터 2011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귀 기관에 입소한 청소년의 인원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입소인원 : _____명
2010년 입소인원 : _____명
2011년 입소인원 : _____명
8. 2009년부터 2011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청소년의 평균 입소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2009년 평균입소기간 : _____개월
2010년 평균입소기간 : _____개월
2011년 평균입소기간 : _____개월
9. 2011년 현 입소 청소년의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연령별 명수를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15세 미만 : _____명 15세 : _____명
16세 : _____명 17세 : _____명

18세 : _____명
기타 : _____명

19세 : _____명

10. 2009년부터 2011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입소 청소년 중 특수한 어려움을 가진 청소년들의 추이는 어떻습니까? 년도별 해당 청소년의 명수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미혼모 _____명 / 지적장애 _____명 / 기타 _____명

2010년 미혼모 _____명 / 지적장애 _____명 / 기타 _____명

2011년 미혼모 _____명 / 지적장애 _____명 / 기타 _____명

11. 귀 기관의 법인에서 함께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 모두 ‘o’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① 쉽터 운영(청소년지원시설)
- ② 대안학교 운영
- ③ 10대 청소년을 위한 그룹홈 운영
- ④ 20대 이후 청소년을 위한 그룹홈 운영
- ⑤ 자립훈련매장 운영
- ⑥ 기타 : _____

다음은 청소년에 대한 서비스 현황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12. 아래 문항은 청소년 입소 의뢰 형태를 분류해 놓은 것입니다. 현재 귀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 발굴 및 의뢰 형태를 생각해보시고, 해당하는 사례발굴 및 의뢰형태의 비율을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 ① 법원 및 보호관찰소로부터 의뢰 ()%
- ② 경찰로부터 의뢰 ()%
- ③ 원스톱지원센터로부터 의뢰 ()%
- ④ 1366, 1388 으로부터 의뢰 ()%
- ⑤ 청소년위기지원센터(성장캠프) 로부터 의뢰 ()%
- ⑥ 사이버 상담으로 사례발굴 ()%
- ⑦ 기관 아웃리치로 사례발굴 ()%
- ⑧ 기타 : _____ ()%

13. 아래는 청소년의 서비스 참여 정도를 제시한 것입니다. 귀 기관의 청소년들의 서비스 참여 정도를 떠올려 보시고, 해당하는 유형의 비율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학력지원 내용 : 검정고시 지원, 대안학교, 자립학교, 학원연계 등

- ① '쉽터입소 - 중도탈락'의 경우 ()%
- ② '쉽터입소 - 적응 - 학력지원' 의 경우 ()%
- ③ '쉽터입소 - 적응 - 학력지원- 직업체험 및 인턴쉽 프로그램'의 경우 ()%
- ④ '쉽터입소 - 적응 - 학력지원- 직업체험 및 인턴쉽 프로그램 - 자립훈련매장 및 지원고용'의 경우 ()%
- ⑤ '쉽터입소 - 적응 - 학력지원- 직업체험 및 인턴쉽 프로그램 - 자립훈련매장 및 지원고용 - 취업'의 경우 ()%
- ⑥ 기타 : _____ ()%

14. 귀 기관에서 청소년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모두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류	서비스 내용	실시 여부	분류	서비스 내용	실시 여부	
발굴	아웃리치 및 현장상담		취업 지원	직업정보 제공		
	상담	생활상담			직업상담 및 직업지도 프로그램	
학업 상담				자격증 취득 지원		
가족 상담				기관 자체 직업체험 프로그램		
학력 지원	검정고시 지원			기관 자체 인턴쉽 프로그램 운영		
		일반학교 복귀 지원			노동부 연계 직업체험	
		대안학교 연계			노동부 연계 단기 인턴쉽	
집단 프로그램	심리치료 프로그램			직업훈련매장 연계		
		문화체험 프로그램			아르바이트	
		성장 집단 프로그램			취업	
					창업	
			의료지원			
			법률지원			
			사후관리			

15. 청소년 서비스와 관련하여 귀 기관에서 이루려고 하는 최종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해당 문항의 번호에 'o'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 ① 청소년의 주체성을 키우는 것
- ② 청소년의 보호와 양육

- ③ 청소년의 선도보호 및 교정
- ④ 기타 : _____

16. 아래는 청소년 서비스의 주요 목표를 제시해 둔 것입니다. 귀 기관에서 중요시하는 순서대로 **1, 2, 3, 순위**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① 청소년의 가정복귀 : ()순위
- ② 청소년의 학력취득 : ()순위
- ③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 : ()순위
- ④ 기타 : _____ : ()순위

17. 다음은 청소년 지원과 관련하여 **귀 기관의 연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표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기관에서 행해진 연계 현황을 떠올려보시고, 아래 빈칸에 순서대로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17-1. 현재까지 <u>연계하신 기관</u> 의 이름을 모두 써주시기 바랍니다.	17-2. 기입하신 기관과 어떤 <u>연계활동</u> 을 하셨는지 간략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7-3. 6개월 동안의 <u>연계 횟수</u> 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명	의뢰내용	수발신	연계 횟수
<ex> 남부보호관찰소	- 청소년 입소를 의뢰받음 - 사례 회의	의뢰받음(수신) 의뢰함(발신)	10회 6회
마포자립학교	- 청소년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의뢰함.	의뢰받음(수신) 의뢰함(발신)	2회
1.		의뢰받음(수신) 의뢰함(발신)	
2.		의뢰받음(수신) 의뢰함(발신)	
3.		의뢰받음(수신) 의뢰함(발신)	
4.		의뢰받음(수신) 의뢰함(발신)	
5.		의뢰받음(수신) 의뢰함(발신)	
6.		의뢰받음(수신) 의뢰함(발신)	
7.		의뢰받음(수신) 의뢰함(발신)	
8.		의뢰받음(수신) 의뢰함(발신)	

9.		의뢰받음(수신) 의뢰함(발신)	
10.		의뢰받음(수신) 의뢰함(발신)	
11.		의뢰받음(수신) 의뢰함(발신)	
12.		의뢰받음(수신) 의뢰함(발신)	
13.		의뢰받음(수신) 의뢰함(발신)	
14.		의뢰받음(수신) 의뢰함(발신)	
15.		의뢰받음(수신) 의뢰함(발신)	
16.		의뢰받음(수신) 의뢰함(발신)	
17.		의뢰받음(수신) 의뢰함(발신)	
18.		의뢰받음(수신) 의뢰함(발신)	
19.		의뢰받음(수신) 의뢰함(발신)	
20.		의뢰받음(수신) 의뢰함(발신)	
21.		의뢰받음(수신) 의뢰함(발신)	
22.		의뢰받음(수신) 의뢰함(발신)	
23.		의뢰받음(수신) 의뢰함(발신)	
24.		의뢰받음(수신) 의뢰함(발신)	
25.		의뢰받음(수신) 의뢰함(발신)	
26.		의뢰받음(수신) 의뢰함(발신)	
27.		의뢰받음(수신) 의뢰함(발신)	
28.		의뢰받음(수신) 의뢰함(발신)	
29.		의뢰받음(수신) 의뢰함(발신)	
30.		의뢰받음(수신) 의뢰함(발신)	

아래 문항은 귀하의 의견을 묻는 문항입니다.

18. 다음 표에는 청소년에 대한 서비스 내용을 기입해 두었습니다.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청소년의 자립에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2, 3 순위**를 뽑아 해당 서비스의 빈칸에 **'1순위', '2순위', '3순위'** 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내용	순위
아웃리치 및 현장상담	
의, 식, 주 제공(물리적 안정)	
생활상담	
가족과의 관계 개선	
검정고시 지원	
일반학교 복귀 지원	
대안학교 연계	
직업상담 및 지도 프로그램	
취업 자격증 취득 지원	
직업체험 및 인턴십프로그램	
외부 연계 취업 (직업훈련매장, 아르바이트 및 창업)	
집단 프로그램 (심리, 문화, 성장집단)	
의료 및 법률 지원	
사후관리	
기타 : _____	

19. 다음 문항은 청소년의 자립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영역별 인프라**입니다.

- 19-1. 아래 **'쉼터와 관련한 인프라'** 를 보시고, 청소년의 자립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귀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1, 2, 3 순위**를 매겨주시기 바랍니다.

쉼터와 관련한 인프라	순위
더 많은 쉼터의 확충	
지적장애나 미혼모등의 특수한 어려움을 가진 청소년들만을 위한 쉼터 확충	
쉼터별 특화된 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	

19-2. 아래 **'취업과 관련한 인프라'** 를 보시고, 청소년의 자립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귀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1, 2, 3, 4 순위를** 매겨주시기 바랍니다.

취업과 관련한 인프라	순위
성매매피해청소년 취업지원을 위한 인턴쉽 센터 설립	
기존 일반, 위기 청소년 취업지원을 위한 체계와의 연계 구축	
모든 쉼터에서 직업관련 서비스 시행	
성매매피해청소년을 위한 직업훈련 매장 확충	

19-3. 아래 **'학력과 관련한 인프라'** 를 보시고, 청소년의 자립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귀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1, 2 순위를** 매겨주시기 바랍니다.

학력과 관련한 인프라	순위
성매매피해청소년에 특수화된 대안학교 설립 및 확충	
기존 대안학교와의 연계 체계 구축	

19-4. 아래 **'주거와 관련한 인프라'** 를 보시고, 청소년의 자립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귀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1, 2, 3 순위를** 매겨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와 관련한 인프라	순위
드롭인센터 및 일시쉼터 설립 및 확충	
단기 쉼터 설립 및 확충	
그룹홈 설립 및 확충	

19-5. 아래 **'사례발굴과 관련한 인프라'** 를 보시고, 청소년의 자립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귀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1, 2 순위를** 매겨주시기 바랍니다.

사례발굴과 관련한 인프라	순위
체계적인 아웃리치(현장방문) 지원	
사이버 상담 인프라 확충	

설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부록2. 위기청소년교육센터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2011년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는 “성매매피해 청소년 자립지원 모델 개발”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가톨릭대학교 연구팀입니다.

실무자 선생님들께서는 사업을 수행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연구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설문지를 보내드리오니 작성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답해 주신 내용은 비밀과 익명이 보장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모든 질문 내용에는 옳고 그름이 없으므로, 평소에 생각하시고 행동하시는 대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설문지는 아래의 주소로 꼭 보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실 주소 : (420 -743)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2동 산 43-1번지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인숙교수

2011년 10월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인숙 교수 드림

기본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남 ② 여

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_____ 세

3. 귀하의 직급은 어떻게 되십니까? _____ 직급

4. 귀하의 현 기관의 근무 경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_____년 _____ 개월

다음은 기관 현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5. 귀 기관의 설립년도는 언제 입니까? _____ 년

6. 귀 기관의 상근 직원수는 몇 명입니까? _____ 명

7. 2009년부터 2011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귀 기관을 이용한 청소년의 인원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이용인원 : _____명

2010년 이용인원 : _____명

2011년 이용인원 : _____명

8. 귀 기관의 법인에서 함께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 **모두** ‘○’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① 컴퓨터 운영(청소년지원시설)
② 대안학교 운영
③ 10대 청소년을 위한 그룹홈 운영
④ 20대 이후 청소년을 위한 그룹홈 운영
⑤ 자립훈련매장 운영
⑥ 기타 : _____

다음은 청소년에 대한 서비스 현황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9. 아래 문항은 청소년 의뢰 형태를 분류해 놓은 것입니다. 현재 귀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 발굴 및 의뢰 형태를 생각해보시고, 해당하는 사례발굴 및 의뢰형태의 **비율**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법원 및 보호관찰소로부터 의뢰 ()%
- ② 경찰로부터 의뢰 ()%
- ③ 원스톱지원센터로부터 의뢰 ()%
- ④ 1366, 1388 으로부터 의뢰 ()%
- ⑤ 사이버 상담으로 사례발굴 ()%
- ⑥ 기관 아웃리치로 사례발굴 ()%
- ⑦ 기타 : _____ ()%

10. 귀 기관에서 청소년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모두에**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류	서비스 내용	실시 여부	분류	서비스 내용	실시 여부
발굴	아웃리치 및 현장상담		취업 지원	직업정보 제공	
상담	생활상담			직업상담 및 직업지도 프로그램	
	학업 상담			자격증 취득 지원	
	가족 상담			기관 자체 직업체험 프로그램	
				기관 자체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학력 지원	검정고시 지원			노동부 연계 직업체험	
	일반학교 복귀 지원			노동부 연계 단기 인턴십	
	대안학교 연계			직업훈련매장 연계	
집단 프로그램	심리치료 프로그램			아르바이트	
	문화체험 프로그램			취업	
	성장 집단 프로그램		창업		
			의료지원		
		기타	법률지원		
			사후관리		

11. 청소년 서비스와 관련하여 귀 기관에서 이루려고 하는 최종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해당 문항의 번호에 ‘o’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 ① 청소년의 주체성을 키우는 것
- ② 청소년의 보호와 양육
- ③ 청소년의 선도보호 및 교정
- ④ 기타 : _____

12. 아래는 청소년 서비스의 주요 목표를 제시해 둔 것입니다. 귀 기관에서 중요시하는 순서대로 1, 2, 3, 순위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① 청소년의 가정복귀 : ()순위
- ② 청소년의 학력취득 : ()순위
- ③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 : ()순위
- ④ 기타 : _____ : ()순위

13. 다음은 청소년 지원과 관련하여 **귀 기관의 연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표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기관에서 행해진 연계 현황을 떠올려보시고, 아래 빈칸에 순서대로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명	의뢰내용	수발신	연계 횟수
13-1. 현재까지 연계하신 기관의 이름을 모두 써주시기 바랍니다.	13-2. 기입하신 기관과 어떤 연계활동을 하셨는지 간략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3-3. 6개월 동안의 연계 횟수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ex> 남부보호관찰소	- 청소년 입소릉 의뢰받음 - 사례 회의	의뢰받음(수신) 의뢰함(발신)	10회 6회
마포자립학교	- 청소년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의뢰함.	의뢰받음(수) 의뢰함(발신)	2회
1.		의뢰받음(수신) 의뢰함(발신)	
2.		의뢰받음(수신) 의뢰함(발신)	
3.		의뢰받음(수신) 의뢰함(발신)	
4.		의뢰받음(수신) 의뢰함(발신)	
5.		의뢰받음(수신) 의뢰함(발신)	
6.		의뢰받음(수신) 의뢰함(발신)	
7.		의뢰받음(수신) 의뢰함(발신)	

8.		의뢰받음(수신) 의뢰함(발신)	
9.		의뢰받음(수신) 의뢰함(발신)	
10.		의뢰받음(수신) 의뢰함(발신)	
11.		의뢰받음(수신) 의뢰함(발신)	
12.		의뢰받음(수신) 의뢰함(발신)	
13.		의뢰받음(수신) 의뢰함(발신)	
14.		의뢰받음(수신) 의뢰함(발신)	
15.		의뢰받음(수신) 의뢰함(발신)	
16.		의뢰받음(수신) 의뢰함(발신)	
17.		의뢰받음(수신) 의뢰함(발신)	
18.		의뢰받음(수신) 의뢰함(발신)	
19.		의뢰받음(수신) 의뢰함(발신)	
20.		의뢰받음(수신) 의뢰함(발신)	
21.		의뢰받음(수신) 의뢰함(발신)	
22.		의뢰받음(수신) 의뢰함(발신)	
23.		의뢰받음(수신) 의뢰함(발신)	
24.		의뢰받음(수신) 의뢰함(발신)	
25.		의뢰받음(수신) 의뢰함(발신)	
26.		의뢰받음(수신) 의뢰함(발신)	
27.		의뢰받음(수신) 의뢰함(발신)	
28.		의뢰받음(수신) 의뢰함(발신)	
29.		의뢰받음(수신) 의뢰함(발신)	
30.		의뢰받음(수신) 의뢰함(발신)	

아래 문항은 귀하의 의견을 묻는 문항입니다.

14. 다음 표에는 청소년에 대한 서비스 내용을 기입해 두었습니다.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청소년의 자립에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2, 3 순위를 뽑아** 해당 서비스의 빈칸에 '1순위', '2순위', '3순위' 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내용	순위
아웃리치 및 현장상담	
의, 식, 주 제공(물리적 안정)	
생활상담	
가족과의 관계 개선	
검정고시 지원	
일반학교 복귀 지원	
대안학교 연계	
직업상담 및 지도 프로그램	
취업 자격증 취득 지원	
직업체험 및 인턴십프로그램	
외부 연계 취업 (직업훈련매장, 아르바이트 및 창업)	
집단 프로그램 (심리, 문화, 성장집단)	
의료 및 법률 지원	
사후관리	
기타 : _____	

15. 다음은 표에는 청소년의 자립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영역별 인프라를 제시해두었습니다.

- 15-1. 아래 '쉼터와 관련한 인프라' 를 보시고, 청소년의 자립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귀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1, 2, 3 순위를** 매겨주시기 바랍니다.

쉼터와 관련한 인프라	순위
더 많은 쉼터의 확충	
정신지체나 미혼모등의 특수한 어려움을 가진 청소년들만을 위한 쉼터 확충	
쉼터 별 특화된 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	

15-2. 아래 ‘취업과 관련한 인프라’ 를 보시고, 청소년의 자립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귀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1, 2, 3, 4 순위를** 매겨주시기 바랍니다.

취업과 관련한 인프라	순위
성매매피해청소년 취업지원을 위한 인턴십 센터 설립	
기존 일반, 위기 청소년 취업지원을 위한 체계와의 연계 구축	
모든 쉼터에서 직업관련 서비스 시행	
성매매피해청소년을 위한 직업훈련 매장 확충	

15-3. 아래 ‘학력과 관련한 인프라’ 를 보시고, 청소년의 자립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귀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1, 2 순위를** 매겨주시기 바랍니다.

학력과 관련한 인프라	순위
성매매피해청소년에 특수화된 대안학교 설립 및 확충	
기존 대안학교와의 연계 체계 구축	

15-4. 아래 ‘주거와 관련한 인프라’ 를 보시고, 청소년의 자립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귀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1, 2, 3 순위를** 매겨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와 관련한 인프라	순위
드롭인센터 및 일시쉼터 설립 및 확충	
단기 쉼터 설립 및 확충	
그룹홈 설립 및 확충	

15-5. 아래 ‘사례발굴과 관련한 인프라’ 를 보시고, 청소년의 자립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귀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1, 2 순위를** 매겨주시기 바랍니다.

사례발굴과 관련한 인프라	순위
체계적인 아웃리치(현장방문) 지원	
사이버 상담 인프라 확충	

설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